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일러두기

이 사례집의 내용은 상담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관세청 및 세관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례집의 내용은 유권해석, 업무처리, 관세 관련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FTA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집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보완할 내용 또는
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577-8577)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간사

고객지원센터는 2003년 개소 이래 연간 약 20만 건의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을 처리하면서 관세행정 고객의 만족과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2.3.15 한·미 FTA 발효, 2011.7.1 한·EU FTA 발효, 한·중 FTA 체결 진행 등으로 대규모 경제권과 FTA 교역이 본격화되어 수출입업체 및 제조업체의 원산지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상담 수요는 향후 더욱 급증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고객지원센터에서는 FTA에 대한 관세행정 고객의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FTA 분야 실제 상담사례 중 335개를 정리하여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FTA 사례들은 협정, 법령 중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써 고객에게 필요한 FTA·원산지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책자가 무역업체, 수출입물품 제조업체, 관세사 등 FTA 실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책자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보완할 사항 등이 있으면 고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본 책자를 편집·발간함에 있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고객지원센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2. 7.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천홍우

자 례

I . 원산지 인정 요건	1
1.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3
2. 직접운송원칙	12
II . 원산지인증수출자	37
III . 원산지결정기준	57
1. 세번별 원산지결정기준	59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78
3. 기타 원산지결정기준	90
IV . 원산지증명서 발급	109
1. 기관발급	111
2. 자율발급	121
3. 한·미 FTA 권고서식 및 협정별 서식	129
V .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37
1.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39
2. 세관인증번호 체계	162
3. 원산지 표기 방법	167

VII.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171
1. 제3국 송장 발행	173
2. 적용시점 및 유효기간	198
3.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인정여부	204
VIII. 협정세율 적용	205
1. 협정관세 사전신청	207
2. 협정관세 사후신청	209
3.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217
4. TRQ(수량별차등협정관세) 적용 등	223
VIII. 원산지확인서류 및 보관의무	229
1. 원산지(포괄)확인서	231
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255
3. 원산지소명서	259
4. 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265
IX. FTA 소액물품	275
1. 특송물품	277
2. 여행자 휴대품	281
X. 기타(APTA 등)	283
1.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85
2. 기타	290

〈사례별 상세 차례〉

I. 원산지 인정 요건	1
1.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3
(1) 한·EU 인증수출자 아닌 자가 6,000유로 초과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3
(2) EU역내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격	3
(3) EU역내 다른 국가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자격	4
(4) 한·EFTA 수출자와 원산지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5
(5) 한·EU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 및 서류	6
(6) 한·EU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	7
(7) 한·EU 최종 수출자가 다른 세관인증번호 사용가능 여부	8
(8) 한·EU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자	9
(9)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9
(10) 한·미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필요성 여부	10
(11) 한·EU 동일 항차 다수의 거래물품에 대한 6,000유로 기준 판단	10
(12) 한·EU 물품가액 6,000유로 기준 적용시 운송비 포함 여부	11
(13) EU역내 다른 국가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발행 여부	11
2. 직접운송 원칙	12
(1) BWT 거래 시 직접운송 원칙 위배 여부	12
(2) 한·EU 경유항에서의 직접운송 인정 서류	13
(3) EU산 원재료를 제3국에서 단순 가공후 수입시 FTA 적용가능 여부	13
(4) 비당사국 물류센터를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미주형, 유럽형 FTA 차이	14
(5) 원산지(칠레)와 선적지(벨기에)가 상이한 경우 운송요건 충족 여부	15
(6) 한·EU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직접운송 인정 여부	16
(7) EU 제품을 싱가포르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16
(8) 한·EU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산지 기재방법 문의	17
(9) 한·EU 수출국, 제조국, 선적국이 다른 경우 직접운송 인정 여부	17
(10) 한·EU 직접운송 인정범위	18
(11) 한·EFTA 스위스 물품을 해상을 통해 수입할 경우	19
(12) 한·미 FTA 제3국 통과 및 환적	20
(13) 한·EU FTA 와 한·아세안 FTA 운송원칙 적용 차이	21
(14) EU 역내국 경유시 증빙서류 필요성	22
(15) 유럽산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22
(16) 한·EU 스페인 참다랑어 필레트 원산지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23
(17) 한·미 FTA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24
(18) 싱가포르 물류센터의 EU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25
(19) EU물품이 미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	26

(20) 한·EU 제3국 경유시 직접 운송 인정 여부	26
(21) 제3국 경유시 단순 경유 입증서류	27
(22) 한·EFTA 중국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28
(23) 한·EU 물품을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경우 직접운송 인정 여부	29
(24) FTZ(자유무역지역)에서의 라벨링 작업이 단순 환적으로 볼 수 있는지	30
(25) 한·EFTA 원산지 및 선적지 관련 문의	31
(26) EU제품의 홍콩 물류센터 경유시 원산지 인정 여부	32
(27) EU에서 생산된 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32
(28) EU 역외 제3국 경유 환적화물 협정세율 적용 여부	33
(29) 직접운송원칙 적용 및 원산지 문구 유효성	33

II. 원산지인증수출자 37

(1)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는 방법	39
(2) 한·EU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세관인증번호 사용법 및 보관서류	40
(3) 한국물품을 수입하는 독일업체가 한국에서 인증업체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42
(4) EU 수출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42
(5)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시 발생비용 및 신청자격	43
(6)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세관인증번호 사용시 문의	44
(7) 한·EU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45
(8)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46
(9) 한·EU 인증수출자의 혜택 범위	47
(10) 한·EU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신고서	48
(11) 품목별 인증시 세번 관련 문의	48
(12) 원산지표시와 원산지증명서 차이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한계	49
(13)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50
(14)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교육	52
(15) 한·미 FTA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에 따른 효과	52
(16) 상업서류 범위 및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세관인증번호 생략 가능 여부	53
(17)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수입국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54
(18) 인증수출자 인증시 필요한 원산지교육	54
(19)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55

III. 원산지결정기준 57

1. 세번별 원산지결정기준	59
(1)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원산지결정기준	59
(2) HS 2821.10호의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59

(3) HS 2917.39호의 원산지결정기준	60
(4) HS 3907.4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61
(5) HS 3923.4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62
(6) HS 5402.20호의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63
(7) HS 5902.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64
(8) HS 711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65
(9) HS 7217.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66
(10) HS 7225.99호의 원산지결정기준	67
(11) HS 7320.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68
(12) HS 7406.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69
(13) HS 8411.91호의 원산지결정기준	70
(14) HS 8477.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71
(15) HS 8477.20호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72
(16) HS 8515.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73
(17) HS 8536.69호의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결정기준	74
(18) HS 8607.19호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75
(19) HS 9013.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76
(20) HS 9401.90호의 한·페루 FTA 원산지결정기준	77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78
(1) 가죽 및 섬유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	78
(2) 경편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	79
(3) 모니터용 카메라의 원산지결정기준	80
(4) 모니터의 원산지결정기준	81
(5) 섬유 YARN 가공공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82
(6) 신변장식용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83
(7) 재생필라멘트 재봉사의 원산지결정기준	84
(8) 조미 김(Prepared Laver)의 원산지결정기준	85
(9) 원사의 원산지결정기준	86
(10) 우산(베트남산)의 원산지결정기준	87
(11) 철강류 원산지결정기준	88
(12) 화장품원료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89
 3. 기타 원산지결정기준	90
(1) 원산지결정기준 - 누적기준(폐자재)	90
(2) 원산지결정기준 - 누적기준(한·EFTA)	91
(3) 원산지결정기준 - 중간재 규정(한·페루 FTA)	92
(4) 원산지결정기준 - 중간재 적용 대상	93
(5) 원산지결정기준 - 대체가능물품	93
(6) 원산지결정기준 - Ingots의 중간재 해당여부	94

(7) 원산지결정기준 - 불인정공정	95
(8) 원산지결정기준 - 간접재료	96
(9) 원산지결정기준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97
(10) 원산지결정기준 - 역내부가가치 산정 방식	98
(11) 폐자재의 완전생산기준에 따른 '역내산 처리 가능' 여부	99
(12) 한·EU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	100
(13) RC 와 MC 차이점	100
(14)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101
(15) 콜롬비아산 커피원두를 미국에서 볶은 경우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101
(16) 한·아세안 FTA 임가공 수입 관련 원산지결정기준 및 기재 가격	102
(17)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작성방법	102
(18)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입증서류 제출 여부	103
(19)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판단	104
(20)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공공정기준	104
(21) EU FTA 관세특혜 적용 여부	105
(22) 원산지결정기준 - 비역내산 부착물로 제조한 양말 적용 여부	106
(23) 제품과 같은 류의 재질을 사용해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사용 가능 여부	107
IV. 원산지증명서 발급	109
1. 기관발급	111
(1) 한·아세안 FTA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111
(2) 한·아세안 FTA 제3국 발행 송품장 표시방법	112
(3) 한·아세안 FTA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113
(4) 한·아세안 FTA AK Form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114
(5) 한·아세안 FTA 원자재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115
(6)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116
(7)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117
(8)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신청기한(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118
(9) 한·인도 CEPA 소량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119
(10) 한·아세안 FTA 수출물품에 대한 AK Form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HS부호	120
2. 자율발급	121
(1) 한·EU FTA에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	121
(2) 한·EU FTA 관련 6,000유로 판정기준	121
(3) 한·EU FTA가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규정	122
(4) 한·EFTA FTA 분할선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방법	123
(5)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요령	124
(6)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구비해야 할 서류	125

(7) 한·EU FTA가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규정	127
--	-----

3. 한·미 FTA 권고서식 및 협정별 서식	129
(1) 한·미 FTA 포괄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작성요령	129
(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작성요령	131
(3)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으로 수입자가 발급하는 경우	132
(4) 한·EFTA 원산지신고서 서식의 효력	133
(5) 한·아세안 FTA AK Form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문의	134
(6) 한·EU FTA에서 Invoice에 Made In Korea라고만 쓴 경우	135
(7) 한·EU FTA 원산지문안 중에서 Preferential 단어가 누락된 경우	135
(8) 한·EU FTA에서 EUR-1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136
(9)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	136

V.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37

1.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39
(1) 한·아세안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상 기재금액	139
(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표기방법	140
(3)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40
(4) 한·미 FTA 포괄원산지증명서 작성	141
(5)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문구	142
(6)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서명시 소문자 유효성 여부	143
(7) 한·아세안 FTA 인증수출자 전자서명 및 수기서명 인정 여부	144
(8) 한·EU FTA 원산지표기 “European Community” 별도 표시 인정 여부	145
(9) 한·EU FTA Invoice의 원산지와 비원산지 물품 구분 표시 방법	146
(1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는 방법	147
(1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가 직접 작성할 때	148
(12)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을 수기로 작성시 유의사항	149
(13) 한·미 FTA에 적용되는 HS품목번호 HS 2002 or HS 2012	149
(14)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의 국가표시 방법	150
(15) 한·미 FTA 포괄원산지증명서 수량 기재 생략 가능한지 여부	150
(16)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기입 서류	151
(17) 한·EU FTA 인증수출업체로 등록된 서명과 대표의 서명이 다른 경우	151
(18) 한·EU FTA 쿼터물량 원산지문구에 대한 작성요령	152
(19) 한·EU FTA 관련 Invoice 작성요령	153
(20) 한·EU FTA 원산지문구에 인증수출자 이름과 사인이 필요한지 여부	155
(21) 한·EU FTA 협정 원산지표시 및 특혜여부 표시방법	155
(22) 한·EU FTA 협정 6,000유로 이하인 경우 통관번호 생략가능여부	156
(23) 한·EU FTA 원산지 신고 문안에 원산지 국가명 표기방법	157

(24) 한·EU FTA 화물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일 때 원산지 문안 작성방법	158
(25) 원산지가 다른 여러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방법	158
(26)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의 원산지 신고서 문안 작성방법	159
(27)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의 FOB value 기재시	160
(28) 한·EU FTA 인증수출자 서명 및 이름 생략 가능 여부(6,000유로 이하)	161
(29)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환율 적용	161
2. 세관인증번호 체계	162
(1) 한·EU FTA 세관인증번호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	162
(2) 한·EU FTA 세관인증번호 유효성	163
(3) 한·EU FTA 관련 독일 인증수출자 세관인증번호 유효성 확인	164
(4) 한·EU FTA 관련 이탈리아 세관인증번호 체계 문의	165
(5) 한·EU FTA 관련 네덜란드 세관인증번호 체계 문의	166
(6) 한·EU FTA 관련 핀란드 세관인증번호 체계 문의	166
3. 원산지 표기 방법	167
(1) 한·EU FTA 원산지 기재문구에 EU나 국가명을 쓰지 않을 경우	167
(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원산지국 표기 인정여부	168
(3) 원산지 국가명 표기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사용 가능 여부	169
(4) 한·EU FTA 관련 원산지가 여러 국가인 경우 원산지국 표기 방법	169
VI.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171
1. 제3국 송장 발행	173
(1) 한·EU FTA 제3국 발행 송장에 의한 협정세율 적용	173
(2) 수출자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174
(3)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다를 때 한·EU 특혜관세 적용 여부	175
(4) 한·EU FTA 제3국 송장 발행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176
(5) B/L분할 건에 대한 한·EU FTA 적용여부	177
(6) BWT 물품으로서 분할된 B/L,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178
(7) 한·EU FTA 원산지문안 기재된 Invoice 사본으로 원산지증명서 반복 사용	178
(8) 한·EU FTA 중고 Roll 수출 후 재가공 후 수입시 협정세율 적용 여부	179
(9) 한·EU FTA 그 밖의 상업서류의 범위	180
(10) 수리 후 재반입 물품의 구분 신고시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180
(11) 한·EU FTA 세관인증번호 위치가 원산지신고서 문안 밖에 있는 경우	181
(12)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문안 기재된 Packing List 유효 여부	181
(13) 한·EU 원산지신고서 문안과 다른 형태의 문안 유효성 여부	182
(14) 한·EU FTA 송품장 문구 오탈자 인정 여부	182
(15)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유효성	183

(16) 한·EU FTA 원산지 인정 여부(EU역내에서 타국 원산지 문안 작성)	183
(17) 한·EU 원산지 문안 이외의 별도 원산지표시 인정 여부	184
(18)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문안 및 세관인증번호 적정성	185
(19) 한·EU간 거래시 제3국 송장,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인정 여부	187
(20)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188
(21) 한·인도 CEPA 인도 상무성 발급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189
(22) 한·EFTA 세관인증번호가 없는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189
(23) 한·EU FTA 원산지 문안을 모든 상업서류에 각각 기재해야 하는지	190
(24) 한·EFTA FTA 여러 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고 문안 인정 여부	191
(25) 한·EU FTA 원산지 신고 문안이 아닌 일반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192
(26) 한·싱가포르 FTA 특혜원산지증명서가 증명하는 물품의 범위	193
(27)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유효성 인정 여부	193
(28)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부서 및 판정부서 동시 서명 인정여부	194
(29) 원산지문안에 'Customs Authorization No'없이 세관인증번호 기재한 경우	194
(30) EU 수출자가 제3체약국 원산지제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95
(31) 수출자 세관인증번호 아닌 EU 타국 소재 자회사(공장) 번호를 넣는 경우	196
(32) 한·EU FTA 적용 Invoice 사본 인정여부 문의	197
 2. 적용시점 및 유효기간	198
(1) 한·미 FTA 발효 이전 원산지증명서 혜택	198
(2)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기간	198
(3) 한·EU FTA 관세율 이행 연차별 적용 날짜	199
(4) 한·미 FTA 발효시 적용시점, 원산지증명 관련 구비서류	199
(5) 한·미 FTA 특송통관 면제 적용	200
(6)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효력시작일	201
(7)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202
(8) 한·EU FTA 경과규정 적용기준	202
(9) 원산지증명서 용어 의미 문의("서명된 날"과 "발급일"의 차이점)	203
 3.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인정여부	204
(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전자파일 인쇄본 사본 제출 스탬프 유효	204
(2) 한·EU FTA 관련 원산지증명서 원본 인정 범위	204
 VII. 협정세율 적용	205
 1. 협정관세 사전신청	207
(1) 한·EU FTA 발효 전 발급한 Invoice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207

2. 협정관세 사후신청	209
(1)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209
(2) 한·EU FTA 사후 협정관세신청 가능 여부	210
(3) 한·EU FTA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환급 요청의 건	211
(4) 한·EU FTA 관련 관세 환급 문의	212
(5) 한·EU 협정세율 사후적용 가능여부 문의	213
(6) 한·아세안 FTA 사후 관세환급	214
(7) 한·페루 FTA 관련 협정세율 사후신청 문의	214
(8) 한·페루 FTA 소급 적용 관련	215
(9) 한·아세안 위탁가공물품 수입신고시 협정세율 사후적용 여부	215
(10) 한·EU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관련	216
3.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217
(1) 한·칠레 FTA 소급 원산지증명서 발행시 소급발급 문구 필요 여부	217
(2)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 적용 절차	217
(3)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조건	218
(4) 한·EU FTA 소급 발급 및 환급(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서류)	219
(5) 한·미 FTA 포괄원산지증명서 물품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220
(6) 한·아세안 FTA 소급발급 문구가 누락된 원산지증명서 유효 여부	221
(7)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222
4. TRQ(수량별차등협정관세) 적용 등	223
(1) 한·미, 한·EU FTA별 TPL 품목 확인 요청	223
(2) 한·미 FTA 사료용식물 수량별 차등관세(TRQ) 적용	224
(3) 한·인도 CEPA 농림축산물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기관 문의	225
(4) 한·아세안 FTA 망고스틴(초민감품목) 관세율에 대한 질문	226
(5)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협정세율 소급적용 문의	226
(6) 한·EU FTA 협정세율 소급 적용 및 수량할당추천(TRQ) 소급 적용	227
VIII. 원산지 확인서류 및 보관의무	229
1. 원산지(포괄)확인서	231
(1) 유상 사급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231
(2) 사급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232
(3) 반복 발생하는 유·무상 사급의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	233
(4) 원산지확인서 외 기타 양식 작성방법 문의	234
(5) 여러 장의 원산지확인서에 직인 명판 찍는 방법	235
(6) 원산지확인서 작성시 제품에 대한 HS CODE 확인요청	235
(7) 원산지확인서 작성양식	236

(8) 외자품 구매 입고시 CFR로 입고가능한지 여부	237
(9) 수출시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238
(10) 타사 국내산 원료 구입 후 수출시 원산지 기준	239
(11) 한·아세안(태국) FTA 관련 원산지확인서 작성	240
(12)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241
(13) APTA협정 원산지확인서 작성	242
(14) 원산지확인서 발급	243
(15)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차이	243
(16)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244
(17)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245
(18)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시 입증 서류	246
(19) 독일 수출 관련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247
(20)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원산지결정기준 영문 표기 방법	248
(21)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249
(22) 원산지포괄확인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작성	250
(23) 한·EU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자격	251
(2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252
(25)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업체	252
(26)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요령	253
(27) 원산지포괄확인서 관련 보관서류	254
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255
(1)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의 차이	255
(2) 국내제조확인서 소급 발행 가능 여부	255
(3) 국내제조확인서 작성	256
(4)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활용 가능한 협정의 범위	257
(5)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요령	257
(6)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자	258
3. 원산지소명서	259
(1) 원산지소명서 작성 요령	259
(2)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260
(3) 원산지소명서 수량 및 가격 표기 방법	260
(4) 원산지소명서에서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	261
(5) 원산지소명서의 원재료명세서상 공급처 기재 방법	261
(6) 원산지소명서 원재료 작성 범위	262
(7) 한·미 FTA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소명서 작성 의무	262
(8) 원산지소명서 란별 작성방법	263
(9) 원산지소명서 구비서류의 가격표시 방법	264
(10) 한·EU FTA 원산지소명서 작성시 원산지결정기준 표시방법	264

4. 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265
(1)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요건 및 필요 서류	265
(2)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절차	267
(3) 한·미 FTA에서 원산지 제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267
(4) 한·칠레 FTA 관련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268
(5)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류 보관	269
(6) FTA 의무 보관서류에 대한 이해	270
(7) 기관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과 작성대장 필요 여부	272
(8)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한 구비서류	272
(9)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사후관리	273
(10)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보관 서류	274

IX. FTA 소액물품 275

1. 특송물품	277
(1) 한·미 FTA 특송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방법	277
(2) 한·EU FTA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B/L 상에 DEPARTURE가 없는 경우	278
(3) 한·미 FTA 특송화물의 면제기준 200불에서 물품가액 기준 문의	278
(4)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협정세율 적용 방법	279
(5) 한·미 FTA 전자상거래물품 협정세율 적용	280
2. 여행자 휴대품	281
(1) 여행자 휴대품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방법	281
(2)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의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	282

X. 기타(APTA 등) 283

1.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85
(1) APTA 적용시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국내산 원재료와 외국산 원재료 판정	285
(2) APTA 3자 무역일 경우 추가 기재요건 확인	286
(3) APTA 원산지결정기준 표시 관련	286
(4) APTA 사후적용 가능 여부	287
(5)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APTA 관세 적용 가능 여부	288
(6) C/O상 재질과 현품 재질이 다른 경우 APTA 적용 가능 여부	289
2. 기 타	290
(1) 한·EU FTA 적용국가 범위	290
(2) 제3국 생산물품을 유럽에 수출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	290

(3) 한·EU FTA 관련 관세율	291
(4) 한·EU FTA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291
(5) 한·EU FTA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292
(6) 한·EU FTA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	292
(7) 한·EU FTA 중고물품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293
(8) 한·EU FTA 협정상 전체가격의 의미	293
(9) 한·EU FTA 관련 Invoice 작성 요령	294
(10) 한·EU FTA EUR1 발급 관련	295
(11)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4.3조 특정상품의 취급	295
(12) 한·아세안 FTA 필리핀 일반품목군, 초민감품목군 동시 충족시 관세율	296
(13) 불량 대체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296
(14) 국가 간 HS코드가 상이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책	297
(15) 한·아세안 FTA 적용 여부	298
(16) 한·아세안 FTA 경유국의 Back to back C/O(연결원산지증명서) 활용	298
(17) 한·아세안 FTA 제3국송장 관련 문의	299
(18)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 품목 및 상호대응세율제도	300
(19) 한·아세안 FTA 관련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 표기 인정 여부	301
(20) 한·아세안 FTA 3국 무역 원산지 표시 관련	303
(21)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내용 관련	303
(22) 한·EFTA 협정문 내용 검색	304
(23) 원산지와 선적지가 다를 때 적용할 협정	305
(24) FTA 협정별 영문표기법	305
(25) FTA 원산지증명서와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차이점	306
(26) 한·미 FTA에서 Invoice로 원산지증명 가능 여부	306
(27)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	307
(28)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중 “6,000유로 초과”가 수식하는 단어	307
(29) 멕시코 가공품의 한·미 FTA 적용여부	308
(30) 한국산 장갑의 포장재가 중국산인 경우 협정세율 적용 여부	309
(31) 한·EFTA 중고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310
(32) 한·미 FTA 수용성(비수용성) 가공유 원산지결정기준	311
(33)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누적기준)에 의한 원산지 관리	312
(34) 한·EU FTA 수출국과 선적국(역내)이 다른 경우	312

I

원산지 인정 요건

-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② 직접운송 원칙

1.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 한·EU 인증수출자 아닌 자가 6,000유로 초과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질문

한·EU FTA 관련하여 독일에서 수출자가 매 건당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수출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6,000유로 초과의 건에 대하여 원산증명서 발급하여도 FTA 협정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 6,000유로 초과 건에 대한 수출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Invoice 건당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2] EU연내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질문

독일 수출자가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물건을 가져와 독일내 창고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독일 수출자가 발행한 Preferential Declaration of Origin이 명시된 Invoice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수출자가 아닌 실제 제품을 만든 공장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EU연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과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 수출자가 수출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들 들어, 독일 수출자가 영국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독일 수출자가 발행한 Preferential Declaration of Origin(EU 협정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신고 문안)이 명시된 Invoice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고, 수출자가 아닌 실제 제품을 만든 공장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출자는 사후 검증에 대비해 보관하여야 함)



(3) EU역내 다른 국가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자격

질문

저희는 A라는 EU 이태리에 있는 회사의 물건을 수입하는 무역업체입니다. A업체는 본사는 이태리에 있고, 공장이 이태리 & 슬로바키아 양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하는 물건은 이태리 공장이 아닌,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입니다.

이번에 수출자가 세관인증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2011년 7월 이후 수입된 Invoice를 수정해 달라고 했더니, 저희가 수입한 물건이 이태리에서 만든 물건이 아니라 슬로바키아에서 만든 것이라서 Invoice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A 수출업체의 말이 맞는 건지요?

답변

-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태리 수출자가 원산지가 슬로바키아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한·EU FTA에서 다른 쪽 당사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과 유럽연합(EU)이므로,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협정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협정발효일 이후 선적되어 일반세율로 통관된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며, 소급발행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소급하여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예: 최초 발행된 송장에 원산지신고서 문구(작성일자 명기)를 추가 기재하여 발행하는 방법,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한 송장 등 상업서류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법 등)
- 따라서 기존 Invoice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Invoice에 세관인증번호를 포함한 원산지신고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발행하거나, 세관인증번호를 포함한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한 Invoice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세관인증번호를 포함한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된 Invoice의 소급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한·EFTA 수출자와 원산지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질문

- 제품명 : Natural gas (HS 2711.10-0000)
- 한·EFTA(FEF1) : 0%
- 수출자 : 프랑스 소재
- 생산자 : 노르웨이 소재
- 1. 원산지국과 수출국이 상이할 경우에 한·E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수출자 정보를 기입해서 제출하여 하는지 여부
- 2. 원산지국과 수출국이 상이할 경우에 한·E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자가 발행한 선적서류에 생산국과 생산자의 주소 등 관련정보를 기입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FTA 체결 상대국이 아닌 제3국의 회사가 송품장을 발행한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한·EFTA FTA 부속서 1의 제15조 2항에 규정에 따르면, 수출자가 상업송장(Invoic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한·EFTA FTA에서는 수출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 대신에 수출자가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 여백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 여기에서 "수출자"라 함은 FTA 체결 상대국(사안에서 노르웨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제3국(사안에서 프랑스)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비록 제3국에서 작성한 송품장에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어도 원산지증명서류로서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서류(프랑스 업체가 발급한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된 송품장)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사안의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주체인 체약상대국(노르웨이)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상업송장(Invoic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예를 들어 포장명세서, B/L 등)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들 서류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거래물품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야 합니다.



(5) 한·EU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 및 서류

질문

저는 인천에서 제조 없이 건설용 공구를 수입,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Euro 6,000 이하가 대부분이나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시 유럽 고객들이, 수입 시 저희가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일련의 작업 및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수입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총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하는 업체는 해당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수입자가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시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져야 상대국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 한·EU FTA 대상국 및 품목 확인(한·EU 협정에 의한 수출 대상국(EU 27개국)인지, 수출품이 원산지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한국산인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송품장 등 작성(EU 지역으로 수출이 결정된 물품의 송장을 작성합니다.)
 - 송품장 등에 원산지신고 문안* 첨가 및 서명(한·EU 원산지규정에 따라 한국산 물품의 수출시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 등에 기재합니다. 6,000유로 초과의 경우 세관에서 인증받은 세관인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는 인증심사시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서명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 무역서류 발송(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을 비롯한 무역서류를 바이어측에 발송합니다.)



[6] 한·EU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

질문

우리 회사는 국내의 A사와 A사 소유의 물품(소재지: 독일, 제작자 독일B사)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계약조건이 DDP가 아닌 FCA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에서부터 해상운송 후 수입통관 의무가 우리 회사의 책임이 되어 관세납부 방법이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본 물품이 관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면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한·EU FTA에 따라 관세면제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 1) 국내 A사가 독일에서 인증수출자로 등록하고 Invoice에 원산지 신고문안 명기하여 선적서류 발급 또는,
 - 2)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독일의 물품제작사인 B사가 독일에서 인증수출자로 등록하고 통관용 Invoice에 원산지 신고문안 명기하여 선적서 발급
- 위 2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FTA에서 “수출자”는 통상적인 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 또는 해외공급자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를 의미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율발급) 또는 발급신청(기관발급)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지며,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국내 A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원산지증명은 독일의 물품제조자인 B사가 독일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고 그가 발행하는 상업 서류(Invoice, 포장명세서, B/L 등)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한·EU 최종 수출자가 다른 세관인증번호 사용가능 여부

질문

현재 독일에서 제조, 네덜란드로 보내진 뒤 통관·보관되다가 한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독일의 제조사는 인증수출자이지만, 최종 수출자인 네덜란드 회사는 아직 인증수출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네덜란드의 회사가 독일산 물건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독일의 세관인증번호가 포함된 원산지신고 문안과 함께 네덜란드 수출자가 신고서 작성자로서 성명 및 서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도 FTA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EU연내에 있는 한, EU연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과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네덜란드(최종) 수출자가 원산지가 독일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6,000유로 초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자(제조사가 아님)의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네덜란드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네덜란드 수출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네덜란드 수출자 발행의 Invoice에 독일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원산지신고서'는 협정 및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네덜란드 수출자가 독일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다만, 이와 같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협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 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의 검증'이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될 것입니다.



[8] 한·EU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 문구 작성자

질문

한·EU FTA 관련하여 수출자의 정의는 "대상물품을 직접 생산하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자"로 알고 있는데, 물품생산자는 폴란드이고 수출자가 독일일 경우 원산지신고 문구의 작성자는 누구여야 하며, 독일 수출자의 수출인증번호와 원산지인 폴란드를 기재해야 하는지요?

답변

- FTA에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원산지신고서 발급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지고,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물품 생산자는 폴란드이고 수출자가 독일일 경우 원산지신고 문구의 작성자는 수출자인 독일 본사가 되어야 하고, 독일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와 원산지인 폴란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9]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질문

수입시 유럽 수출자 자격요건에서 수출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다면 원산지제품이 맞고 직접 운송을 하고 상업서류에 신고문안 표기가 되어 있어도 수입품에 대한 FTA 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지요?

답변

- 한·EU FTA에서는 수출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6,000유로 이하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 발급자격이 있습니다.
-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협정적용의 조건(거래당사자 요건, 협정품목요건, 직접 운송원칙, 역내 충분가공원칙,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원산지증명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서명하는 방법으로 발급합니다.



[10] 한·미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필요성 여부

질문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출자만 원산지 자율발급이 가능했잖아요.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인증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 생산자 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고,
-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사항[1.증명인의 성명(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2.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3.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5.HS 품목번호와 품명, 6.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하는 문구 또는 원산지 국가명 등), 7.증명일, 8.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11] 한·EU 동일 항차 다수의 거래물품에 대한 6,000유로 기준 판단

질문

한·EU FTA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도 한·EU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U국 인증수출자 아닌 수출자로부터 동일 편명(비행기)으로 수입합니다. 수입물품의 총금액은 6,000유로가 넘지만 HAW Bill 및 Invoice는 5-6건으로 나누어 발행되며, 각 선적서류의 Invoice 금액은 6,000유로 미만입니다.

협정상에는 단일 선적서류의 금액을 기준으로 6,000유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상기한 경우도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협정상의 원산지신고 문안을 각각의 Invoice에 기재하여 각 건별로 수입신고 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수출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6,000유로 초과 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 한·EU 물품가액 6,000유로 기준 적용시 운송비 포함 여부

질문

6,000유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독일이 원산지, 송장이 5960유로이고, 운송비포함하면 6,000유로 초과인데 6,000유로를 운송비 포함으로 보아야 하는지, 지침에는 물품가액이라고 나오는데 운송비 미포함인지 문의합니다.

답변

- 한·EU FTA에서는 수출가격 6,000유로 초과하는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만이 작성 가능합니다.
- 여기서 6,000유로 초과 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3] EU역내 다른 국가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발행 여부

질문

유럽에서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장비업체로부터 수리목적으로 부품만 수입할 경우 아래의 예와 같이 장비업체가 EU내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한 부품에 대하여 수출자로서 원산지 증명을 해 줄 수 있는지요.

1. 장비업체와 부품업체가 같은 나라일 경우(예 : 장비-스웨덴 부품-스웨덴)
2. 장비업체와 부품업체가 다른 나라일 경우(예 : 장비-스웨덴 부품-영국)

답변

- EU역내국가의 원산지물품을 EU역내국가의 인증수출자(6,000유로 초과시)가 수출하면 가능합니다. 예컨대, 스웨덴 장비 수출자가 영국산 부품을 수출 하여도 원산지 증명(원산신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직접운송원칙

[1] BWT 거래 시 직접운송 원칙 위배 여부

질문

EU나 한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에서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거래를 한다면 “직접운송” 원칙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창고가 제3국(홍콩)에 있다고 가정하고, BWT가 성립되어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해 온다면 이는 직접운송과, 거래당사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답변

- 한·EU FTA에서는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직접운송 원칙)
- 따라서 보세창고가 제3국(홍콩)에 있다고 가정하고, BWT가 성립되어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해 온다면 이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다만,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등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아래 관련규정 2항 참조)를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 직점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 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2] 한·EU 경유항에서의 직접운송 인정 서류

질문

직접 운송원칙과 관련하여, 독일에 소재한 제품생산자가 복합운송 B/L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B/L상의 선적항은 NETHELANDS항에서 선적하였고 대한민국의 부산항이 도착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내까지 운송과정에서 SINGAPORE항에서 환적 후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CONTAINER NO. 및 SEAL NO.는 관세청에 제출된 B/L 정보와 B/L상의 정보가 일치함)에는 해당 B/L을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2호의 조건 충족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에 따르면, 환적의 경우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또는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해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에 따르면, “선하증권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 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B/L을 직접운송 충족의 입증서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EU산 원재료를 제3국에서 단순 가공후 수입시 FTA 적용가능 여부

질문

EU FTA 관련하여 석재(stone)는 원재료(원석 덩어리)를 한국으로 가지고 올 경우 환경법 및 기타 환경관련 제재 때문에 한국 내에서 가공하기가 어려워 제3국(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럽이 원산지인 원재료를 중국에서 세번변경되는 단순 가공하여 한국에 수입할 경우에 코드 번호가 바뀌게 되는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고,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제3국(중국) 가공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고 직접운송원칙에도 위배되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 비당사국 물류센터를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미주형, 유럽형 FTA 차이

질문

저희 회사는 스웨덴에 본사가 있고 싱가포르에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스웨덴 본사와의 거래 하에 스웨덴에서 싱가포르로 수출되어 싱가포르 물류센터에서 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관 중이던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직접운송 원칙)
- 따라서 스웨덴에서 싱가포르로 수출되어 싱가포르 물류센터에서 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관 중이던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다만, 단일 택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규정서』 제13조(직접 운송)

협정별 차이

- 운송원칙 적용에 있어서 각 협정별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해를 돋기 위해 크게 분류하면 유럽형, 미주형으로 나누어진다.
 - 미주형(미국, 칠레) FTA협정은 직접운송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비당사국에 BWT창고(물류센터)를 두고 물품을 거래하는 형태를 통하여 수출입거래를 하면서 단순경유 입증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직접 운송으로 인정 가능한 협정이다.
 - 유럽형(EU, EFTA, ASEAN, 인도) FTA협정은 수출당사국 사람에 의해서 발송한 물품이 발송당시 수입당사국 사람을 특정하여 발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발송당시 수입자가 확정되지 않는 BWT형태의 거래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5] 원산지(칠레)와 선적지(벨기에)가 상이한 경우 운송요건 충족 여부

질문

비료수입업체입니다. 이번에 질산가리(HS 2834.21.0000)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제품의 원산지는 칠레이고, 선적지는 벨기에입니다. 칠레에 실제 공장이 있어 생산이 되며, 벨기에 쪽에서 저장을 했다가 재포장하여 선적만 됩니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벨기에 쪽에서 “ORIGIN: CHILE”라고 받아 왔습니다.(한·칠레 FTA 해당 없었음) 이럴 경우, 칠레 측에 의뢰하여 한·칠레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경우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산지가 EU산이 아니고, 칠레산이므로 한·EU FTA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칠레 FTA는 직접운송(Direct Transport) 규정이 없어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될 것을 요건으로 하기는 않지만, 비당사국(벨기에)을 거쳐 (환적)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경유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송요건에 위배되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즉, 1) 한·칠레 양국이 아닌 제3국(벨기에)에서 단순 하역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2) 해당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칠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한 사안에서 보면, 단순히 “벨기에 쪽에서 저장을 했다가 재포장하여 선적만 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만이 있었는지 또는 벨기에 세관당국의 통제하(보세구역 내)에 있었는지에 대해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운송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제3국(벨기에) 환적시 실질적인(추가적인) 가공작업 없이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고 그 상황을 관련 서류(B/L, 해당 경유국 세관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한·EU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직접운송 인정 여부

질문

한·EU FTA 원산지규정을 보면, 직접 운송원칙을 적용되는데, 폴란드(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영국(본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수출하여도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찾아봐도 직접 운송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의 적용을 못 받는다고 되어있던데요. 위와 같은 경우 협정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폴란드에서 생산 수출된 제품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과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영국 (인증)수출자가 원산지가 폴란드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7] EU 제품을 싱가포르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질문

1. 원산지는 유럽산이나, 공급은 중국 혹은 싱가포르 쪽에서 됩니다. 보세창고에 보관되었다가 한국으로 공급될 경우에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시 컨테이너 개봉하여 아시아로 공급이 됩니다.
2.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선적서류에 별도로 요구되어지는 표기사항이 있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국 또는 싱가포르와 같은 제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직접 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다만, EU역내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당시 수입국이 우리나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운송상 또는 지리상의 이유 등)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8] 한·EU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산지 기재방법 문의

질문

당사(수입업체)는 Sweden 본사(수출업체)로부터 Sweden에서 제작된 제품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체코, 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등 다수의 EU국가의 각 지사공장(별도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Sweden의 본사(수출업체)에서 일괄 수입하는데 타 EU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원산지가 EU연내 여러 국가인 물품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 문안의 원산지란에 'EU' 또는 'EC'로 기재하거나 각각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면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비원산지 제품(예컨대, 스위스는 EFTA국가)에 대해서는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9] 한·EU 수출국, 제조국, 선적국이 다른 경유 직접운송 인정 여부

질문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수출자(SHIPPER ON Invoice & B/L) : 프랑스 (인증수출자)
2. 제조국 : HUNGARY
3. 선적항 : KOPER, SLOVENIA

상기처럼 모든 서류상의 수출자는 프랑스이지만 선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면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EU연내에 있는 한, EU연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과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또 EU연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연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원산지가 형가리인 물품을 슬로베니아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하더라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0] 한·EU 직접운송 인정범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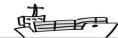
EU산 물품을 아시아총괄본부인 홍콩을 통해 아시아지역(한국포함)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홍콩은 아시아 각국의 오더를 취합하여 EU에 주문을 하면, EU는 물품을 홍콩으로 보내고 홍콩에서는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각국의 오더에 따라 취합/선별 후 다시 아시아 각국으로 재선적을 하는 형태입니다.

홍콩에서는 보세창고에 보관되며, 어떠한 추가가공도 없습니다. B/L은 두 번 발행됩니다.(EU-홍콩, 홍콩-한국) 상기 거래의 경우, 현재는 EU에서 100개를 선적하면, 그 중 일부만 한국으로 수입되고 나머지는 다른 아시아 국가로 보내지게 되어, EU에서 발행하는 Packing List 상에 한·EU FTA상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더라도, 원산지신고서와 한국의 실제 수입수량(홍콩이 발행하는 Invoice 상 수량)이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등에서 주문을 받아 홍콩이 이를 기초로 EU에 주문하므로 EU에서 선적하는 시점에 이미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수입될 물품 및 수량을 알 수는 있습니다.

1. 상기 거래에서 수출국에서 별도 구분되어 선적 관리되지는 아니하나,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수입될 물품 및 수량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운송 원칙이 인정될까요?
2. 만약 수출국에서 한국산 물품에 대하여는 선적은 함께 하더라도 Packing List(원산지확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원산지확인서와 실제수입수량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할까요?

답변

- 한·EU FTA에서는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직접 운송 원칙)
- 따라서 EU산 제품을 비당사국인 홍콩을 통해 아시아지역(한국 포함)으로 공급하는 형태로써, 홍콩 보세창고에 있다가 물품을 오더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이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다만, 단일 택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등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관련 서류로 입증하면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1] 한·EFTA 스위스 물품을 해상을 통해 수입할 경우

질문

스위스 지역특성상 육로를 통해 네덜란드로 보세운송 후 네덜란드 노트르담에서 선적하여 국내로 입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EFTA FTA를 적용하기 위해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시 적출국에 네덜란드를 기재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아니면 적출국에 스위스를 기재하고, 환적국에 네덜란드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요령을 보면, 적출국은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네덜란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물품(Originating goods)의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선적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직접운송원칙)
 -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한·EFTA 원산지 규정 제14조), 당해 물품이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상의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됩니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 2항)
- FTA특례고시 제3-5-1조 제2항 2호 규정에 따르면,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직접운송 충족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

- FTA특례고시 제3-5-1조 제2항 2호 규정
 -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2] 한·미 FTA 제3국 통과 및 환적

질문

1. 수입자 : K○○○○(한국)
2. 수출자 : G○○○○(영국)
3. 제조원 : D○○○(미국)
4. 품명 : AAAA 캡슐 완제품
5. 민원질의 요지 : 당사는 수출자 G(영국)로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AAAA(모든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의 물류시스템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영국으로 운송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운영지침상의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의 경우에 해당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미 FTA는 직접 운송(Direct Transport) 규정이 없어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비당사국(영국)을 거쳐(통과 및 환적)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경유 허용요건(아래 관련규정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송요건에 위배되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1) 한·미 양국이 아닌 제3국(영국)에서 단순 하역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2) 해당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한 사안에서 보면, 단순히 "미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영국으로 운송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 하역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만이 있었는지 또는 영국 세관당국의 통제하(보세구역 내)에 있었는지에 대해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운송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제3국(영국) 통과나 환적시 실질적인(추가적인) 가공작업 없이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그 상황을 관련서류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한·미 FTA 제6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6.13조(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13] 한·EU FTA 와 한·아세안 FTA 운송원칙 적용 차이

질문

한·EU FTA의 경우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직접 운송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규정이 한·아세안 FTA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ASEAN 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ASEAN 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 직접 운송원칙이 충족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와 같은 해석이 한·아세안 FTA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EU FTA에서는 '유럽연합(EU)' 자체도 당사국에 해당되지만, 한·아세안 FTA에서는 '아세안' 자체는 당사국이 아니고 '그 회원국' 하나 하나가 당사국이기 때문입니다.
- 즉, 한·아세안 FTA에서 직접운송은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됩니다.
 - 다만, 제3국(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지리적인 이유 또는 오로지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한 경우이고,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보존을 위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참고로,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아세안 국가내에서 내수 통관되었더라도 그 해당국가의 발급기관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9조(직접 운송)>

1. 특혜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당사국 및 수입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나. 그 상품의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14] EU 역내국 경유시 증빙서류 필요성

질문

EU 국가 간의 직접 운송원칙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EU 국가 간의 경유할 경우에 EU는 하나의 국가로 본다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운송원칙과 관련하여 EU 국가 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경유만 한다는)의 구비필요성은 없는 건지요?

답변

- EU 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 역내에서 우리 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고, 관련 증빙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15] 유럽산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질문

유럽산 시계를 미국 판매업체로부터 수입하려고 합니다. 3월 15일부터 FTA가 발효된다고 하는데, 미국산이 아닐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EU와도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유럽산 시계의 경우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한·EU FTA가 적용된다고 하면 3월 15일 이전에 수입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유럽산 시계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제품(미국산)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EU산 시계가 EU 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직접운송원칙) 따라서 협정당사국 이외의 지역(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단일 택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유국(미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물론 3월 15일 이전에 수입 하더라도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6] 한·EU 스페인 참다랑어 필레트 원산지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질문

당사는 스페인의 수출자로부터 냉동 참다랑어 필레트(HSK ; 0304-29-5000)를 한·EU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고자 합니다.

참다랑어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국적 선박이 지중해에서 어획을 하여 허가된 축양장(일종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정기간 축양을 한 후 수확하여 냉동 필레트로 가공되어 수출을 하게 됩니다.

동일 해역이라도 어획한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고, 여러 원산지의 참다랑어가 하나의 가두리에 축양을 하게 되고, 축양이 끝나면 가공하여 수출을 하게 됩니다.

- 원산지국과 수출자가 모두 동일한 국가이어야만 한·EU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동일국가가 아니라도 EU 권역내의 국가면 원산지와 수출자의 국가가 동일하지 않아도 한·EU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 직접운송일 경우만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지 즉 원산지와 수출자가 동일국가이어야만 가능하고 다르면 불가능한지 확인 부탁합니다. 동일하여야만 한다면 상기와 같은 경우 축양이 끝난 참다랑어를 가공후 최초 원산지 국가로 옮겨서 수출하여야만 한·EU FTA 협정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답변

- EU연내에 있는 한, EU연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과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EU연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연내에서 우리 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17] 한·미 FTA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질문

저희는 디젤엔진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Distributor로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디젤엔진 부품을 싱가포르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들여오는 부품은 수만종이 되며, 그 중에 많은 종이 미국에서 생산되어 싱가포르로 옮겨져서 싱가포르에서 수입 통관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제조된 품목에 대해 제3국(싱가포르)에 경유하게 될 경우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싱가포르 측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조품에 대한 어떠한 증명서류도 보완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한·미 FTA에서는 직접 운송법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단순 보관이 아니라면 적용받는 품목은 선적지가 미국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 문의내용의 사실관계를 보면, “미국에서 생산된 디젤엔진 부품이 싱가포르에서 수입 통관되고, 그 물품이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구조”로 파악되는 바,
 - 이 경우 해당물품이 싱가포르에서 수입 통관된 상황이라 “단순 하역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범위”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싱가포르 세관당국의 통제 하(보세구역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결국 싱가포르 측에서 어떠한 증명서류를 보완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협정에 따라 원산지상품(미국산)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미 FTA 제6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떠나거나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1) 한·미 양국이 아닌 제3국(싱가포르)에서 단순 하역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2) 해당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8] 싱가포르 물류센터의 EU부품이 수입되는 경우

질문

저희 회사는 외국 자동차회사의 국내법인입니다. 주로 차량의 판매 & 부품 공급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의 부품들은 벨기에로부터 한국으로 직접 수입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의 특혜 관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싱가포르에 있는 물류센터(아시아 거점 물류센터)가 벨기에로부터 수입한 부품을 한국으로 재수출하게 되는 경우,

1.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EU 부품에 대해서도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추가 필요한 절차 및 증빙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참고로, 싱가포르 물류센터에 있는 부품들은 벨기에로부터 수입된 후 재가공 되지 않으며 수입된 원상태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입니다.

답변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이 수출국(EU)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국(싱가포르)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EU역내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당시 수입국이 우리나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운송상 또는 지리상의 이유 등)로 제3국을 단순 경유(환적, 일시장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즉, 단일 택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제3국에서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거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한·EU FTA에서는 이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협정 해석상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발송되어 비당사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된 경우에는 비당사국에서의 작업의 종류 또는 세관통제에 관한 사실이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더라도 특혜 대상이 될 수 없음)
 - 즉, EU 수출자가 구매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당사국(싱가포르)의 물류기지로 발송하여 보관 중이던 물품을 EU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비당사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9] EU물품이 미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

질문

Nitrous oxide 2811.29-2000 원산지 : 헝가리, Carbon dioxide 2811.21-0000 원산지 : 헝가리 물품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직접 헝가리에서 컨테이너로 수입하면 EU관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궁금한 것은 이 제품이 미국 본사를 거쳐 미국 오클랜드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경우에는 EU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직접운송원칙) 따라서 협정당사국 이외의 지역(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단일 택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원산지가 헝가리인 물품을 미국 본사를 거쳐 미국 오클랜드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LCL로 오는 경우 위 직접 운송원칙의 예외사유(부득이한 사유로 단순 환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해당한다면 관련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한·EU 제3국 경유시 직접 운송 인정 여부

질문

한국-독일 & 네덜란드로 항공으로 수출 진행 건에 대해서 한국-독일 & 네덜란드를 룩셈부르크를 경유하여 진행 중입니다. (항공사의 스케줄에 따른 단순 경유) 이런 경우 독일, 네덜란드에서 관세 없이 수입통관 진행이 되려면 직접운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 수입자는 독일의 업체인데, 실제 물건은 네덜란드로 운송 중입니다. 이런 경우 네덜란드에서 무관세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국에서 수출되어 룩셈부르크를 경유하여 독일이나 네덜란드로 가는 경우, 룩셈부르크도 EU 회원국의 하나(즉 EU 역내)이므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고 따라서 직접 운송 관련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수입자가 독일업체이고 물품은 네덜란드로 운송되더라도 같은 EU 역내에 있으므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 제3국 경유시 단순 경유 입증서류

질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아세안 FTA나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국이 아닌 다른 협정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순 장치 목적 경유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한·아세안 FTA의 예를 들면, 원산지국이 필리핀인 물품을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리핀에서 받은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단순 장치 목적이었음을 싱가포르 관계당국이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싱가포르를 경유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2. 한·EU FTA의 예를 들면, 원산지국이 프랑스인 물품을 독일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프랑스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단순 장치 목적이었음을 독일 관계당국이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독일을 경유한다는 문구와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한 Invoice만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1.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국이 필리핀인 물품을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 필리핀에서 받은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단순 장치 목적이었음을 싱가포르 관계당국이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2.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국이 프랑스인 물품을 독일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 EU연내 국가이면 수출국(프랑스)과 선적국(독일)이 다르더라도 EU연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 프랑스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한 Invoice만 갖추면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단순 장치 목적이었음을 독일 관계당국이 입증하는 서류나 독일을 경유한다는 문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22] 한·EFTA 중국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질문

저희 스위스 파트너의 Customer가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역에 Branch 및 보세창고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EFTA 적용받기 위해서는 스위스에서 직접 운송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스위스 Origin이기는 하나 중국 보세창고에 스위스 화물을 놓고 Asia market의 Distributer로 하는 경우는 한·EFTA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

- 원산지 물품(Originating goods)의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선적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직접운송원칙)
- 따라서 스위스 Origin이기는 하나 중국 보세창고에 스위스 화물을 놓고 Asia market의 Distributer로 하는 경우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E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상품의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 한·E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제14조(직접운송)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3. 제1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1조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23] 한·EU 물품을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경우 직접운송 인정 여부

질문

- 영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데, Invoice 상에 원산지를 입증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고, B/L상에 영국의 출발항구, 한국의 부산항 도착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원료가 '싱가포르'에서 '환적'을 하게 되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단순 환적'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코자하는데, B/L상에 체약국의 출발항구와 부산항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으므로 B/L을 단순 환적의 입증서류로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 「FTA 특례고시」(아래 관련규정 참조)에 따르면, “선하증권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그 선하증권(체약국의 출발항구와 부산항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 B/L)을 단순 환적의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규정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3-5-1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 세관장은 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당해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24) FTZ(자유무역지역)에서의 라벨링 작업이 단순 환적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사실관계 : 미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 부산 신항 FTZ(자유무역지역 : 보세)에 입고 후 보세상태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라벨링은 제3국 언어로 된 라벨이며, 작업 수행 후 환적되어 제3국으로 물품이 보내어집니다.
 - 쟁점사항 : 직접 운송원칙은 체약국간 제3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환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세관 장치하에 있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다면 직접 운송을 인정하는 것으로 FTA 협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번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단순 라벨링작업'이 단순 환적증빙이 가능한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주요 쟁점사항으로 합니다.
1. 우리나라가 물류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단순 라벨링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단순환적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2.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시 제3국에서 라벨링작업 후 환적되는 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했다 인정하여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1. 자유무역지역에서 '단순 라벨링 작업'을 한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환적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선세관에 확인한 사항)
 2. FTA 협정에 따라 직접운송 요건이 약간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또 환적의 경우 요구되는 입증서류도 다양하므로, 어떤 협정이 적용되고, 어떤 입증 서류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FTA 협정적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개별 수입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심사담당자)이 직접 운송원칙 충족여부 및 이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적용은 통관예정지 세관 수입과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25] 한·EFTA 원산지 및 선적지 관련 문의

질문

원산지 및 선적지 관련 한·EFTA FTA 문의하고자 합니다.

- 원산지 : 스위스
- B/L 상 선적지 : 독일
- Invoice 계약상대자 : 독일
- Invoice 원산지 문구 기재 안 됨

이럴 경우 원산지는 Invoice에 스위스 원산지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선적지가 독일인데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보관 하였다는 서류를
스위스에서 받아야 하는지 독일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한·EFTA FTA에서는 수출자가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 여백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출자”라 함은 FTA 체결상대국(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고, 제3국(독일)의 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비록 제3국에서 작성한 Invoice에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어도 원산지증명서류로서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서류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스위스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예 :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서류의 적출국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경우
 - 일차적으로 컨테이너 봉인번호 등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 요건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 위의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유국(독일) 세관당국이 발행한 환적 또는 일시보관 입증서류(예 :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또는 보관증, 단순 경유 원산지증명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FTA특례고시(관세청 고시) 제3-5-1조 제2항 2호 규정에 따라, 체약상 대국이 내륙지국가(예 : 스위스연방)로서 ①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②적출항이 체약 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EU제품의 홍콩 물류센터 경유시 원산지 인정 여부

질문

이탈리아 소재의 해외쇼핑몰에서, 원산지는 유럽인 물품을 자체적으로 홍콩에 있는 물류센터로 보내고 그 물류센터에서 다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유럽 직배송이 아닌 게 되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이 수출국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국(홍콩)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다만, EU연내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당시 수입국”이 우리나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3국에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7] EU에서 생산된 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질문

아래와 같은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1. EU생산품을 독일에서 한국으로 직접 선적/통관 건
2. EU생산품을 독일에서 싱가포르로 선적후 다시 한국으로 선적/통관 건
3. EU생산품이 아닌 품목을 독일에서 한국으로 직접선적/통관 건
4. EU생산품이 아닌 품목을 독일에서 싱가포르로 선적후 다시 한국으로 선적/통관 건

답변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국(싱가포르)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직접 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1번의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하고, 2번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환적 또는 일시 창고 보관되어 추가적인 가공 등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협정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3번과 4번의 경우는 한·EU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제품이 아니므로 협정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8] EU 역외 제3국 경유 환적화물 협정세율 적용 여부

질문

영국에서 제조된 완제품을 홍콩에서 Transshipment를 한 후 한국으로 수입시
한 · 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1. 상업송장은 영국에서 작성해야 합니까? 홍콩에서 환적시 보세구역이라든지
특정 구역에서만 화물이 머물러야 하는 것인가요?
2. 부득이하게 홍콩을 거쳐야 한다면, 홍콩에서 Transshipment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생산자가 영국이고, 수출자가 홍콩이라고 한다면,
홍콩에서 주는 상업송장으로는 '한 · EU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답변

1. 한 · EU FTA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
서류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지는 바, 수출자(영국)가 발행하는 상업송장이나 그 밖의 상업
서류(Packing List, B/L 등)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한 · EU FTA 협정문에서는 제3국 송장 거래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2.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고,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국(홍콩업체)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직접 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 · EU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9] 직접운송원칙 적용 및 원산지 문구 유효성

질문

안녕하세요? 본사는 미국의 공구류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아시아 영업본부인 싱가포르 자체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싱가포르를 통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 EU, 한 · 미 FTA 협정조항을
보니 아래 제품은 모두 발효 즉시 관세 철폐 항목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 미국산이나 영국산 제품을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한 것이 필요합니까?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되나요?





2. 싱가포르에서 미국산, 영국산과 기타 중국산 제품등이 함께 혼합되어 수입 됩니다. 이 경우 선적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원산지별로 따로 따로 Invoice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3. HS code가 대분류, 중분류까지는 일치하지만 소분류에서 다른 경우에 대분류 (앞의 4자리)와 중간 2자리수까지만 일치하면 인정 받을 수 있나요?
4. 원산지증명서는 미국, 영국의 경우 수출자 자체가 발행가능하다고 하는데 승인된 수출자가 되려면 영국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서 등록 번호를 부여 받는지요? 미국의 경우는 수출자가 직접 발행해도 된다는데 맞는지요?
5. 동일한 제품을 계속 수입할 경우 아니면 매번 수입시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1. 한·미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미국산'을 수입할 경우 한·미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영국산'을 수입할 경우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주의할 것은, 총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당사국(싱가포르)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관련 입증서류 구비하여야 함)
2. 원산지별로 따로따로 Invoice를 작성하든, 하나의 Invoice에 품목별로 원산지를 각각 기입하든,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구분 표기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각각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구분되어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은 경우 HS 6단위까지 일치한다면 협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품목분류는 관세율 및 수출입요건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출입신고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입자가 특정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원하는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영국의 경우 영국 관세당국(세관)에 신청해야 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 세관이나 해당국 주한 대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미국의 경우는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한·EU FTA는 매 수입시마다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나, 한·미 FTA에서는 동일상품의 복수선적의 경우 증명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포괄증명이 가능하므로 처음의 원산지증명서를 일정 기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포괄증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그 포괄증명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II

원산지인증수출자

상 담 사례로 알아보는 F T A

[1]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는 방법

질문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로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부여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알고자합니다.

답변

-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뉘며, 인증요건 및 혜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증제도인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HS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은 인증요건과 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지역으로 수출이 예상되면 인증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 한정된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 지역, 인도)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서류, 신청절차 등은 실무적인 개별사안으로서 관할 본부세관 FTA 집행센터(인증센터)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EU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세관인증번호 사용법 및 보관서류

질문

저희는 최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었으며 곧 영국으로 수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 FTA 인증번호를 교부받았는데 이 번호를 어디에 쓰는 건가요?
2. 생산자와 수출자가 각기 보관해야 할 서류가 꽤 있던데, 저희가 원산지 소명서에 생산자, 수출자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저희가 보관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한 업체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답변

1. 인증번호는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할 때 수출자가 Invoice 등에 작성하는 원산지신고 문안*(아래 부속서3 참조)의 세관인증번호 기재란에 기재합니다.

*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 [한국어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팔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빙칸으로 남겨둔다.
 -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2. 생산자와 수출자가 각기 보관해야 할 서류와 관련하여, 귀사가 생산자, 수출자 모두에 해당한다면 생산자,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보관대상 원산지증빙 서류를 모두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한 재료공급자가 보관하는 것이 아님)

관련 규정

-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신고서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4항에서 규정

제15조 원산지증명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참조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나. 수출신고필증
 -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바.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 · 제공한 서류
 -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다.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출자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3.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3] 한국물품을 수입하는 독일업체가 한국에서 인증업체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질문

저희는 독일 섬유 importer의 agent로 국내 섬유업체의 오더, 선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FTA 관련 독일 importer가 저희 한국업체에 “인증수출자 ID (Authorized exporter ID)”를 요구하는데 저희 국내 업체들이 일부는 절차나 하청공장의 문제 등으로 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독일 importer가 독일 내 한국 대사관에 확인해 보니 독일 importer가 한국에서 “인증 수출자 ID (Authorized exporter ID)”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한국물건을 import 해서 독일이나 유럽내 다른 업체로 export 하기 때문에 3rd party export & trade가 됩니다) 정말로 독일업체가 한국에서 “인증수출자 ID”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 하다면 준비 절차나 필요한 사항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세관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독일 Importer와 같이 외국소재 업체가 한국에서 “인증수출자ID (Authorized exporter ID)”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참고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인증)을 받는다는 의미는 수출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4] EU 수출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질문

EU수출시 품목인증을 받은 품목과 인증을 받지 못한 품목을 같이 수출해야 할 경우 Invoice나 면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받지 못한 품목은 Invoice나 면허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 Invoice에서 꼭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인증 받은 품목의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증 받은 품목과 받지 못한 품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인증품목과 비인증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인증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시 발생비용 및 신청자격

질문

원단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프랑스 바이어와 일부 거래가 있는데 3개월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Custom Authorization No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사용하는 관세사에 문의하였더니 신청은 가능한데 기간은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금액이 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혹시 이 금액이 관세사에서 수수료로 해서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님 실제로 번호를 받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 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직접 신청해도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업체별로 인증받느냐 품목별로 인증받느냐에 따라 인증기간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20일~30일 걸리며, 세관당국에서는 인증과 관련하여 어떤 비용(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업체에서 직접 신청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인증관련 업무는 관할 본부세관 FTA 집행센터에서 처리하는데,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 다소 실무적인 사안으로서 직접 안내하기가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본부세관 FTA 집행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체약상대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프랑스가 속해 있는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여기서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하는 업체는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세관인증번호(수출자 인증번호, Customs Authorization No)가 부여되고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6]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세관인증번호 사용시 문의

질문

1.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모두를 가리키는 게 맞는지요?
2. 만일 그렇다면, 6,000유로 이상 수출시, 품목별인증수출자로만 지정되며 부여 받은 세관인증번호를 기입해도 원산지임이 증명되는 건지요? 저는 6,000유로 이상 수출시 Invoice에 기입할 수 있는 세관인증번호는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세관인증번호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맞는 정보인가요?
3. 품목별로 인증 받았을 때 제출했던 제품이 3개 정도 되는데, 그 3개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단, 참고로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hs code는 동일합니다만, 만일 hs code가 동일해도 인증을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만 세관인증번호 (품목별인증)를 사용할 수 있다면 모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4. 인증 받은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이 한 Invoice로 작성되어 수출시, 6,000유로가 넘었다고 가정하면, 인증번호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품목별 인증 번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업체별과 품목별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2. 인증 받은 협정 및 HS 6단위에 대해서는 품목별인증수출자로만 지정되어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기입하면 원산지증명이 가능합니다.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이 가능하지만 이때 업체별 이든 품목별이든 상관이 없고, 다만 인증요건이나 혜택 등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3.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 받은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만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며, HS code 6단위가 같으면 인증시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동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인증 받은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 참고 >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나뉘며, 인증요건 및 혜택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증제도인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HS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지역으로 수출이 예상되면 인증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 한정된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 지역, 인도)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저희 관세청 FTA포털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관련한 자세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개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자료실>>협정별 자료>>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참조

[7] 한·EU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질문

품목별인증을 받고자 하는 A업체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B업체에서 구입 후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이 경우에 A업체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기 위해서는 B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수취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B업체로부터 “원산지소명서” 등도 함께 수취하여 인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답변

-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서류는 아래규정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운송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EU FTA가 발효되어 고객사는 특혜관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이미 득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수출시 Commercial Invoice 상에 세관인증번호를 포함하여 Commercial Invoice 상에 꼭 기입해야 하는 문구는 어떤 것인지요?
- EUR 6,000 이하일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 또는 업체별 인증을 받지 않아도 C/O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한·EU FTA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 등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에서 정확한 문구 및 기재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당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택송화물의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 가. 한국어 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①)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②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나. 영어 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②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빙칸으로 남겨둔다.
-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 ☞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 우리나라 FTA추진현황 >> 한·EU FTA >> 한·EU FTA 협정문 >>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9) 한·EU 인증수출자의 혜택 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EU-FTA 관련 문의 드립니다.

-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업체 물품은 모두 비관세, 관세절감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EU국으로 수출할 경우)
- 업체별 인증이 아닌, 품목별 인증은 전혀 효력이 없는 건가요?
- 수입시에도 FTA C/O만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요?

답변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FTA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의 HS 6단위에 대해서만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기업에게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로, 한·EU FTA의 경우 전당 6,000유로를 초과할 때 수출자는 인증받아야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고, 기타 FTA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들(거래당사자, 직접 운송원칙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수입시에도 원산지증명(C/O)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타 FTA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들(FTA체결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직접운송원칙 등)도 갖추어야 FTA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 관세청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수출활용 >> 인증수출자 제도
 - 또한,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내용은 관할 본부세관 FTA 집행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한·EU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신고서

질문

유럽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용 부분품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6,000유로이하로 수입시 원산지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공급선이 무조건 인증수출자라야 금액에 상관없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 EU로부터 6,000유로 이하의 원산지증명서는 자율증명으로서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EU FTA에서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할 때 수출자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원산지증명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기업에게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건당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상업서류 등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11] 품목별 인증시 세번 관련 문의

질문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 세번 몇 단위로 세번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하며, EU에 포함되어 있는 각 국가마다 수입하는 물품의 세번이 각각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세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품목별 인증은 **HS 6단위**로 인증하며, 품목번호(HS Code, 세번)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협약에 의하여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서,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를 사용합니다.
 - 7단위 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하여 각기 달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를 10단위를 사용하고, 미국과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사용합니다.
- 품목별 인증 물품이 상이한 세번으로 통용될 경우에는 해당 통관서류를 토대로 품목별 추가(신청) 인증을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 각 국의 관세율은 6단위 이하로 세분하여 정하므로 이를 확인(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별로 관세율 확인 가능)해야 관세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까지 알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12] 원산지표시와 원산지증명서 차이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한계

질문

저희는 원단을 수출하는데, 옷을 유럽에서 봉제할 경우 TAG상에 원단의 원산지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표시할 때 국가와 원산지증명서 원산국이 같아야 하는지요. 또한 EU 지역 수출업체로서 6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증 받은 6개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을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고, 협정국 원산지에 대한 특혜관세 해당여부는 관세법(제73조)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는바,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달리 해석해야 할 사안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수입시에 언제나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특정 나라의 원산지임을 확인받아야 할 경우 및 원산지허위 표시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에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그런데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표시제도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원산지표시를 안 해도 되거나 원산지표시로 원산지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산지표시가 생략이 가능하여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원산지증명서로서 특혜적용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인증받은 6개 품목외 다른 품목을 수출해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그 품목들에 대해서도 품목별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고, 업체별 인증을 받으면 품목에 상관없이 인증수출자로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3]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질문

저희는 최종 완제품을 국내업체에서 공급받아 유럽(선박 엔진용 부품)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수출국이 폴란드와 크로아티아입니다. 양국 다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크로아티아의 경우 EU국가가 아닌 걸로 아는데,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다면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더라도 향후 크로아티아로 수출의 경우 송품장(Invoice)등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삽입할 필요가 없나요?
2. 주요수출품목이 한 종목이 아닌 경우 한 품목만으로 우선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고 향후 타 품목 수출시 또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품목을 받을 경우 각 공급업체로부터 관련서류 취합이 어려울 듯 하여 우선 한 품목만 받을까 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4.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소명서를 받을 경우 최종제품을 100%로 보았을 때 원재료 명세서를 각 부품별로 100% 작성해야 하나요?
5. 원산지결정기준 - CC / CTH / CTS - 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답변

1. 폴란드는 유럽연합(EU) 및 그 회원국으로서 한·EU FTA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EU) 및 그 회원국이 아니므로 한·EU FTA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크로아티아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FTA 특혜원산지증명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송품장 등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크로아티아 통관시 원산지확인을 위해 일반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나뉘며, 인증요건 및 혜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증제도인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HS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은 인증요건과 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지역으로 수출이 예상 되면 인증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 한정된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 지역, 인도)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납품업체 등)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자료이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규칙 제6조의3),
-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규칙 제6조)
4.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므로,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자료상에 원재료 내역은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5. CC : A change to this chapter from any other chapter(HS2단위 세번변경)
CTH : A change to this heading from any other heading(HS4단위 세번변경)
CTSH : A change to this subheading from any other subheading or from any other heading(HS 6단위 세번 변경)



[14]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교육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담당자가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교육을 듣고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관련하여 원산지 교육이수는 시간당 2점이 부여됩니다.(관세청 또는 민간협회, 사내교육 등을 인정)
 - 관세청 교육은 관세국경관리 연수원 (<http://ctc.customs.go.kr>), 국제원산지 정보원(<http://www.origin.or.kr>)에 민간대상 FTA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관할 세관 FTA집행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협회는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등 FTA업무관련성 등을 참고하여 인증담당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사내교육의 경우는 과목, 강사 등을 참고하여 인증심사 담당자가 인증 여부를 판단하므로 자체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인정과목별로 최대 허용 점수를 두고 있으므로,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 자료실 >> FTA일반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한·미 FTA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에 따른 효과

질문

저희는 원단 수출하는 무역회사입니다. 한·미 FTA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증수출자 지정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인증수출자와 인증수출자가 아닌자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자는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관세 당국이 인정한 자이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잘 대비할 수 있고, 다른 FTA 활용에 있어 첨부서류의 제출생략 등 원산지 증명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또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상관없이 업체(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하면 됩니다.(자율발급방식)

[16] 상업서류 범위 및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세관인증번호 생략 가능 여부

질문

독일 수출자로부터 인증수출자 통관번호 생략된 Delivery note를 받았습니다. (송품장 가격은 6,000유로 이하) 먼저, 상업서류 FTA 집행에 관한 지침을 보면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상업서류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한, 송품장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통관 번호”의 생략이 가능합니까?

답변

- 상업서류란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인도증서(Delivery note) 등입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주의할 것은, 총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고,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통관번호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 ※ 여기서 6,000유로 초과여부는(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규정

-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관련규정>

제5부 원산지 증명

제15조 일반요건

-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 ☞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http://www.fta.go.kr/>) >> 우리나라 FTA추진현황 >> 한·EU FTA >> 한·EU FTA 협정문 >>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17]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수입국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질문

당사에서 EU(폴란드)로 수출하는 물품은 HS코드는 제8409.99호이며, 동 HS 코드에 대하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바이어는 당사 수출물품의 HS코드가 제8708.99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즉 HS코드가 한국과 폴란드가 서로 다른 경우, 당사는 폴란드에서 인정받은 HS 코드인 제8708.99호에 대하여, 별도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우리나라의 품목번호와 수입국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수입국(폴란드)에서 인정받은 HS코드인 제8708.99호에 대하여 별도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추가해서 인증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수입국에서 품목번호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수입국의 세관 당국에서 발행한 '품목번호확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등으로 확인되고, 동 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인증된 품목과 같거나 인증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로 부합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8] 인증수출자 인증시 필요한 원산지교육

질문

저희 회사는 무역업체로서, 원료를 일부 수입하여 타 업체에 OEM제조하여 프랑스로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품목1가지) 직원이 3명밖에 안되어 FTA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네요. 아는 대기업친구가 FTA담당자가 있어서 문의 해 본 결과 한·EU협정에서 세번변경(CTH해당)으로 품목 원산지인증수출자만 따져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저기 읽어보고 한 결과 대충은 돌아가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없는 경우 1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컨설팅을 받기엔 무리가 있구요(비용&규모적으로), 세관에서 하는 원산지 관련 교육이수를 5시간 이상 받으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관세청 원산지 교육 이수는 시간당 2점이 부여되므로, 세관에서 하는 원산지 관련 교육이수를 5시간 이상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질문

대용량 외장 배터리 팩 제조/수출업체입니다. 자재는 중국/한국에서 소싱하여 국내공장에서 조립/제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의 95%는 해외수출이며 EU지역(독일, 핀란드, 영국, 리투아니아 등)에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여, 작년 7월부터 발효 중인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신청하게 되면 당사가 받는 구체적인 혜택이 궁금합니다. 당사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 EU 회원국 수입자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한국산)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국가(EU)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인증수출자 혜택 1) 한·EU FTA에서 수출가격이 전당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 혜택 2) 한·아세안 FTA 등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인증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III

원산지결정기준

- ① 세번별 원산지결정기준
- ②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③ 기타 원산지결정기준

1. 세번별 원산지결정기준

[1]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 결정시 반제품이나 중간재가 아닌 최하위 원재료의 세번으로 원산지 결정을 해야 하는지, 원재료 세번과 관계없이 중간재나 반제품의 세번으로 결정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완제품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 결정할 때 반제품이나 중간재가 아닌 최하위 (비역내산)원재료의 세번으로 원산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중간재 규정은 최종제품이 부가가치기준 품목일 때 중간재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경우 중간재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격을 최종제품 원산지 재료비에 계상하는 원산지기준입니다.

[2] HS 2821.10호의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한·인도 FTA 관련으로 상공회의소에서 C/O 발급시 HS 제2821.10-1000(산화철)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산지결정기준가 'CTH+RVC'로 표기됩니다. 그런데 한·EU FTA 원산지소명서 작성시에는 'CTH'로 확인이 되었는데 같은 제품일 경우에도 협정별로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 품목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의하신 품목(HS 2821.10)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 **한·인도 FTA**의 경우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H+RVC 30% 이상)이며,
 - **한·EU FTA**의 경우에는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CTH) 또는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MC 50%이하) 중 선택기준입니다.



[3] HS 2917.39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한·EU FTA 관련 HS 2917.39 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한·E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고,
- 한·칠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4] HS 3907.4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국내에서 생산하는 원료물질(HS 제3907.60호) 50%와 EU에서 수입하는 원료물질(HS 제3907.40호) 50%를 혼합하여 완제품(HS 제3907.40호)을 유럽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완제품을 EU 국가에 수출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CTH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완제품이 분류되는 HS 제3907.40호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입니다.
- 따라서, 세번변경기준(CTH)이 적용되고, 부가가치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원산지 폴리머가 폴리머 전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이다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이다.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H + RVC 25%)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SR)이다.
- **한·E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칠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 HS 3923.4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HS 제3923.40호 제품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HS 3923.40호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따라서 ‘MC 50% 이하’로 표기하면 됩니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SH + RVC 35%)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다.
- 한·E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칠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 HS 5402.20호의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원사(HS 5402.20호)를 수입하여 재봉사(HS 5401.10-2000호)로 만들어 수출하는데 HS 4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CTH 및 CC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수출물품 HS 5401.10호의 FTA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미 FTA : CC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201부터 5203까지, 5501부터 5507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한·EU FTA : SP(특정가공공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화학재료 또는 방작용 펄프
 - * 제지 원료
- 한·인도 FTA : CTH + BD40%이상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한·아세안 : CC 또는 BD40%이상 또는 BD40%이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EFTA : CC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APTA : B 55%이하
 -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즉 원산지가 수출국이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CIF ;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 생산품(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대비 55%를 초과하지 않을 것



(7) HS 5902.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저희 제품의 HS는 제5902.20-0000이며, 부원료의 HS는 제5902.61-0000입니다. 이 제품에 대하여 한·EU, 한·아세안, 한·칠레,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한·EU FTA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퍼센트 이하를 함유한 것 : 사로부터 생산된 것(SP)
 - 기타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SP)
- 한·아세안 FTA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C) 또는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BD40% 이상 또는 BU40% 이상)
- 한·칠레 FTA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 한·인도 FTA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H + BD40% 이상)

관련 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6-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참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6부터 5311까지 및 54류부터 55류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 (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SR)이다.
- 한·E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8] HS 711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한·페루 FTA 관련하여 HS CODE 7118.90 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은 협정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상기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기준이 공제법 기준인지? 아니면 집적법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페루 FTA 협정상 부가가치기준 판단을 위한 역내가치비율 계산방법은 공제법(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하는 방법) 및 집적법(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한·페루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참조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EU FTA**에서는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고,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E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고,
- **한·칠레 FTA**에서는 ‘제7113호부터 제711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9] HS 7217.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HS 7217.10 제품의 한·EU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면, 7207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사국(한국, EU) 내에서 생산된 재료로부터 생산된 제품도 원산지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산지결정기준의 검토는 비역내산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국(한국, EU 누적기준 적용)내에서 생산된 재료(역내산 재료)로만 만들어진 제품은 당연히 한국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SR)
- 한·E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C)이고,
- 한·칠레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10] HS 7225.99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한·EU FTA에 대한 PSR 문의 드립니다. HS 7225.99호에 대한 협정문 상 PSR은 “제7206, 7207, 7218호 또는 제7224호의 잉곳, 다른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으로 부터의 생산”입니다. 위 문구를 7206, 7207, 7218, 7224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HS 7206, 7207, 7218, 7224호에 해당하는 역내산 재료는 물론이고, 비원산지 재료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한·E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칠레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24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11] HS 제7320.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저희 제품의 HS Code는 제7320.20호이며, 부원료의 HS Code는 제7223.00호입니다. 이 제품(HS 제7320.20호)에 대하여 한·미, 한·EU, 한·EFTA,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칠레, 한·인도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HS 제7320.20호에 대한 국가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미 FTA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 한·EU FTA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 한·EFTA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 한·아세안 FTA
 - 해당 HS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없으며,
 -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이거나(WO),
 -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됨(CTH or RVC 40% 이상)
 - 한·칠레 FTA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 한·인도 FTA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H + BD40%이상)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6-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참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이며,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12] HS 7406.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유럽국가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인데 수입품목 세번은 HS 7406.20호 원산지결정기준 CTH와 MC50에 의거 당사 유럽 제조업체는 비 EU 국가산 원재료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MC50) 수출자 세관인증번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HS 7406.20호 물품은 원재료 HS 7403.11호로 제조하기 때문에 CTH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 문의하신 품목(HS 7406.20호)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감축되거나 철폐되는 품목에 해당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입니다.
 - 따라서 제시한 것처럼 당 품목 HS 7406.20호 물품은 원재료 HS 7403.11호로 제조한다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CTH)에 의거 4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문의하신 제품에 'MC50'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이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SH + RVC 35%)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한·E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고,
- 한·칠레 FTA에서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13] HS 8411.91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당사는 항공기 엔진부품 제작용 원자재(FORGING, CASTING 류)를 외국(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제조 가공 및 조립 작업을 거쳐 최종 항공기 엔진부품 완제품을 생산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에서 수입한 원자재(HS 8411.91)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EU 국가의 항공기 엔진부품(HS 8411.91)을 한국산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HS 8411.9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수입한 원자재와 완제품의 HS code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 중 '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원산지기준에 부적합하므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자료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CTSH + RVC 35%)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CTC & VAC)
- 한·EFTA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14] HS 8477.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한·미 FTA 관련 HS 제8477.10호 사출성형기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문의하신 품목(HS code 8477.10, 사출성형기)의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또는
 - 품목번호 8477.9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직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1.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 [BU(35%이상) or BD(45%이상)]
 2. 품목번호 8477.9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과 부가가치기준[BU(35% 이상) or BD(45%이상)]에서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협정별 차이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이다.
- **한·EU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SH + RVC 35%)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 **한·E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한·칠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15] HS 8477.20호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HS 8477.20호인 EU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시 CTH, MC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HS 8477.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단위 세번 변경기준(CTH)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부가가치기준(MC 50%)
 - 따라서 두가지 기준 중에서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2. 품목번호 8477.9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CTSH + RVC 35%)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C & VAC)
- **한·EFTA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16] HS 8515.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진동용접기가 분류되는 HS 8515.90-1000호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HS 8515.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세번 변경기준 ; CTH) 또는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부가가치기준;MC50%이하) 중 선택기준입니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 한·E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한·칠레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17] HS 8536.69호의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 자사는 커넥터 생산업체로서 8547.20과 8538.90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8536.69의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한·싱가포르 FTA 협정 관련으로 제8536.6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상기 원산지결정기준 내용에서 '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답변

- HS 8536.69호의 한·싱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의 의미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이 적용되지만, 제853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 다만,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제853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생산품 전체가격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HS 8536.69호의 한·싱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 다른 하나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의 의미는 제853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한 모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만, 아울러(동시에) 역내부가가치가 50%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CTH+BD50%이상)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 한·EU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SH + RVC 35%)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 이상 또는 2. 공제법 45% 이상
- 한·E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칠레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18] HS 8607.19호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86류(철도차량) 중 HS 8607.19호의 차축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의미가 궁금합니다.

답변

- HS 8607.19호 차축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품목번호 8607.19의 차축의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HS 8607.19의 차축의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HS 8607.19의 차축의 부분품 또는 차륜의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된 것의 의미는 HS 8607.19호에 해당하는 차축의 부분품에서 제8607.19호에 해당하는 차축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8607.19호에 해당하는 차축의 부분품 또는 차륜의 부분품에서 차축이 갖추어진 여부와 관계없이 제8607.19호에 해당하는 차륜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의미로 CTSH (any) 또는 SP 또는 Other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정별 차이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EU FTA**에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며,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 **한·E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고
- **한·칠레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19] HS 9013.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저희 주요 수출품 HS Code는 제9013.10호입니다.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EU FTA와 동일하게 MC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 HS 9013.10호 물품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CTH), 또는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CTSH + BU 35% 이상 또는 BD 45% 이상)
- ※ 한·EU FTA와 동일하게 MC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6-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참조

협정별 차이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이다.
- 한·EU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SH + RVC 35%)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 한·E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한·칠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20] HS 9401.90호의 한·페루 FTA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HS 9401.90호 물품에 대한 한·페루 원산지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HS 9401.90호의 한·페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CTH), 또는
 -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BD 50% 이상 또는 BU 50% 이상)
- => 따라서, 위 결정기준 중에서 공급물품에 실제로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한·페루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참조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EU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한·E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고,
- **한·칠레 FTA**에서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1] 가죽 및 섬유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당사에서 수출하는 제품은 가죽의류(HS 4203.10)와 섬유의류(HS 6114.30, 6201.93, 6202.99, 6203.43, 6204.63, 6210.40, 6210.50, 6211.33)입니다. 당사 공장에서 직접 재단, 봉제, 완성 작업을 하여 수출을 하는데 자재에서 완제품 의류로 생산되어지므로 세번은 완전히 변경됩니다. 자재의 HS 코드는 가죽 - 4107.92, 원단직물 - 5903.20, 5407.42, 5704.61, 6005.32, 지퍼 - 9607.19, 보호대 - 6217.10, 악세사리 - 6217.10이며, 이 경우 완제품 의류의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는 made in korea로 자율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먼저 문의하신 품목 중에서 가죽의류(HS 4203.10)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입니다.
 -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HS 4107.92 가죽)가 비록 비역내산이더라도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여 4단위 이상 세번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상품(한국산)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섬유의류(HS 6114.30, 6201.93, 6202.99, 6203.43, 6204.63, 6210.40, 6210.50, 6211.33)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 6114.3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최소기준 : 총중량의 7% 이하)
 - 6201.93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6202.99 이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2] 경편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국내외에 걸친 여러 가지 설명회에 참석 하던 중 나타난 의문점으로 경편직물이 국내에서는 YARN FORWARD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2월 초 뉴욕 전시회 참가차 코트라 뉴욕관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현지 고문 관세사로부터 모든 KNIT 원단은 FIBRE FORWARD 적용을 받는다는 예상 밖의 유권해석을 들었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경편직물(HS 6005)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제52류,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1부터 5503.20까지, 5503.40부터 5503.90까지 및 5505부터 551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CC (HS 2단위 이상의 세번변경) [최소(미소)기준 : 총중량의 7% 이하]
- 기본적으로 다른 류(2단위)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국내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단위 세번변경기준)
- 다만,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세번으로 나열된 품목'의 경우에는 다른 류의 섬유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재료(국내산)를 사용해야 원산지(국내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세번으로 나열된 품목'에 해당하는 일부 섬유[예 : 원면,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기타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 등]는 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FIBRE FORWARD'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 따라서 '괄호 안에 세번으로 나열되지 않은 품목'[예 : 생사(silk), 양모, 섬수모, 조수모, 아마, 대마, 황마,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기타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기타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 등]은 비원산지 섬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6-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참조



(3) 모니터용 카메라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차량 후방감시용 폐쇄회로 모니터용 카메라의 한·미 FTA 관련 HS 코드,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모니터용 카메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HS 코드 : 제8525.80호
 - 관세율 : 0%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SH)

관련규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6-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참조

협정별 차이

- **한·EU FTA**에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 **한·EFTA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한·칠레 FTA에서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

[4] 모니터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보안기기에 들어가는 모니터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럽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모니터 생산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LCD 패널(HS 부호 : 8528.72)과 Main board (PCB)입니다. Main board는 한국산이지만, LCD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LCD 패널 등으로 보안기기 모니터로 만들면 HS 부호가 8528.59(EU내 HS code : 8528.59-9040)로 변경이 됩니다. 이는 세번변경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경우 모니터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문의하신 품목(보안기기에 들어가는 모니터 : HS Code 8528.59)의 한·EU FTA 협정세율(상대국의 수입관세율)은 연차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에 해당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세번변경기준이 아니고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MC법[비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공장도가격)의 45% 이하일 것]이 적용되는 품목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비원산지재료비(중국산LCD 패널의 수입시 과세가격,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국내에서 지급한 최초 확인가능가격)가 수출물품(유럽에 수출하는 모니터)의 공장도가격 45% 이하이어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별 차이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치가 발생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 **한·E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며,
- **한·칠레 FTA**에서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



(5) 섬유 YARN 가공공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한·미 FTA 는 Yarn Forward 기준인데 Rayon yarn이 역내에서 생산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yarn이 반가공 상태라서 이미 spinning이 역외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 후가공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비역내산으로 봄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칙적으로 yarn이 반가공 상태라서 이미 spinning이 역외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 후가공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것은 비역내산 yarn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다만,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의 예외도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는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그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의 의미

원사를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관련규정

한·미 FTA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일반주해

2.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 마.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 1) 원단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더 이상의 과정없이 사용하도록 준비된 마무리된 원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과 작업은 제직, 편직, 니들링(미봉), 터프팅, 펠팅, 인텐클링 또는 다른 그러한 과정과 같은 형성 과정과, 표백, 염색 그리고 날염을 포함하는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 2) 원사를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6] 신변장식용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HS 7113.11호에 분류되는 은제 신변장식용품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 한·EU FTA에서 정하는 7113호에 대한 원산지기준의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원산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따라서 HSK 7113.11-0000의 EU산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 기준이고, 구체적으로는 4단위 호(HEADING)의 변경인 CTH입니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116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이며,
- **한·E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고,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고
- **한·칠레 FTA**에서는 '제7113호부터 제7118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7] 재생필라멘트 재봉사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현재 HS 5403.90 품목(레이온 필라멘트 단사, 중국산)을 수입하여 합연, 염색, 와인딩 공정을 거쳐서 HS 5401.20 품목으로 수출합니다. 이런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HS 5401.20호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0%)되는 품목에 해당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 원료
 - 다만, 둘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 만들어진 혼방제품이면서 사용된 모든 기초방직재료의 총중량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초방직재료는 비원산지 이더라도 사용될 수 있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201부터 5203까지, 5501부터 5507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C)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CTH + RVC 40%)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이며,
- **한·EFTA FTA**에서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C)이며,
- **한·칠레 FTA**에서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8] 조미 김(Prepared Laver)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중국산 마른 김(HS 1212.20-1910)을 수입하여 한국내에서 조미김/구운김(HS 2106.90-4010)으로 가공하여 EU지역에 수출할 경우 세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지의 수입관세가 0%가 되나요?

답변

- 조미김이 분류되는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따라서, 조미 김은 사용된 재료인 마른 김(HS 1212.20호)이 우리나라에서 완전생산된 것이어야 원산지로 인정되는데 중국에서 수입해서 가공된 물품 이므로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자 측에서는 협정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 1211.20 호의 것, 제1212.20 호의 것, 또는 제1302.19 호의 인삼 제품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이다.
- 한·EFTA에서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이며,
-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며,
- 한·칠레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9] 원사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면사의 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 한·EU FTA에서는 한국에서 면사를 방적하면 원면이 수입산이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도산 목화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한국에서 방적하면 한국산 면사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지요?(면사 HS 코드는 제5205호 임)

답변

- 한·미 FTA 면사(HS 5205)의 원산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5까지 및 5501부터 5507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CC (HS 2단위 이상의 세번 변경)]
- 따라서, 한국산 또는 미국산 목화만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방적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원사는 5205호 또는 5206호에 분류되고, 사용재료 목화(원면)는 5201호에 분류되는데, 원면이 비원산지(예: 인도산) 재료로써 52류 이외의 다른 류에 해당되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류(52류)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도산이 아닌 미국산 원면을 사용하여 면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누적조항'(협정 제6.5조 참조)에 의해 원산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장

- 제6.5조(누적) 1.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적용 펄프
 4. 제지 원료

※ 방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제5205호는 별표6 제5호 참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이다.

[10] 우산(베트남산)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중국에서 원단, 살대, 핸들 등의 부자재를 베트남으로 보내어 베트남에서 조립, 수입을 하게 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부품을 조립만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는 베트남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폭의 원단을 가져가서 삼각편으로 재단 후 8폭으로 봉제하고 살대와 봉제 및 핸들 등을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답변

- 우산이 분류되는 HS 6601호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0%로 양허대상 품목에 해당되고,
- 원산지결정기준은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CTH),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RVC 40% 이상)에 원산지 물품(베트남산)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중국산 원단, 살대, 핸들 등의 부자재를 가지고 베트남에서 조립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공정'(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한, 원산지결정기준(CTH)에 충족되어 원산지 제품(베트남산)으로 인정되고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참조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EU FTA에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고,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SH + RVC 35%)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다.
- 한·EFTA에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며,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6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칠레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11] 철강류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철강류(제72류)에 대한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거나 'manufacture from ingots or other primary forms or semi-finished materials of 7206 or 7207'과 같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공공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제72류 철강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품목에 따라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 제7206호 또는 제7207호의 잉곳, 기타 일차 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므로 'CTH'로 표기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 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품목번호 7206부터 7207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등이 있으며,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다.
- **한·E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칠레 FTA**에서는 '제7206호 및 제7207호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12] 화장품원료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태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원료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정만약 화장품 원료가 HS 3824.90호에 분류된다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적용된 원산지기준을 적으면 됩니다.
 -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이거나(WO)
 - HS 4단위 이상의 세 번 변경이 발생하였거나(CTH)
 -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RVC 40% 이상)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참조

협정별 차이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EU 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인도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SH + RVC 35%)이다.
- 한·페루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변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이다.
- 한·EFTA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 한·칠레 FTA에서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3. 기타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결정기준 - 누적기준(폐자재)

질문

독일에서 폐엔진(스크랩)을 수입해서 융해 등을 통하여 자동차 부속품을 만들고 독일로 수출 또는 국내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품 원가의 90%이상은 스크랩으로 구성되며 10%는 가공비 정도입니다.

1. 수출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판정시 구매단위 증명상 수입된 폐엔진은 역내산 부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2. 국내업체로 공급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판정시 폐엔진을 충분한 가공(융해)를 거쳐 만든 부속품이므로 역내산으로 판정하여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적(accumulation)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부속품 생산과정에 독일산 폐엔진을 사용한 경우, 한·EU FTA에서 그 폐엔진을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 독일로 수출되는 부속품의 원산지 판정시 구매단위 증명상 수입된 폐엔진은 역내산 부품으로 처리해도 됩니다.(한·EU FTA 누적기준 적용)
2. 국내업체로 공급되는 부속품의 경우 그 국내업체가 다시 최종제품(자동차 등)을 생산하여 EU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에 원산지 충족으로 판정해도 상관없지만,

국내업체로 공급되는 부속품이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수출되지 않는 경우의 원산지판정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원산지 판정 및 표시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산지결정기준 - 누적기준(한·EFTA)

질문

한·EFTA FTA 협정문 제3조(원산지누적) 3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EFTA FTA에서 원산지 결정시 누적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 양자간의 누적 인지, 동 협정 내의 다자간의 누적인지 문의 드립니다.

즉,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한 후(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이 이루어짐), 이를 노르웨이에 수출할 경우, 스위스로부터 구매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결정을 수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 한·EFTA FTA의 누적기준의 적용과 관련, 재료누적의 경우에는 다국누적을 인정합니다.
- 다만, 한·EFTA 협정에서는 예외적으로 품목별 기준에서 다국누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농업협정과 관련하여 양국누적도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품목에 따른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한·EFTA 원산지 규정 제3조 원산지 누적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2.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방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한다

협정별 차이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조 원산지 누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7조 누적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3] 원산지결정기준 - 중간재 규정(한·페루 FTA)

질문

- 한·페루 원산지 관련 규정 중 제3.4조 중간재 규정 2항에 비원산지 상품이 후에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때에는 가.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으로는,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 고려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원산지재료 60원 원산지재료 40원을 통해 100원짜리 비원산지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 상품을 다시 1,000원짜리 상품을 만드는 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100원짜리 비원산지 상품 전체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100원짜리 비원산지상품중 비원산지재료인 60원만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보라는 말인지 해설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고객님이 제시한 사례(비원산지 재료 60원 원산지 재료 40원을 통해 100원 짜리 비원산지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 상품을 다시 1,000원 짜리 상품을 만드는 공정에 투입하는 경우)에서 보면,
 - 해당 물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100원 짜리 비원산지 상품 중 비원산지 재료인 60원만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보라는 의미이고,
 - 해당 물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100원 짜리 비원산지 상품 중 원산지 재료인 40원만 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즉, 중간재가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비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는, 중간재에 사용된 재료는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재료비 또는 비원산지 재료비에 각각 계상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4조 중간재

1. 원산지 상품이 후에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때에는,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으로는 고려되지 않는다.
2. 비원산지 상품이 후에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때에는,
 - 가.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으로는,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한다. 그리고
 - 나.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으로는,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만 고려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 - 중간재 적용 대상

질문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중간재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수출자) 뿐만 아니라 원산지확인서(국내 생산자)도 원산지 결정시 중간재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요. 현재 적용하고자하는 협정은 한·EU입니다.

답변

-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 협정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시에도 FTA 협정별·품목별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하는바, 원산지확인서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도 중간재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중간재는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자가 생산재료)를 의미하며, 원산지재료로서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5] 원산지결정기준 - 대체가능물품

질문

원산지상품인 A와 A의 대체가능상품인 비원산지 상품인 A'가 함께 재고로 보관되고 있고, 평균법을 재고관리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시 원산지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상품 A가 300개 비원산지상품 A'(A의 대체가능 상품) 700개 일 때, 한번에 대해 이 상품이 100개가 선적된다고 하면 30개는 원산지로 70개는 비원산지로 보는 것이 맞나요?

답변

-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할 때,
 - 일정기간 재료의 총수량 : 1,000개
 - 총수량 대비 원산지상품 비율 $300/1,000 = 30\%$
 - 일정기간 수출된 상품 100개에는 원산지상품 30개($100*30\%$)와 비원산지상품 70개($100-30$)가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원산지결정기준 - Ingots의 중간재 해당여부

질문

동과 니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동(64%), 니켈(18%), 아연(18%)으로 제조한 판, 코일 또는 선 형태로 제조합니다. 한·EU FTA와 한·인도 FTA는 비역내산(비원산지재료) 비율이 낮아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데 당사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비록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주조과정에서의 중간재는 원산지재료로 인정됨을 알 수 있는데 당사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연속주조과정에서 생산되는 INGOTS은 중간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중간부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최종 제품생산에 사용한 경우, 상품의 최종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중간부품을 중간재라고 합니다.
- 따라서 연속주조 부분에서 생산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잉곳은 중간재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제6항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별표 9]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 4) 1) 및 2)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자가 생산한 재료(이하 “중간재”라 한다)는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본다.

[7] 원산지결정기준 - 불인정공정

질문

인쇄용 필름을 구입하여 사진, 그림, 포스터를 인쇄하여 출력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필름에 포스터를 인쇄하는 고급 인쇄기를 가지고 인쇄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인쇄한 필름을 수출한다면, FTA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불인정공정은 FTA별로 예시되어 있거나 열거되어 있습니다.
 - 한·EU FTA의 경우에는 의정서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조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공정은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제분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 캔, 플라스틱,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더. 동물의 도살
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상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8] 원산지결정기준 - 간접재료

질문

다이싱필름은 반도체의 웨이퍼다이싱 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인데, 공정에서 사용되고 폐기되기 때문에 실제 고객사의 최종제품에는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는 간접재료로서 재료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간접재료는 원산지결정기준시 재료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간접재료는 원산지결정시 '재료'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간접재료가 비원산지제품이더라도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 산정시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포함시킵니다.

관련규정

『한·미 FTA』 제 6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6.12조 간접재료

각 당사국은 제6.1조 가호, 나호1목 및 다호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간접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한·인도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5조 간접재료

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한·페루 FTA』 제 3장 원산지규정

제3.13조 간접재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제2항에 정의된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연료, 에너지, 촉매 및 용제
 - 나.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 기구 및 보급품
 - 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 장비 및 보급품
 - 라. 공구, 금형 및 주형
 - 마. 장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된 예비부품 및 재료
 - 바. 생산에 사용되거나 장비 및 건물의 운용에 사용된 윤활제, 윤활유, 조합용 재료 및 그 밖의 재료, 그리고
 - 사. 그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았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 그 생산의 일부임이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9] 원산지결정기준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질문

APTA 협약에서는 (구매)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지침이 없으며, 중국으로 수출시에 부가가치기준(BD 45%)으로 원산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한 원부재료들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역내/비역내산을 구분해야 하는지, 어떤 양식으로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APTA 협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원산지제도 운영에관한고시」 제2-7조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 APTA는 품목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에 의하여 부속서 II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특별원산지기준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 완전생산기준(A) (협정 제2조)협정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이어야 합니다.
 -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B) (협정 제3조)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즉 원산지가 수출국이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 생산품(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대비 55%를 초과하지 않아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 누적부가가치기준(C) (협정 제4조)당해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협정참가국들(중국, 한국 등 APTA협정국가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누적부가가치)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최종 가공국가의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 특별원산지기준(D) (협정 제10조)최빈개발도상 참가국(방글라데시, 라오스)에서 생산된 상품은 위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비율보다 10% 특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3조는 비율이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4조는 비율이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7조**

제2-7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 ① 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개정 2008.12.9)

3. 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②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홈페이지 통관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특혜원산지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 APTA협정은 1-3호) 및 수출신고번호 등 원산지증명발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③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가 당해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에 일치하는지 여부와 수수료 납부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통관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수출자용, 수입자용)를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분실 등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발급” 또는 “Reissue” 등의 표현으로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⑥ 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자의 제조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발급기관등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을 경유 특혜 공여국에 등록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법, FTA이행특례법,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지식경제부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9)

[10] 원산지결정기준 - 역내부가가치 산정 방식**질문**

안녕하세요. 한·아세안의 경우 협정문에 보면 역내부가가치 산정 방식에 있어서 집적법과 공제법을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각 수출당사국간 일관되게 하나의 방식을 고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협정에 속하는 각 당사국간에 역내부가가치 산정 방식이 이미 정해진 것이 있을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한·아세안 FTA의 경우 RVC 계산법에서 집적법과 공제법 중 국가별로 한쪽을 고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집적법은 부르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가 채택하고,
 - 공제법은 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11] 폐자재의 완전생산기준에 따른 '역내산 처리 가능' 여부

질문

폐엔진를 사용할 경우 완전생산기준에 따른 모든 협정에서 역내산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적(Accumulation)이라 합니다.
- 즉, 각 협정에 따른 역내(예컨대, 한·EU 간, 한·아세안 간 등)에서만 누적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협정에서 역내산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부속품 생산과정에 독일산 폐엔진을 사용한 경우, 한·EU FTA에서 그 폐엔진을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독일로 수출되는 부속품의 원산지 결정 시 구매단위 증명 상 수입된 폐엔진은 역내산 부품으로 처리해도 됩니다.(한·EU FTA 누적기준 적용)
- 그러나, 독일산 폐엔진을 사용한 경우, EU 이외의 지역(예컨대, 아세안, 인도 등)으로 수출한다면 이때에는 누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역내산 부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한·EU FTA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조 원산지 누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협정별 차이

- **한·EFTA FTA(협정 부속서 I 제3조 원산지 누적)**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2.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한다.
 3. 제2항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수의 재료가 사용되고 동 재료가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수출 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는 최고 과세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출 당사국에서 지급한 가장 높은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제7조 누적)**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12] 한·EU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

질문

한·EU FTA 관련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시 HS 5402.48호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중 4호에 나와 있는 결정기준에 대한 표기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SP로 기재하면 됩니다.
- HS 5402.48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 (카드, 코움 또는 그밖에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 원료 다만, 둘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 만들어진 혼방제품이면서 사용된 모든 기초방직재료의 총중량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초 방직재료는 비원산지이더라도 사용될 수 있다.

[13] RC와 MC 차이점

질문

RC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 MC는 비역내 부가가치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가가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원산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방법(RVC)
 - 비원산국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방법(MC)
- 세계 각국의 원산지 협정을 보면 크게 두가지 유형 즉, 유럽지역(PANEURO 시스템)은 주로 MC법을 채용하고, 미주지역(NAFTA 모델)은 주로 RVC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 각 지역의 연역적인 이유로 RVC와 MC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품가격(FOB 또는 공장도가격)이나 재료비계산 등 협정별로 산출방식이 다르므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자입니다. 그런데 공급처에서 수출하는 문제 때문에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하는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상담신청 드립니다. 품목번호는 8466.93이고 한·EU, 한·미국,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인도에 대해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EU는 CTH, 한·미국은 CTH+BD인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찾기가 쉽지 않네요.

답변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증명서(C/O)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시에도 FTA 협정별·품목별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 문의하신 FTA 적용 관련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 FTA포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기준(PSR) >>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15] 콜롬비아산 커피원두를 미국에서 볶은 경우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질문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의 커피 원두를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볶는 과정을 거치고 (카페인 제거 안함)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대외 무역법상 원산지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보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0901.21호로 변경되는 경우라고 나오는데 그럼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걸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미 FTA에서 HS 0901.21(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볶은 커피)의 원산지 결정기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SH)
- HS 0901.11(볶지 아니한 커피)에서 HS 0901.21(볶은 커피)로 소호(HS 6단위)가 변경되어 FTA 특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므로 한·미 FTA 관세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16] 한·아세안 FTA 임가공 수입 관련 원산지결정기준 및 기재 가격

질문

캄보디아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HOUSING, TERMINAL, 전선, 전선TAPE, 휴즈 등 원재료를 보내어 세탁기, 냉장고에 부착하는 ASS'Y WIRE HARNESS PART(H.S NO. 8544.42-2090)를 완성하여 임가공 수입하고자 합니다. 동 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증명서 발급 받을 시 원산지기준을 어떻게 받아야 하며 증명서에 표기되는 금액을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협정별 기재 요령에 맞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문의하신 품목(HS Code 8544.42-2090)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즉, CTH 또는 RVC 40%로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 FTA에 따른 협정세율(연도별 세율 포함) 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입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17]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작성방법

질문

프랑스에서 원재료(HS 3902호)를 수입하여 국내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구성중합체가 중량으로 전체 구성중합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원산지포괄확인서의 7.원산지결정기준란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앞부분은 CTH인 것은 알겠는데 단서 부분(중량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요?

답변

- 원산지(포괄)확인서의 7.원산지결정기준란에는 'CTH'로 기재하고, 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18]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입증서류 제출 여부

질문

HS 품목번호 제3921.90호, 제3920.51호, 제3901.10호, 제3901.30호의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품목별 원산지 인증 신청서에 원산지결정기준을 CTH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 BOM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 문의하신 세번의 한·EU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거래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즉,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또는 MC 25% 중 선택하실 수 있으므로 CTH 적용이 가능합니다.
 - FTA관세특례법 고시 제2-2-5조 제3항의 1호 및 2호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경우 원산지 소명서 입증서류로 BOM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관세법 특례법 고시

제2-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신청자는 수출물품의 완료되기 전(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수출 물품의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까지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 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제1항 제5호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 (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4.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 ④ <삭제>





[19]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판단

질문

한·칠레 FTA 협정이 적용이 되는 HS 8415.90의 개별 원산지기준이 CTH이면, 원산지를 결정할 경우 CTH에 미충족하여 부가가치기준(공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면 원산지확인서상 원산지결정기준란에 BD 45%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물품의 원산지기준인 CTH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에 원산지결정기준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적는다.”라고 되어 있고, 한·칠레 FTA 협정 제4.2조 1항 라목의 내용은 세번변경기준이 배제되고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적용한 기준(BD 45%)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0]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공공정기준

질문

EU에 직물을 수출하고 있어 이번에 한·EU FTA 수출인증을 받았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SP(가공공정기준)로 받았습니다. 국내에도 협력업체에 직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협력업체에서 원산지확인서 요구시 원산지결정기준이 SP가 되는지와 협력업체는 EU 뿐만 아니라 다른 FTA 체결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원산지 확인서에 적용대상 협정에 EU 외 다른 체결국을 작성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 협정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시에도 FTA 협정별·품목별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 협력업체가 EU로 수출한다면 원산지확인서의 결정기준도 'SP'로 하면 됩니다.
 - EU 외에 다른 체결국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른 FTA 체결국의 경우에는 다른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결정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21] EU FTA 관세특혜 적용 여부

질문

선적자가 자국내 세관에 수출인증자로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문구와 서명 등을 송품장 이외의 다른 서류에 작성한 경우 EU(유럽연합)와의 관세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수출자 : 스위스(비 EU 회원국), 선적자 : 프랑스(EU 회원국)

원산지 : 프랑스, 수입자 : 한국

선적경로 : 프랑스 ⇒ 한국

답변

○ 한·EU FTA에서 제3국 송장발행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스위스)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EU역내의 (인증)수출자가*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고[즉, 원산지신고서는 EU역내(프랑스 또는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B/L 등)만 유효합니다], 기타 직접 운송원칙 등 협정적용의 요건을 갖춘다면 FTA 관세특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만 발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4항

제15조 원산지증명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22] 원산지결정기준 - 비역내산 부착물로 제조한 양말 적용 여부

질문

양말(HS 6115.95)에 단추(HS 9606)를 부착하여 수출할 예정입니다. 단추의 아래 물드는 국내 업체에서 생산한 것이고, 단추에 씌여진 직물은 중국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단추를 원산지 결정을 해야 하는지, 양말에는 방울이나 단추, 리본, 레이스 등 여러 가지 부착물이 있는데 부착물의 원산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미 FTA 부속서 4-가(섬유,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61류 규칙 2에 따르면, "이 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결정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단추'와 같은 부착물은 '양말'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말의 원산지 기준을 결정할 때 부착물인 단추는 제외하고 결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양말(HS 6115)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 (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양말에 부착되는 단추(HS 9606)는 다른 류에 해당하므로 비역내산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양말(HS 6115)의 원산지기준(2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국내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을 전제로 함)

[23] 제품과 같은 류의 재질을 사용해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사용 가능 여부

질문

완제품의 HS는 7002.39(유리제 구, 봉, 관)입니다. 해당 제품의 한·칠레 협정의 결정기준이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원자재 중에 같은 류의 재질이 사용되어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에 대하여 협력업체에서 국산에 충족된다고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해 줬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재질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재질을 포함하여서 최종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한·칠레 FTA에서 HS 7002.39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인데, 이것은 수출물품(HS 7002.39)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재가 비역내산(칠레 이외 수입산 또는 원산지 미상)일 경우 적어도 2단위(류) 세번변경이 있어야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한국산)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수출물품(HS 7002.39)의 생산에 국산 또는 칠레산 원자재(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확인)가 사용된 경우에는 위 원산지기준(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류의 재료가 사용되더라도 무방합니다. 즉, 한국산 또는 칠레산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역내산 원자재에 대하여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IV

원산지증명서 발급

- ① 기관발급
- ② 자율발급
- ③ 한·미 FTA 권고서식 및 협정별 서식



1. 기관발급

[1] 한 아세안 FTA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질문

저는 한국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는 무역회사에 근무합니다. 베트남에서 FTA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 있는데, 발급절차가 까다로워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수출만 하고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제조회사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저희는 베트남으로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이며, 이 서류의 작성권자는 누가 되는가요? 예를 들어, 원산지소명서(수출업자), 원산지확인서(제조업자) 등 인가요? 수출용원재료확인서 및 자재명세서 등등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수출업자가 작성하나요, 아니면 제조업자가 작성하나요?

답변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국내제조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세관에 발급 신청할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 포탈시스템(Uni-Pass)에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Uni-Pass 시스템에 접속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신청서 내역을 입력한 후 첨부서류를 PDF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발급 신청하면 되며, 원산지증명서 내역 입력방법 및 구체적인 발급절차는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 > “FTA 원산지증명서” 메뉴 > 인터넷 발급절차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확인서는 생산자(공급자)가 작성합니다.
 - 생산자가 원재료 명세, 생산 원가 등을 제공해 주면 원산지소명서를 수출자가 작성해도 무방하나, 수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가 작성하여 세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들로서, 단순 수출자가 접근하기 곤란한 서류가 많으므로 필요한 경우 생산자가 작성하여 직접 세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 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 한·아세안 FTA 제3국 발행 송품장 표시방법**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국에서 생활도자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물품은 태국에서 수입하고 송품장은 제3국에서 발행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원산지증명서 13번란의 Third country invoicing에 체크하고 7번란에 송품장 발행회사와 국가를 넣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국에 요청을 하였는데 7번란에는 이러한 표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2번란에 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 한·아세안 FTA에서 협정문 부속서3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별첨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Overleaf Note)"에 따라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제13번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체크하고, 제7번 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명 및 국가명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한·아세안 FTA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관세사 사무원입니다. 금번 당사무소의 거래처에서 말레이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 말레이시아 광구에서 생산된 원유가 공동지분 즉 말레이시아 40%, 베트남 30%, 인도네시아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권 또한 지분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 금번 반입된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원유이며, 판매권자인 베트남 회사와 인도네시아 회사가 말레이시아 영역 안에 소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판매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였으나 영역 내에 소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 한·아세안 FTA에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므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수출자는 말레이시아산 원유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한·아세안 FTA에서는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말레이시아 생산자(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로 하여금 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2-2-2조(원산지증명서 신청자) ②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본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한·아세안 FTA AK Form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구매품에 대한 AK form 발급 신청 시, 소명서 및 원산지증빙 자료 부분에서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소명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원산지 확인서만 제출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이 경우, 소명서 상 기재되어야 하는 재료에 대한 정보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즉, 1)수출거래증명(필증, Invoice 등), 2)원산지소명서, 3)원산지확인서 이 세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BOM같은 거 빼고,) A세관에서는 위의 세가지 서류만으로도 발급 가능하다고 하고, B세관에서는 소명서 및 증빙자료(BOM등)를 제조사 협조를 구해 제출해야 발급 가능하다고 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법령상으로 보면,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예: 자재명세서(BOM)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0.3.2, 2010.12.31>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 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③ 규칙 제6조제1항 제5호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 (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5) 한·아세안 FTA 원자재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질문

태국 세탁기 부품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사에서 저희가 사용할 자재를 취합하여 태국 공장으로 보내면 태국의 BOI(투자촉진위원회) 후원 절차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국 세관과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A-K FTA로 수입을 하려합니다. 알고 싶은 사항은 본사(공장)에서 자재를 납품받아 저희에게 보내는데 원산지증명서를 본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본사에서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 한국에 있는 본사(공장)가 수출자로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역업체 등록과는 무관함)
- 원산지증명서(Form AK) 발급신청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원산지소명서(FTA특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증명서발급 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세관에 신청하는 방법은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포탈 시스템(Uni-Pass)에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Uni-Pass 시스템에 접속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내역을 입력한 후 첨부서류를 PDF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선적완료전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사본 또는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세안 지역과 거래를 할 예정인데, 바이어가 AK Form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물품을 구매하여 AK Form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 할 경우, 어떤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한 발급 신청 및 서류구비 경험 있음).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 원재료 명세 부분은 판매업체에서 공개하지 않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물품인데 100개는 직접 생산하고 100개는 구매품입니다. 두 경우 모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때, 아세안으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 C/O 신청 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생산자료도 그냥 직접 생산한 것에 갈음하여 작성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증명서
 5.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즉, 국내 생산물을 구매하여 AK Form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 할 경우에도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한 발급신청 및 서류와 다르지 않습니다.

-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되고,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재료명세 부분을 판매업체에서 공개하지 않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물품에 대한 생산 자료를 그냥 직접 생산한 것에 갈음하여 작성할 수는 없고,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되고, 원재료명세 부분을 판매업체에서 공개하지 않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7]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질문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을 해 봐서 서명은 등록되어 있는데 FTA용은 처음이라 원산지소명서, 생산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리스트, 원재료투입 입증서류, 역내산 및 국산원재료 입증서류 품이 있는 것인지 아님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 사용 HS code는 9031.10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FTA특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 세번변경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기타 해당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2. 신청방법(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함)
 -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포털시스템(Uni-Pass)에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Uni-Pass 시스템에 접속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내역을 입력한 후 첨부서류를 PDF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3.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이내에 선적완료전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사본 또는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8]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신청기한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질문

안녕하세요. 1월6일 수출신고하고 선적했는데, 지금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출 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데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FTA 가이드에서 수출신고 후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본 기억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선적완료전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선하증권 사본 또는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선적완료전 신청시 구비서류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제출 생략 가능)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원산지소명서(FTA특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 세번변경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기타 해당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관련 규정

- '한·인도 CEPA' 제4장(원산지 절차) 제4.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교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다.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81호)에 따르면, "신청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까지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한·인도 CEPA 소량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질문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한국산 일부 원자재에 대하여 누적시킬 필요가 있어 한국에서 인도로 공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원부자재는 아주 소량으로 몇 차례 특송업체를 통하여 무상 공급합니다. 별도의 수출신고절차 없이 특송업체를 통하여 간이목록통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특송업체를 통하여 간이목록통관으로 반출시에는 C/O 발급신청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답변

- FTA 특례고시 제2-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르면, 한·인도 CEPA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까지 동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 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수출신고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에 갤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 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 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0] 한·아세안 FTA 수출물품에 대한 AK Form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HS부호

질문

저희 회사에서 태국 쪽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한국 HS CODE는 3921.19-1090입니다. 하지만 태국 업체에서 요청한 AK Form 원산지증명서에 들어갈 HS CODE는 3921.19-90입니다. 듣기로는 AK Form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는 면장의 HS CODE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태국 업체에서 요청한 3921.19-90을 사용이 불가합니다. 혹자는 면장에 입력하는 HS CODE와는 별도로 AK Form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입국의 HS CODE를 입력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을 보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7번란의 HS Code는 수입당사국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AK Form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는 협정에 따라 태국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수출신고서(면장)에 입력하는 HS Code와는 별개로 AK Form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입국의 HS CODE를 입력하여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2. 자율발급

[1] 한·EU FTA에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

질문

1. 이태리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발급기관은 어디인지요
2. 수출국은 덴마크이고 원산지는 이태리인 경우(재질이 이태리 나무이고 가공은 덴마크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덴마크 발급기관은 어디인지요

답변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기관발급 방식이 아님),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상업송장 등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발급방식)
- EU연내에 있는 한 EU연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과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협정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덴마크 수출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한·EU FTA 관련 6,000유로 판정기준

질문

한·EU FTA 관련 질의입니다. 단일 운송장에 여러 EU수출자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고(단, 포장은 각각) 그 여러 수출자의 송품장이 각각 발행된 경우, 6,000유로 초과여부의 판정을 각각의 수출자의 송품장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아니면 모든 수출자의 송품장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6,000유로 초과여부는 기본적으로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 그러나 수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출자 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일 운송장에 여러 수출자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고(포장은 각각 되어 있음) 그 여러 수출자의 송품장이 각각 발행된 경우에는 각각 수출자의 송품장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각각의 수출자 별로 송품장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건은 인증수출자이여야 하고, 6,000유로 이하인 건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작성 가능합니다.



[3] 한·EU FTA가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규정

질문

안녕하세요? 이태리 바이어와 거래 중이며, 한·EU 품목별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Invoice로 자율 발급하는 업체입니다. 바이어 측에서 Invoice에 FTA 원산지 관련 문구가 다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았던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voice가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에 바이어를 설득시키고자 하는데요, 혹시 “원산지신고서 문안6)은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이라고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문의사항은 의정서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신고서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한·EU FTA협정에서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신고서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4항에서 규정

제15조 원산지증명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4] 한·EFTA FTA 분할선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방법

질문

플랜트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수출신고는 플랜트에 대해서 1건으로 신고, 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랜트 자체의 용적이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선적하고 있으며, 수입국에서 통관할 때는 플랜트(완제품)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증명 C/O 및 자율증명 C/O의 발급방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EFTA FTA C/O 자율증명시 수출신고는 1건으로 통관되고 선적은 2회에 걸쳐 분할선적되고 송품장도 1건으로 작성됩니다. 원산지증명을 위해서는 송품장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해야 하는 바, 분할선적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된 1건의 Invoice에 그대로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 가능하므로 분할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단, 동일 선적분에 대하여 B/L 분할할 경우(원산지증명서상에 표시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관리 필요),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한·EFTA 협정 제2부 통관절차 제4절 원산지증명 제18조에 의하면 "HS 통칙 제2호 가목(미조립 완성품)의 범위 내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 또는 미조립된 상품을 분할 수입하는 경우, 첫 번째 분할 수입시에 그 상품에 대한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만 관세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여 특정 미조립 완성품의 분할 선적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로서 협정관세 적용의 여지를 부여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I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18조 분할수입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하에서 수입자의 요청시 HS 일반통칙 제2조가호의 의미 내에서의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 또는 미조립된 상품을 분할수입하는 경우, 첫 번째 분할수입시에 그 상품에 대한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만 관세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5)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요령

질문

이태리, 독일에서 항공으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니 해당국 BUYER 측에서 송장에 문구기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자국에서 해외 수출되는 화물의 송장에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수출이 되어 지고 있다고 하며 따라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구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야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아래 관련규정 부속서3 참조)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래 관련규정을 안내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 가. 한국어 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①)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②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나. 영어 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②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팔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빙칸으로 남겨둔다.
-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6]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구비해야 할 서류

질문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구비해야 할 서류 또는 시스템이 무엇인지요?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체약상대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자율발급방식으로서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주의 :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한·EU FTA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 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명역서(BOM), 원가 계산서, 제조공정도 등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서류 및 원산지 확인서(재료 또는 최종물품)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수출자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판정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프로그램을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관련서류 및 해당 물품이 생산되어서 수출되기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원산지증명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부속서 3

*** 원산지신고서 문안****가.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①)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②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나.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②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팔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빙칸으로 남겨둔다.
-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명서류 등)**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7] 한·EU FTA가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규정

질문

저희 회사는 강섬유(HS CODE : 7326.20-0000)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현재 유럽국가나 페루, 칠레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EU·페루·칠레에 수출시, 각 나라마다 원산지 증명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EU(자율발급방식)

-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을 기재하여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발급제로 운영됩니다. 동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에서 인증받은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 한·EU 대상국 및 품목 확인(한·EU 협정에 의한 수출 대상국(EU 27개국) 인지, 수출품이 원산지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한국산인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상업송장 작성(EU 지역으로 수출이 결정된 물품의 송장을 작성합니다.)
- 상업송장에 원산지 관련 문구 첨가 및 서명(한·EU 원산지규정에 의거 한국산 물품의 수출시 '협정문 부속서 I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을 상업송장에 기재합니다.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세관에서 인증받은 인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는 인증심사시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서명 생략이 가능합니다.)
- 무역서류 발송(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을 비롯한 무역서류를 바이어 측에 발송합니다.)

○ 페루(협정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발급방식)

-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 "자율증명"을 허용합니다.(부속서 4A 규칙 1 및 4)

※ 기관증명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의 관계당국이 발급(부속서 4A 규칙 2)



- 협정 발효 5년 이후에는 전면 "자율증명" 제도로 전환됩니다.
※ 자율증명 : 원산지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수출시에 발급(제4.1조)
 -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양국이 모두 부속서에 규정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 칠레(자율발급방식)
- 한·칠레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 발급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수출자는 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그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재하는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양국 모두 동일한 통일 증명서식을 사용합니다.

3. 한·미 FTA 권고서식 및 협정별 서식

[1] 한·미 FTA 포괄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작성요령

질문

- 권고서식의 작성방법을 보고 애매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동종동질의 기준은? (ex. 품명은 같지만 폭, 길이, 컬러가 다른 경우는 동종동질 제외?)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동종동질 물품을 수출할 경우 포괄증명기간을 작성하면 12개월 동안 다음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생산자 : 알고 있는 경우 기재라고 써 있는데, 공란도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 수입자 : 알고 있는 경우 기재라고 써 있는데, 공란도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 serial no. :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HS no. : 국내 면장과 수입국의 수입통관 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일치해야 하나요? 만약, 불일치해도 상관없다면 어느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 원산지기준결정 : 무엇인지요?
 - 원산지국가 : 각 국가의 코드를 기입하는 것인지, 풀네임을 기입하는 것인지요?
 - 서명권자의 서명 : 서명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지요?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무엇인지요?

답변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동종동질의 기준은? (ex. 품명은 같지만 폭, 길이, 컬러가 다른 경우는 동종 동질 제외?)
=> 원산지증명서 5번 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에 HS코드(6단위) 및 품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S 6단위를 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기입한 품명과 같은 품명인 경우 길이, 컬러, 폭 등 세부 규격이 다른 정도로는 동종동질의 물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다만, 세부 규격까지 품명으로 기입한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물품만 동종동질의 물품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동종동질의 같은 물품을 수출할 경우 포괄증명기간을 작성하면 12개월 동안 다음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함)
- 생산자 : 알고 있는 경우 기재라고 써 있는데, 공란도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 그렇습니다.
- 수입자 : 알고 있는 경우 기재라고 써 있는데, 당연히 기재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 작성방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아는 경우에 기재하고,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품명 · 규격으로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음)



5. serial no. :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예컨대, 1. 2. 3. ...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6. HS no. : 국내 면장과 수입국의 수입통관 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일치해야 하나요? 만약, 불일치해도 상관없다면 어느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 품목번호(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협약에 의하여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서,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를 사용하나, 7단위 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하여 각기 달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는 10단위를 사용하고, 미국과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사용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HS 6단위까지만 기재하고,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수입국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7. 원산지결정기준 : 무엇인지요?
=> 한·미 FTA에 품목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며(부속서 6-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해당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합니다.
8. 원산지국가 : 각 국가의 코드를 기입하는 것인지, 풀네임을 기입하는 것인지요?
=> 'KR', 'US' 등으로 기재해도 되고, 풀네임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9. 서명권자의 서명: 서명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지요?
=> 예, 맞습니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서명할 자를 지정하여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하는데, 서명권자는 서명카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0.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무엇인지요?
=>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의 5. 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명서류)

- ③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 ① 수출자는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수출자가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2] 한 · 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작성요령

질문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 작성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 기간) 이 기간은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실체적인 예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결정기준)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실체적인 예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Serial No (연번)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실체적인 예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 기간)"이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기간으로서, 예컨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이 2012년 3월 8일 이라면 "From(부터) 2012 / 03 / 08 To(까지) 2013 / 03 / 07"로 기재하면 됩니다.
2.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결정기준)"은 한 · 미 FTA에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약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완전생산물품): "WO"
 - 2)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적용품목): "PSR"
 - 3)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PE"로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Serial No (연번)"은 원산지증명 대상물품이 많은 경우 그냥 숫자 1., 2., 3., ... 등으로 넣어서 해당 원산지증명 대상물품 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3]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으로 수입자가 발급하는 경우

질문

- 안녕하세요, 무역업체에서 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자율발급 할 수 있으므로, 당사(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 권고서식대로 발급하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할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항목 25번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유무"에서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가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혹은 없어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항목 12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는 당사가 적용하는 발급번호를 적으면 되는 건지요?

답변

- 한·미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 생산자 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자율발급 방식)
 - 따라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항목 25번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유무"에서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가 없어도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따라서 고객님이 관리하는 발급번호가 있으면 그것을 적으면 되고, 없으면 Invoice 발행번호 등을 적으면 됩니다.
- 참고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미국산) 제품인 것과 운송요건 등을 충족하였음을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서명권자를 지정하여 서명카드도 비치·관리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한·EFTA 원산지신고서 서식의 효력

질문

한·EU FTA 및 한·EFTA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송품장 신고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특혜수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궁금한 점은 FTA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중에는 한·EFTA 원산지신고서 서식이 있는데, 이를 반드시 송품장에 문구를 추가하지 않고도 동 송품장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만약 반드시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지형식으로 발행해도 되는 것이라면 한·EU FTA도 동일하게 별지형식으로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 한·EFTA FTA 관련

- 한·E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정에 규정된 신고서 문안만이 원산지신고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특정 물품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며, 각각 개별 수출 건에 대해 각각의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물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상업서류*에 작성 가능하며, 동 상업서류는 반드시 '수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고 체약 당사국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 *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등
- 백지에 원산지신고서 문안만을 수출자가 작성하고, 물품에 대한 설명이 신고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1항)하여야 함에도 원산지신고서와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한·EU FTA 관련

- 원산지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 원산지, 세관인증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함
- 원산지신고서는 그 물품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 등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지형식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5] 한·아세안 FTA AK Form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문의

질문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이번에 태국으로 화장품 수출했습니다. 태국 바이어가 AK Form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데, 화장품 성분에 대한 소요부품명세서(BOM), 제조공정도,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해서 수출면장과 같이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 AK Form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 수출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 가능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원산지소명서(FTA특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 세번변경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2. 신청방법(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포털시스템(Uni-Pass)에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Uni-Pass 시스템에 접속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신청서 내역을 입력한 후 첨부서류를 PDF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3.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선적완료전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사본 또는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한·EU FTA에서 Invoice에 Made In Korea라고만 쓴 경우

질문

한국에서 EU로 수출 시, 원산지 표기를 Invoice에 그냥 made in korea 라고만 쓰면 되나요? 저희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만들면 되나요?

답변

- 한·EU FTA는 자율증명방식으로서 수출자가 Invoice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을 갖추어 원산지 제품임을 증명하는 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아래 관련규정 부속서3 참조)
- 자율증명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수출자가 발행하는 Invoice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시 기재란에 'KOREA' 또는 'KR' 등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 가.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①)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②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나.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②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7] 한·EU FTA 원산지문안 중에서 Preferential 단어가 누락된 경우

질문

한·EU FTA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입되는 송품장에 한·EU FTA 원산지문구가 작성되어 있는데, 문구 중 'preferential' 내용이 누락되어 발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원산지신고 문안은 형식적인 면에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 문안"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서 "preferential"의 단어가 누락된 경우, 이는 타자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라고 볼 수 없고, 원산지신고 문안이 협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8] 한·EU FTA에서 EUR-1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질문

유럽의 본사 공장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 판매하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금년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관세 납부를 면제 받으려면, 총가격이 6,000유로 이상인 경우, Invoice상에 '원산지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 문안을 인쇄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Invoice에는 '세관인증번호 (Customs Authorization Number)'가 해당 문안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번호 대신 EUR-1이라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해도 되는지요?

답변

- 한·EU FTA에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 등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자율증명)을 하도록 정하였으므로, 협정에서 정한 양식이 아닌 별도의 "EUR1"이라는 원산지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관인증번호(인증수출자번호) 대신 "EUR1"이라는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9]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

질문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 작성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 권고서식은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권고하는 양식입니다. 꼭 이 양식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 한·미 FTA 협정문 제6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1절(원산지 규정) 제6.1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 원산지결정기준을 표기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완전생산물품)의 경우 'WO',
 -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 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적용품목)의 경우 'PSR',
 -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은 'PE'로 표기합니다.

V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 ❶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 ❷ 세관인증번호 체계
- ❸ 원산지 표기 방법



1.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한·아세안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상 기재금액

질문

수출국이 태국입니다. 태국과 한국업체의 거래금액은 CIF입니다. 그런데 태국업체는 FOB금액으로 원산지 증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은 FOB기준인가요? CIF기준인가요?

답변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9번 란의 가격은 태국에서 수출신고 되는 FOB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하며, 이는 원/부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등 임가공비 및 수출항까지 운송비용과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일 것입니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그에 따라 기준 등을 증명서 상에 기재하고 발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의 수입자 또는 태국의 수출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표기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으로 specific process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 S.P.라는 약어로 표기한 경우 적법한 표기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아세안 FTA 협정문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Specific Process" 문구만 기재하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에 대해 "CTC + Specific Process", "CTC + cut&sewing", "CC + Specific Process", "CC + Cut&Sewing" 등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Specific Process의 약자인 SP만 기재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협정에서 정한 문구인 'Specific Process'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질문

안녕하세요.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신청 시 제5란의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답변

- 비당사국(제3국) 송장 발행의 경우 그 발행인의 국가 및 법적 상호(회사명, 주소) 등 발급자 정보를 말합니다.



(4) 한·미 FTA 포괄원산지증명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한·미 FTA 포괄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 경과규정 (발효일 전 운송 중 또는 보세창고 보관중인 물품) : 발효일 전 선적 당시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포괄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효한지요?
-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수량 및 단위" :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하여 원산지증명서 제공한 경우는,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 내용인지요. (다만, 포괄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수량 및 단위 기재)

답변

- 한·미 FTA에서 "원산지 포괄증명"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포괄증명 시작일이 증명일보다 앞서는 경우와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 후, 사후에 원산지 검증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발효일 전 운송 중 또는 보세창고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발효일 전 선적당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 원산지포괄증명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나, 사후에 원산지 검증이 실시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발효일 전 운송 중 또는 보세창고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하여 그 '선적당시'에 포괄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그 증명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협정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하기 때문)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서 포괄증명의 경우에는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포괄증명이 아닌 경우 "수량 및 단위"는 수출입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문구

질문

안녕하세요. FTA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사는 네덜란드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EU FTA협정으로 인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Invoice상에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the European Community preferential origin.

기존에 저희가 받던 Invoice에는 원산지, 수출자의 주소, 발행일, 서명, HS코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의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Invoice에 원산지, 수출자의 주소, 발행일, 서명, HS코드가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한·EU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또한,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해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음

○ 따라서 Invoice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 문안과 함께 그 문안 안에 6,000유로 초과의 경우 세관인증번호가 있어야 하고, 또 제품의 원산지가 표기되어야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서명시 소문자 유효성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한·EU FTA 관련하여, 공급자(인증수출자 아님)가 Invoice상에 원산지신고서를 스템프를 찍어 작성하였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그런데 (-) 부분과 싸인, 싸인자 이름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국가명은 Germany 라고 기재하였고, 싸인자 이름(Tommy)도 소문자를 섞어서 기재하였습니다.

규정을 보니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위와 같이 국가명과 싸인자 이름만 수기로 작성 소문자를 섞어서 기재한 경우 협정 적용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라는 내용은 ‘원산지신고 문안’ 자체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 원산지신고 문안 자체는 스템프로 작성되고 제품의 원산지표기(국가명) 및 수출자의 서명이나 성명을 수기로 쓰는 경우에는 소문자를 섞어서 기재 하여도 협정관세 적용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 다만, 개별 수입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관지 세관장(심사담당자)이 원산지신고서 충족여부 및 이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7] 한·아세안 FTA 인증수출자 전자서명 및 수기서명 인정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상의 서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상 전자서명 가능 여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발급신청 후 UNI-PASS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으면(AK Form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11번란의 수출자의 서명이 공란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의 서명이 반드시 수기로 작성된 서명이어야 하는지 또는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원산지확인서 상 전자서명 가능 여부

위에 질의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같이 원산지확인서의 경우 또한 작성자의 서명이 반드시 수기로 작성된 서명이어야 하는지 또는 전자서명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상 전자서명 가능 여부

=> 증명서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과 연계하여 증명서발급시스템(관세청 UNI-PASS)에 미리 서명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자(생산자) 자체적으로 등록하여 작성하는 전자서명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확인서 상 전자서명 가능 여부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기관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원산지증빙서류로서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등록하여 작성하는 전자서명 형태의 원산지확인서는 인정됩니다.



[8] 한·EU FTA 원산지표기 “European Community” 별도 표시 인정 여부

질문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이며, 프랑스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원산지신고 문안 역시 한·EU FTA 협정문상에 규정한 프랑스어 문구를 명확히 기재를 했습니다.(세관인증번호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국 표기에 “Communaute Européenne - European Community”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추가된 Communaute Européenne는 프랑스에서 European Community의 의미로 사용하는 문구인데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요.

답변

-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 현행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 상에는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원산지 표기 "Communaute Européenne - European Community"에서 'European Community'라는 지침상 인정되는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됩니다.





[9] 한·EU FTA Invoice의 원산지와 비원산지 물품 구분 표시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양말(HS 6115)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하나의 Invoice에 세 가지 스타일이 있고, 1과 2의 스타일은 100% 국내원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으나, 3은 수입 원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Invoice 상에 FTA가 적용이 되는 것과 적용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는지요? 스타일 마다 국내산 표기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종 Invoice 하단에 한·EU 인증하는 문구상에 금액이나 수량 등을 표기할 수는 없는 건지요?

그리고 만일 1, 2, 3 의 포장방법이 PACK(SET)일 경우 단가는 PACK 가격으로 오더를 받는데 인증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하나의 원산지 신고서(Invoice)에 비원산지 제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확인(구별)할 수 있으면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2)제품의 원산지 표기란에는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KR)를 표기하고,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합니다.(구분 표기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 비원산지 제품 가격도 위와 마찬가지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하면 될 것 같고, 구분 표기하는 방법도 제한이 없습니다.



[1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는 방법

질문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서식을 과거 국영 혼영 서식이 있던데,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POLYESTER WOVEN 5407.61 / 5407.69 / 5407.52 / 5407.54 / 6001.61 / 5516.22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뭔가요?

답변

- 한·미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 생산자 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아래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1. 원산지증명서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기타 신원확인 정보 포함),
 2.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6.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
 8. 원산지증명서 증명일
 - 우리나라는 국내법령에 '표준양식'(권고서식)을 만들어 업계가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문의하신 품목(POLYESTER WOVEN, HS 5407.61 / 5407.69 / 5407.52 / 5407.54 / 6001.61 / 5516.22)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검색방법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 >> 원산지기준(PSR) >> 원산지결정기준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1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가 직접 작성할 때

질문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가 작성할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권고서식에 따라 수입자가 작성한 후 세관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 세관의 요청이 있는 때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 등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인으로서의 의무사항
 - 원산지를 증명하는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 협정 제6.1조(원산지상품) 및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기록과 제6.17조(기록유지요건) 제1항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
- 'FTA 특례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의무사항
 - 수입자는 서명권자를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근거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 일반 >> 공지사항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처리지침」 참조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제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 서명자 등)

[12]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을 수기로 작성시 유의사항

질문

한·EU 원산지신고 문안을 수기로 작성할 경우, 협정문 상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외 없이 대문자로만 작성된 문안만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대문자와 소문자가 혼합된 문안 형태도 경우에 따라 인정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수기로 작성된 경우 인정되는지요? 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C preferential origin.

답변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제4항에 따르면, 원산지 신고서(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 (capital characters)로 작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 문안' 전체가 대문자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고객님이 제시한 예시 문안은 전체가 대문자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3] 한·미 FTA에 적용되는 HS품목번호 HS 2002 or HS 2012

질문

한·미 FTA는 HS 2002를 적용하고, 한국에서 수출통관시 HS 2012를 적용하면, 수출신고필증의 HS 번호와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HS 번호가 다른 상태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미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02를 적용하고, 한국에서 '수출신고'는 HS 2012를 적용함으로써, 수출신고필증의 HS 번호와 원산지증명서의 HS 번호가 다른 경우 현재까지(별도 공지시까지)는 HS 번호가 다른 상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14]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의 국가표시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관세청 지침(결정일자 : 2011-09-22) 여기서 보면 2)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 /FR/EU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에 있는 예시가 협정문에 예시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 (EEC/Germany) 인정을 한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Invoice 모델 규격 칸 중 ORIGIN에 DE로 있고 협정문에는 EEC로만 되어있을 경우도 인정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의 제품의 원산지표기 관련된 사항으로, 협정문('원산지신고 문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의 문안에 예시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EEC/Germany)에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한·EU FTA에서는 Invoice 모델규격 칸 중 ORIGIN에 DE로 있고, 협정문(원산지신고 문안)에는 EEC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5] 한·미 FTA 포괄원산지증명서 수량 기재 생략 가능한지 여부

질문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권고양식을 제시해 주신 것이 있는데,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포괄적으로 1회만 발행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년중 1회 선적하는 것도 아니고 선적횟수가 여러 번일 경우가 대부분 일것이고, 매 선적시마다 선적수량이 다를 것인데, 1회만 발행하여도 된다는 원산지증명서에 어떻게 수량을 한 번에 기입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결국, 매 선적시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서 포괄증명의 경우에는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포괄증명이 아닌 경우 "수량 및 단위"는 수출입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16]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기입 서류

질문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원산지 신고문안을 Invoice, B/L, Packing List에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입서류에 대하여 이미 결제한 상황이어서 취소하고 정정하는 절차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별도의 서류(원산지증명서 등)에 해당 신고문안을 기입하여 접수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원산지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단순히 원산지, 세관인증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류 등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 일반 >> 공지사항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참조

[17] 한·EU FTA 인증수출업체로 등록된 서명과 대표의 서명이 다른 경우

질문

일반적으로 송품장에는 그 하단에 회사의 대표이사님 사인방을 찍어 사용하는데, 한·EU FTA에서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시 해외영업 담당책임자의 서명을 등록한 경우 그동안 사용하던 대표이사님의 사인방을 없애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님의 사인방과 원산지신고 문안의 해외영업 책임자의 서명이 함께 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산지신고서 문안에는 반드시 등록한 해외영업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 송품장에 그동안 사용하던 대표이사님의 사인방은 그대로 두어도 되므로, 송품장의 대표이사님의 사인방과 원산지신고 문안의 해외영업 책임자의 서명이 함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8] 한·EU FTA 쿼터물량 원산지문구에 대한 작성요령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출한 물품이 7월초에 유럽에 도착합니다. 따라서 송품장을 보내야 하는데 부가되는 문구를 알 수가 없습니다. HS No.는 5408.22입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물량이 있어서 쿼터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한·EU 협정문의 부속서 2-가의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The exporter of product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쿼터는 "예외물량- 의정서의 부속서2-가..."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문구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른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동 의정서 부속서 2(원산지결정 기준)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다른 원산지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물품별로 정해진 수출쿼터가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됩니다.
- 이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는 부속서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Derogation Annex II(a) of Protocol...”



[19] 한·EU FTA 관련 Invoice 작성요령

질문

안녕하세요. 7월에 시행되는 한·EU FTA 관련하여 수출국에서 보내오는 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문안을 꼭 Invoice에만 적어야 하나요?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상에 그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나요?
2. 그 문구가 적혀있는 서류(Invoice 또는 원산지증명서)에 반드시 HS CODE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3. 통관시에 해외공급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요?

답변

1. FTA를 포함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그 밖의 상업서류(예컨대, Packing List, B/L등)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발급방식)
 - 또한, Invoice 전당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음





- 고객님이 말하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Invoice,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가 아닌 별도의 설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문구가 적혀있는 서류(Invoice)에 반드시 HS CODE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협정상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Invoice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 통관시 반드시 수출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신고서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규정서 제15조 및 제1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5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례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20] 한·EU FTA 원산지문구에 인증수출자 이름과 사인이 필요한지 여부

질문

패킹리스트에 원산지 문구 입력하고 그 밑에 인증수출자 이름과 싸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답변

- 인증수출자로서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우리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않고 이 경우 서명자의 이름도 면제된다는 의미이므로,
- 먼저, 인증수출자가 서면약속을 관세당국에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보통 인증수출자는 제출했을 것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한·EU FTA 의정서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제5항
 -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 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1] 한·EU FTA 협정 원산지표시 및 특혜여부 표시방법

질문

한·EU FTA 관련, EU에서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 1) 수입 품목 모두가 EU(독일)산 경우 : 특혜 관련 문구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지요?
- 2) 수입 품목 중 일부 품목이 EU산 아닐 경우 : 특혜 관련 문구 + 각 품목 번호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지요?

답변

- 수입 품목 모두가 EU(독일)산일 경우 :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특혜 관련 문구)에 인증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예 : DE/4900/EA/ 0289) 및 제품의 원산지(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EU'등)가 표시되면 됩니다.
- 수입 품목 중 일부 품목이 EU산이 아닐 경우 : 비원산지 제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22] 한·EU FTA 협정 6,000유로 이하인 경우 통관번호 생략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독일 수출자로부터 delivery note에 원산지 신고서 기입된 서류에 인증수출자의 통관번호가 생략된 delivery note를 받았습니다.(송품장 가격은 6,000유로 이하)

먼저, 상업서류 FTA 집행에 관한 지침을 보면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업서류는 무엇입니까? 또한, 송품장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통관번호 생략이 가능합니까?

답변

- 상업서류란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인도증서(delivery note) 등을 말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상업송장 등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또한,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고,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통관번호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6,000유로 초과여부는(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3] 한·EU FTA 원산지 신고 문안에 원산지 국가명 표기방법

질문

한·EU FTA 관련하여, 협정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는 원산지 국가명의 표기에 관하여 아래 내용 중 어떠한 기준이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실제 원산지 국명 표기만 인정됨(예를 들면, GERMANY, FRANCE 등)
2. EU로만 표기하여야 함(EU 표기만 인정되고 개별 국명표기는 인정 안 됨)
3. EU로 표기하거나, 개별 국명으로 표기하면 인정(EU 또는 개별 국명 표기가 모두 인정됨)

답변

-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EU'표기 및 'EC'표기 모두 인정됩니다.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 (예) GREECE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 (예) IT
 - 'EU'표기, 'EC'표기
 - 'European Community'표기
 - 당사국명의 형용사 표기 : italian, french, danish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예)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말타 : 'UE'표기
 -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ES'표기
 - * 그리스 : 'EE'표기
 - * 불가리아 : 'EC'표기





[24] 한·EU FTA 화물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일 때 원산지 문안 작성방법

질문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관련하여, 수입되는 화물의 원산지가 2개 국가 이상(비 회원국 포함)인 경우 송품장상의 원산지 문안 중 원산지 국가 기입하는 부분에 EU 또는 GERMANY 대신에 ORIGIN IS STATED IN EACH ITEM 으로 작성 되어있고 품목이 여러 개인데 각 품목별로 원산지 국가 ISO 코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Invoice상에 각 품목별로 ISO 국가 코드 기재라는 내용으로 작성 되어온 경우 원산지 신고서로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신고서 기재방식에 따르면, 제시하신 원산지신고 문안에서 "ORIGIN IS STATED IN EACH ITEM"이 기재된 란에는 '제품의 원산지(예컨대, EU)'가 표기되어야 하므로, 제시하신 방법('제품의 원산지'가 아닌 다른 문구 기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협정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님)
-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원산지 신고서 문안의 (2)란 제품의 원산지 기재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명확하게 표기하면 됩니다.(구분표기 방법은 제한 없음)

[25] 원산지가 다른 여러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방법

질문

한·EU FTA 관련하여 하나의 Invoice에 동일한 품명 2개의 모델이 수출되는 경우, 즉, A라는 품명의 A1, A2가 수출되는 경우로서 A1은 국내산 제품이나 A2는 비역내산 제품으로 판정된 경우 Invoice를 역내산 제품과 비역내산 제품으로 나누어 별도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 송장을 나누어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송장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명백히 구분되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원산지제품 목록 하단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6]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의 원산지 신고서 문안 작성방법

질문

한·EU FTA 신고서 문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세관인증 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팔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빙칸으로 남겨둔다.』

상기 신고서문안 중 6,000유로 미만인 수출자가 "(Customs Authorization No ...1)" 문구를 생략하고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만으로 신고서 문안을 작성하였을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팔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빙칸으로 남겨둔다.” 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란에서 인증수출자의 경우 "Customs Authorization No" 문구 없이 인증번호만 기재(예: ...document (DE/4711/EA/0007) declares that,...)해도 인정되므로,
- 수출가격 6,000유로 이하 수출자의 경우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팔호 안의 단어는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Customs Authorization No ...1)" 문구 자체를 생략하고 작성해도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됩니다.





[27]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의 FOB value 기재시

질문

저희는 수출업체(싱가포르)의 한국파트너이고요, 한국으로 싱가포르에서 직수입 하되 제3국(홍콩)에서 Invoice가 발행됩니다. 저희와, 홍콩, 싱가포르 수출업체는 모두 한 그룹사에 있고요, 수입업체(한국)는 홍콩 및 한국의 고객입니다. 수출업체는 홍콩에 원가만 받고 inter-company 장사를 하여 물건을 선적만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9번란의 FOB value에는 홍콩에서 발행한 Invoice value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수출하는 테 드는 가격을 무조건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의 FOB value란 즉, 판매제품의 원가(=싱가포르 수출업체가 홍콩에 물건을 판매한 금액)를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입업체가 받아보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value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gross weight나 q'ty만 적어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혹시 있는지요? 수입업체에게 FTA관세혜택을 드려서 수출-수입 업체 간의 win-win을 도모하고 싶은데 행정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아세안 FTA AK Form 원산지증명서 9번 기재란의 가격과 10번 기재란의 송장번호 및 일자는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을 기초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제13란의 “제3국 발행송장(Third Country Invoicing)”에 체크하고, 제7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명 및 국가명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간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원산지가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당사국의 증명서 발급기관은 자국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일 경우 그 송장상의 가격에 따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 상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왜곡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송장번호와 FOB 가격 등은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을 기초로 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8] 한·EU FTA 인증수출자 서명 및 이름 생략 가능 여부(6,000유로 이하)

질문

한·EU FTA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인증수출자일 경우 송품장 가격 기준 6,000유로 이하일 때 원산지 작성자의 서명 및 이름도 생략가능한가요?

답변

- 인증수출자로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세관인증번호(인증수출자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송품장 가격기준 6,000유로 이하일 경우에도 수출자의 서명 및 이름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29]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환율 적용

질문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기업회계환율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관세청 수출환율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두 가지 다 적용이 가능할 경우 기관발급 시 기업회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수출면장의 FOB금액이 상충될 수 있는데 입출고 당시의 재고 관리나 환율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환율적용은 수출신고서의 환율과 같이 하면 됩니다.
-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상업송장(Invoic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지므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환율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세관인증번호 체계

[1] 한·EU FTA 세관인증번호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원산지와 선적지는 스페인입니다. 수출자는 벨기에 입니다.(벨기에 송품장) 송품장에 원산지문구가 한·EU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문장은 일치 하나. 세관인증번호 앞에 eori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EU FTA와 무관한 번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eori BE 1229 라고 세관인증번호를 적어왔는데. 혹시 이 번호가 수출인증자번호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FTA 적용 가능한 수출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인증수출자로 승인된 번호 목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송품장에 원산지문구가 한·EU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문장은 일치하나, 세관인증번호 앞에 eori 라고 표시되어 "eori BE 1229"라고 세관인증번호를 적어온 경우,
한·EU FTA에 적용되는 벨기에 세관인증번호 체계[예시 : BE 74(국가(2) 인증번호(1~4))]는 맞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된 문구 "eori"는 불필요한 것으로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산지신고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경우로 보아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닙니다.
- 한·EU FTA 각 국가별 인증수출자로 승인된 번호 목록은 현재 저희 고객 지원센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세관인증번호 체계가 관세청 지침내용과 달라 한·EU FTA에 적용되는 세관인증번호 체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수입통관부서에서는 우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한 후, 검증부서에서 사후에 검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개별 수입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심사담당자)이 원산지신고서 충족여부 및 이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적용은 통관예정지 세관 수입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EU FTA 세관인증번호 유효성

질문

저희 회사는 유럽(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무역업체입니다. 한·EU FTA 협정 세율의 적용을 위해 유럽(독일)에 있는 저희 회사의 3개의 사업부별로 구분된 세관인증번호를 받아 협정을 적용하던 중 2012년 1월 1일부로 3개의 번호가 1개의 번호로 통합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3개의 세관인증번호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요? 아니면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보받은 1개의 번호만이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원산지신고서'는 협정 및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독일에서 3개의 사업부별로 구분된 세관인증번호를 받아 협정을 적용하던 중 2012년 1월 1일부로 3개의 번호가 1개의 번호로 통합된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3개의 세관인증번호가 유효한지 여부"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우리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요건에서 한·EU FTA에 적용되는 독일의 세관 인증번호 체계가 맞으면 수입 통관할 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해당 '원산지신고서(세관인증번호)'가 유효한지 여부는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이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3] 한·EU FTA 관련 독일 인증수출자 세관인증번호 유효성 확인

질문

현재 우리나라 이외의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이트가 있으면 안내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국가(2)/세관부호(4)/EA/인증번호(4)"로 인증코드가 구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취한 세관인증번호는 "EA"가 아닌 "ZA"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

- 현재 세관인증번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사이트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EU FTA에서 '세관인증번호 체계'는 협정문이나 법령상의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그 정확성(유효성)은 궁극적으로 사후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한·EU FTA에 적용되는 '세관인증번호 체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우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한 후 사후 검증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 일반 >> 공지사항 219번 「(한·EU FTA) 세관인증번호 체계」 참조
- 한·EU FTA에 적용되는 독일 세관인증번호 체계는 "DE/****/EA/****"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DE/****/ZA/****"는 독일 세관당국에 등록된 통관부호로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유효한 세관인증번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한·EU FTA 관련 이탈리아 세관인증번호 체계 문의

질문

저희업체는 이태리 OOO로부터 쇼케이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이태리 업체로부터 받은 넘버는 IT/021/RM/99 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태리 국가의 Customs Authorization Number가 IT/021/RM 1 or RM 2/연도 (두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답변

- 한·EU FTA에서 인정하는 이태리 세관인증번호 체계는 Rome지역의 경우 반드시 "IT/021/RM1 or RM2/연도(두자리)"이어야 합니다.
- 또한, Invoice에 협정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원산지신고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어느 언어본이든 상관없음)

관련 규정

*원산지신고 문안 : 한·EU FTA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 가.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나.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 다. 이탈리아어 본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autorizzazione doganale n. ... (1))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 (2).....(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빙칸으로 남겨둔다.
 -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5] 한·EU FTA 관련 네덜란드 세관인증번호 체계 문의

질문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물건을 통관하려고 합니다. 통관 진행과정 중, 세관인증번호를 요구하셨는데, 정작 네덜란드 담당자는 관련 번호체계를 잘 모르고 계시네요. 네덜란드 어떤 기관에 의뢰하여 알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 수출자가 네덜란드 세관당국에 문의하여 세관인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거래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세관인증번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세관인증번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세관인증번호를 발급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네덜란드의 세관인증번호는 수출자가 네덜란드 관세당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그 체계는 [NL/361/02/1234 =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입니다.

[6] 한·EU FTA 관련 핀란드 세관인증번호 체계 문의

질문

핀란드 세관인증번호 체계는 FINLAND FI/50/110, FI/8/36과 같은데, 핀란드 공급자 측에서 제공한 번호 체계는 FI/000/000과 같이 되어 있어 위와 같은 형태로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핀란드 공급자 측에서는 한·EU FTA 수출 인증자 부호체계는 FI/000/000 이상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 인정을 해주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핀란드 세관인증번호 체계는 관세청 지침상 "FI/인증번호/지역세관 3자리 코드"로서 '일련 인증번호'의 자릿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시하신 "FI/000/000"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한·EU FTA에 적용되는 '세관인증번호 체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한 후, 사후 검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원산지 표기 방법

[1] 한·EU FTA 원산지 기재문구에 EU나 국가명을 쓰지 않을 경우

질문

수출자가 보낸 Invoice 문구에서 "see indication above under" country of origin" 라는 문구를 꼭 EU나 실제 나라 이름(ex, united kingdom)으로 명기해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above under "Country of origin" 라는 의미가 "상기 언급 된 원산지"인데 굳이 다시 한번 united kingdom를 기재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출자 측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정확한 사유를 요청하고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3200/EA/0048)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EE INDICATION ABOVE UNDER " COUNTRY OF ORIGIN") preferential origin."

답변

-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신고서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 제시된 첨부파일의 (see indication above under "Country of Origin")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란에는 '제품의 원산지'가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또는 당사국 ISO코드 등(예컨대, United Kingdom or UK or GB or EU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므로, 제시된 위 문구는 협정에서 인정하는 원산지 표기방법이 아니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원산지국 표기 인정여부

질문

- 독일에서 원산지 증명의 국가를 'EEC'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인정 가능한 표기인가요?

답변

- 현행 「관세청에 지침」에 따르면, 'EEC'는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제품의 원산지 표기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 문안에 기재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 (예) GREECE
 - 당사국 ISO코드 : (예) IT
 - 'EU' 표기, 'EC' 표기
 - 'European Community' 표기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 italian, french, danish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 표기(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
예)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말타 : 'UE' 표기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ES' 표기
* 그리스 : 'EE' 표기
* 불가리아 : 'EC' 표기



[3] 원산지 국가명 표기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사용 가능 여부

질문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POLISH라 하고, 네덜란드는 HOLLAND라고 국가명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신고 문안의 국가명을 명시할 때 이러한 POLISH나 HOLLAND라는 국가명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원산지신고 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EU' 표기 및 'EC' 표기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EECE,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EU, EC 표기는 인정
 - 폴란드 당사자명 : THE REPUBLIC OF POLAND,
 - ISO코드 : PL네덜란드
 - 당사자명 :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 ISO코드 : NL
- 따라서 POLISH 및 HOLLAND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한·EU FTA 관련 원산지가 여러 국가인 경우 원산지국 표기 방법

질문

품목번호는 제6107.12-1000호와 제6212.10-9000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관세는 한·EU FTA로 관세 철폐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업체 Commercial Invoice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중국, 인도,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EU에 포함되는 국가도 있고, 비EU 국가도 있습니다. 원산지가 여러 국가인 물건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 관세 혜택 적용을 어떻게 하며,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EU역내 여러 국가인 물품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원산지란에는 'EU' 또는 'EC'로 기재하거나 각각의 원산지를 기재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의 원산지신고서는 비원산지 제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합니다.



VI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 ① 제3국 송장 발행
- ② 적용시점 및 유효기간
- ③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인정여부

1. 제3국 송장 발행

[1] 한·EU FTA 제3국 발행 송장에 의한 협정세율 적용

질문

- 공급자의 원산지와 선적지는 오스트리아이고, 원산지신고서는 공급자의 홍콩지사에서 발행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 원산지와 원산지신고서는 스웨덴에서 발행되고, 협정에 명시된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한·EU FTA에 제3국 송장발행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홍콩)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EU 역내의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고, 기타 직접운송원칙 등 협정적용의 요건을 갖춘다면 FTA 관세특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즉, 원산지신고서는 EU역내(오스트리아)의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B/L 등)만 유효합니다.
-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는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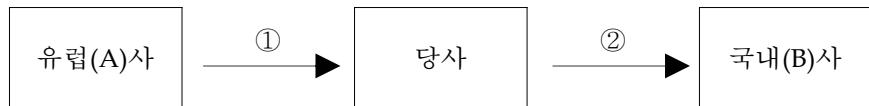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택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2] 수출자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질문

저희는 유럽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한군데 업체는 직접 통관하기를 원하여 수출자가 당사로 바뀌게 됩니다. A사는 당사로 Packing List에 세관인증번호와 문구를 작성하여 주고 있어서 FTA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B사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① 인계자 : 유럽(A)사

인수자 : 당사

Packing List : 유럽(A)사-당사간 한·EU 문구 적용

② 인계자(수입면장 : 해외거래처) : 당사

인수자(수입면장 : 수입자) : 국내(B)사

Packing List : 유럽(A)사-당사간 한·EU 문구 적용

- 수출자가 당사일 경우 A사에서 발행한 Packing List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 안된다면 당사의 세관인증번호를 적어 새로운 Packing List를 만들어야 하는지
- 당사는 제조가 아닌 오피상으로 인증수출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경우 B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가 기재된 상업서류는 EU 역내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만 유효**합니다.

* FTA에서는 "수출자"를 통상적인 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 또는 해외 공급자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를 의미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율발급) 또는 발급신청(기관발급)의 주체로서 관련자료의 보관의무를 지며,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예)송품장이 비당사국(싱가포르 또는 홍콩)에서 발행되었을 경우, 동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서를 기재할 수 없으며, 수출자(제조사)가 발행한 상업서류(예: 선하증권 또는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다를 때 한·EU 특혜관세 적용 여부

질문

저는 EU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6,000유로 이하는 수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만유로 이상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EU내 수출자가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수출화물을 제조업체로부터 받아 본사로 보내주는 수출오ペ를 하는 회사여서 6,000유로 이상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인증 수출자'로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하는 회사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총금액이 6,000유로가 넘을 때 국내에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을 대비하여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작성한 수출신고서(MRN)를 받아 원산지에 대한 증명을 하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 한·EU FTA에서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고,
 - 거래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되는 원산지신고 문안의 세관인증번호 기재란에는 수출자 세관인증번호가 들어가야 하므로, 직접 수출하는 회사(오페)의 세관인증번호가 필요하고, 그 번호가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품 제조회사가 수출자로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가 발행하는 상업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등)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고, 인증수출자로서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면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6,000유로 초과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든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 참고로, FTA에서 "수출자"는 통상적인 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 또는 해외 공급자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를 의미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지며, 세관 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한·EU FTA 제3국 송장 발행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3자 무역 관련하여 선적지인 유럽에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 B/L과 같이 선적서류에 보내주고, 아시아를 관장하는 싱가포르에서는 Invoice를 받아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즉 원산지증명서의 형태를 Invoice 기재방식이 아닌 별도의 A4 서류에 따로 선적지에서 교부받고 Invoice는 제3자(FTA 비해당국)에서 발행받은 경우 한·EU FTA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EU FTA에서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고,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싱가포르)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가 기재된 상업서류는 EU 역내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만 유효합니다.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형태를 Invoice 기재방식이 아닌 별도의 A4 서류에 따로 EU 선적지에서 교부받고 Invoice는 제3자(싱가포르)에서 발행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증명방식이 아니므로 한·EU FTA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4항
제15조 원산지증명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B/L분할 건에 대한 한·EU FTA 적용여부

질문

단일의 운송서류(B/L, Invoice)를 국내 반입 후 B/L분할(일괄 B/L분할신청)승인을 통해 단일 공급자이지만 3건의 수입신고를 하여 6,000유로 이하의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고,
- 여기서 6,000유로 초과 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일 공급자의 단일 운송서류의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다면,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바,
- 단일 운송서류상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시 3건으로 나누어 6,000유로 이하의 물품으로 만드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없이는 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 물론, 한번 선적된 물품이라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분할하여 여러 차례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적시 단일 운송서류상 물품가액이 6,000유로가 초과된 경우라면 인증수출자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 <참고>
 -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분할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단, 동일선적분에 대하여 B/L을 분할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 상에 표시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관리 필요)
 - 1회 선적분(B/L확인결과 동일 편명)이지만, B/L 번호만 다를 경우에는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6] BWT 물품으로서 분할된 B/L,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질문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 A로 하여 100개의 물품에 대해 발행되었는데, BWT물품이어서 보세구역에서 수입자 A가 국내 또 다른 수입자 B에게 40개, C에게 20개, D에게 40개씩 양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B/L 분할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도 각각 분할을 하여 수입신고 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분할 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다만, 동일선적분에 대하여 B/L분할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 신고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에 표시 중량 등을 기준으로 찬량관리 필요)
- 따라서 문의한 사안의 경우 동일 선적분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었으므로, B/L 분할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도 각각 분할을 하여 수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7] 한·EU FTA 원산지문안 기재된 Invoice 사본으로 원산지증명서 반복 사용

질문

한·EU FTA 발효 후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된 Invoice 사본을 분할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로 반복 사용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 가능하므로 분할 수입시 반복 사용할 수 없고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단, 동일 선적분에 대하여 B/L 분할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 신고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즉, 상업서류 등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시마다 원산지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8] 한·EU FTA 종고 Roll 수출 후 재가공 후 수입시 협정세율 적용 여부

질문

종고 Roll기계(HS 8439.99)의 가공(수리)목적으로 EU(독일)로 수출해서 가공(피복교체)한 후 우리나라로 재수입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한지요?

- 1) 유럽에서 재가공된 부분(즉 피복된 부분)이 협정세율 적용 가능하나요?
- 2) 협정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Roll은 원산지가 한국 또는 유럽이야만 하나요?
- 3) 원산지가 비역내국이면 재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한가요?
- 4) 룰이 원산지가 한국 또는 유럽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 1) EU에서 재가공된 (피복)부분에 대해서만 협정세율 적용은 안됩니다. 재가공된 부분인 피복 자체가 수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협정 적용 대상은 재수입되는 Roll 자체)
 -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품은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부분(임가공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가공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가치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2)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수입 물품인 Roll이 EU 원산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독일에서 재가공된 Roll의 세번이 4단위 이상 변경되거나, 독일에서 재가공된 Roll의 공장도가격에서 비역내산(한국산 또는 EU산이 아닌)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EU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 * Roll(HS 8439.99)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단위 세번변경, CTH) 또는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MC 50% 이하)
- 3)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요건[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EU산) 인정]을 충족한 경우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부분(피복된 부분=임가공비 등)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Roll이 EU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증가된 부분(피복된 부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4)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증빙자료들을 갖추어 Invoice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하여 증명합니다.[수출가격이 6,000유로 초과의 경우에는 세관인증번호가 필요함]



[9] 한·EU FTA 그 밖의 상업서류의 범위

질문

FTA 협정문에 보면 "송품장 또는 원산지 신고서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갈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상업서류의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인도증서(Delivery Note)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 외 수출자가 상업거래의 내용을 언급한 기타 서류에도 해당되는 것인지요?(원산지증명서 같은 것) 아시아권에 지사를 둔 프랑스 본사에서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도증서는 모두 아시아 지사(싱가포르)에서 발행되므로 원산지증명서 같은 서류를 따로 본사(프랑스 수출자)가 발행하여 거기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삽입하여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 문서 또한 상업거래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밖의 상업서류"에 해당된다 하면서요. 이 경우 프랑스 수출자가 발행한 이러한 서류가 한국 세관에서 그 밖의 상업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세 혜택을 받아 통관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현행 '관세청 한·EU FTA 집행지침'에 따르면,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적용 불가"라고 하면서,
 - 상업서류의 예로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언급하신 '원산지증명서' 같은 서류를 따로 본사(프랑스 수출자)가 발행하여 거기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삽입한 경우, 이는 지침상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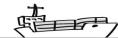
[10] 수리 후 재반입 물품의 구분 신고시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질문

한·EU FTA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리 후 재반입 시에도 문안이 선적서류상에 표시되어 있으면 협정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요건(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이 아닌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11] 한·EU FTA 세관인증번호 위치가 원산지신고서 문안 밖에 있는 경우

질문

2011년 9월에 수입통관 완료되어 국내로 수입된 제품입니다. 당시에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여서 당사가 관세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수출자가 세관인증번호를 추가하여 서류를 다시 보내줬습니다. 원산지인증 영문 문안 중간에 세관인증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업자가 '인증번호'를 문장 밖에 따로 기재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대로 관세환급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원산지신고 문안은 원칙적으로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하여야 합니다.(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참조)
- 문의한 사안에서, 수출업자가 '인증번호'를 문장 밖에 따로 기재해서 보내왔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에 따로 기재되어 있는지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증번호가 원산지신고 문안 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신고서 문안 바로 아래 또는 옆에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 위치만 바뀐 것이지 빠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면에서 이러한 오류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야기 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경우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신청 단계에서 그 원산지신고서가 거부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EU FTA 의정서 제24조(형식적 오류) 참조]

[12]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문안 기재된 Packing List 유효 여부

질문

독일에서 Packing List를 작성하고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하였다면, 송품장(Proforma Invoice)을 비당사국(싱가포르)에서 발행하고 송품장 안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없을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즉, 선적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수입, 싱가포르는 송품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답변

- 독일 수출자가 발행한 패킹리스트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하였다면, 송품장(Proforma Invoice)을 비당사국(싱가포르)에서 발행하고 송품장 안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없을 경우(즉, 운송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수입, 싱가포르는 송품장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한·EU 원산지신고서 문안과 다른 형태의 문안 유효성 여부

질문

독일에서 수입되는 한·EU 원산지 문안 중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송품장에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9450/EA/0528, HZA Heilbronn)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COUNTRY OF ORIGIN : GERMANY로 작성되어 온 경우 원산지 문안에 원산지 국가 표기가 되어있지 않고 원산지 문안 밖에 상기의 형태로 별도로 작성 되어온 경우 원산지 문안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원산지신고 문안은 원칙적으로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하여야 합니다.(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참조)
- 문의한 사안에서 보면,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과 달리 원산지 표기가 원산지신고 문안 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문안 바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위치만 바뀐 것이지 빠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면에서 이러한 오류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므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 신청단계에서 그 원산지신고서가 거부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14] 한·EU FTA 송품장 문구 오탈자 인정 여부

질문

한·EU FTA를 적용받고자 독일에서 수입해오는 제품이 있는데요, 송품장 문구에 The exporter of the product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위의 내용 중 except 뒤에 where 이 빠져있습니다. 단순 오탈자인데요,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원산지신고 문안은 기본적으로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하여야 합니다.(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참조)
- 질문하신 내용에서 보면, 협정문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과 달리 생략된 단어('where')가 있는바, 여기서 생략된 단어('where')는 "형식적 오류로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경우"로 보아 그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한·EU FTA 의정서 제24조 참조)



[15]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유효성

질문

안녕하세요, 한·EU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Invoice상 신고문안이 작성되어 왔는데,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community" 부분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한·EU 적용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r.NL/571/08/2208)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community.』

답변

- 질문한 문안에서 보면, 협정문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 이외에 불필요한 문구(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community)가 들어가 있지만,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 한·EU FTA 의정서 제24조(형식적 오류)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16] 한·EU FTA 원산지 인정 여부(EU역내에서 타국 원산지 문안 작성)

질문

한·EU FTA 원산지 인정 여부 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M○○ Foods에서 유럽의 프랑스에서 생산 선적되는 물품 중 세관 인증번호를 네덜란드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Packing List 상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사인을 받아오는 경우 인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세관인증번호는 있으나 네덜란드 세관인증번호 기재하고 본사에서 담당자 사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s(Customs Authorization NO.NL/571/07/2087)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답변**

- EU연내에 있는 한, EU연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과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예 : 네덜란드 수출자가 원산지가 프랑스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적용 가능)
따라서 네덜란드 수출자가 발행하는 Packing List에 네덜란드 수출자가 고객님이 제시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했다면 인정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다만, 프랑스 수출자 발행의 Packing List에 네덜란드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이와 같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협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의 검증'이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한·EU 원산지 문안 이외의 별도 원산지표시 인정 여부**질문**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2.(2)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 /GERMANY, EUROPE/FR/EU”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라는 말이 첨부된 Invoice처럼 원산지 문구 위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로 해석하여 원산지 문구상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관세청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에서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의 의미는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의...](2)에 들어가는 '원산지 표기'의 기재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원산지신고서 문안 안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표기방법도 인정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밖에 별도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EU FTA에서 정하는 유효한 원산지 표기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8]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문안 및 세관인증번호 적정성

질문

안녕하세요. 영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금번 한·EU FTA 발효로 인해 무관세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출업자에게 Invoice상 해당 문구를 삽입해 달라고 하여 첨부와 같은 Invoice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로 무관세통관이 가능한지 문의를 했으나 인증번호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처리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구상 숫자는 어떤 인증번호를 말하는지요? 수출업자는 인증번호란에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 문구상 숫자는 어떤 인증번호를 말하는 것인지?
- 꼭 문구상에 숫자 등의 인증번호를 기재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아래 관련규정 부속서3 참조)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주의할 것은, 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6,000유로 초과의 경우 세관에서 인증받은 인증번호(수출자인증번호)가 원산지신고 문안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 문구상 숫자는 어떤 인증번호를 말하는 것인지?

=> 한·EU FTA에서는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바, 수출자가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자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번호를 말합니다.

- 꼭 문구상에 숫자 등의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요?

=> 한·EU FTA에서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인증 받은 인증번호(수출자인증번호)가 원산지신고 문안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원산지증명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부속서 3

* 원산지신고서 문안

- 가.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나.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팔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빙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19] 한·EU간 거래시 제3국 송장,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인정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한·EU 3국간 무역에서 싱가포르(A국), 영국(B국), 한국(C국) (A국과 B국은 본지사간 다국적기업) 원산지와 선적국이 B국이며 다이렉트운송으로 C국으로 수출하고 B/L상에서도 SHIPPER는 B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송장 및 패킹 발행은 A국이며 실제 결제대금도 A국과 C국간의 이루어집니다. A국이 발행한 3국송장에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요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B국표기) 이 경우 싱가포르는 역내국이 아니지만 한·EU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1번과 다르게 송장 및 패킹을 B국인 영국이 직접 발행한다고 하면 3국간 거래인데 수입신고 작성시 수출자는 A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생산자)가 B국이 들어가야 되는게 맞겠죠?

답변

1. Invoice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예컨대, 싱가포르)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는 EU 역내의 (인증)수출자와 관련하여 발급된 상업서류만 유효합니다. 즉, EU역내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EU역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EU역내 수출자가 꼭 '발행'을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EU역내 수출자와 '관련'된 상업서류에 EU역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싱가포르 본점에서 발행되더라도 EU에 있는 싱가포르 지점(EU역내 수출자)과 관련하여 발행된 상업서류(Invoice,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등)에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는 경우 인정 가능하다는 의미]
따라서 EU역내 수출자와 관련이 없는, 싱가포르 수출자가 (한국 수입자와의 관계에서) 발행한 Invoice에 EU역내 수출자 또는 싱가포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는 협정 규정에 의한 EU역내의 수출자가 동 상업서류상 확인되지 않기 때문)
2. EU역내 수출자(생산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예 :선하증권 또는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A국(싱가포르) 수출자가 기재되더라도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 한·EU FTA 인증수출자부호 유효성

질문

이태리로부터 모짜렐라치즈를 수입합니다. 한국유가공협회를 통해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일정금액을 상회하는 관계로 코드넘버를 기재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이태리 본사를 통해 제시하였으나, 유가공협회에서 받은 지침의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태리에 재요청함은 물론 농림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관세청에 질의하도록 안내하였고, 이태리 본사에서는 제시한 코드가 맞다고 합니다. 유가공협회는 추천서 발행은 해줄 수 있으나, 지침과 다른 형식으로 관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유가공협회에서 주신 지침에 따르면 '국가코드-인증번호3자리-지역번호2자리-인증연도 2자리'로 안내하였으나, 이태리 본사에서 받은 코드 넘버는 'IT/06/034/CEE'입니다. 이태리 본사에서는 해당 코드에 대해 the plant code registration으로 FTA 할당관세에 대해 신청할 경우 상기 코드를 제시하면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 한·EU FTA 수출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하는 업체는 해당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인증수출자는 해당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지정받는 것으로, 인증이 되면 '세o)'가 부여되고, 이 번호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태리의 세관인증번호 체계는 예컨대, 대도시 3개(Rome, Milano, Napoli)의 경우에는 IT/001/RM1/06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 +digit number(1) 또는(2)/인증연도(2)]이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IT/001/BO/06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인증연도(2)]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 고객님이 안내받은 (일정금액을 상회하는 관계로) 코드넘버는 위의 세관인증번호(인증수출자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태리 본사에서 주장하는 the plant code registration코드와는 다릅니다.
 - 따라서 수출금액이 6,000유로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이태리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한·인도 CEPA 인도 상무성 발급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질문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인도 발급기관이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에서 발행된 것만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인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GOVERNMENT OF INDIA)에서 같은 양식으로 발행된 것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인도 FTA 협정문 부속서 4-가의 규정에 의하면,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받아온 원산지증명서로는 한·인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2] 한·EFTA 세관인증번호가 없는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질문

한·E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관인증번호가 원산지 신고문안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상대국(스위스)에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 세관인증번호가 없으면 공란으로 두고 수출자의 서명이 있으면 협정적용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해 줄때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공란으로 두고 서명해서 건네주면 되는 건 아닌지요. 상대국(스위스)의 수입자는 세관인증 번호가 없으면 협정세율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한·E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협정당사국 내에서 자국내의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면 성명 및 서명을 따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제16조 참조)
- 따라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관인증번호는 공란으로 남겨두고, 그 대신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즉, 한·EFTA 협정상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이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물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상업서류에 '수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체약 당사국에서 발행되면 원산지증명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대국(스위스)의 국내 FTA 이행법령에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상대국 세관에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 한·EU FTA 원산지 문안을 모든 상업서류에 각각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

한·EU FTA 송품장이나,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이 있으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Invoice에는 신고서문안이 없이 Packing List 한곳에만 문안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모든 서류(Invoice, Packing List 등)에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을 표시해야 하는지요?

답변

- 협정 적용의 모든 자격요건(원산지제품이 맞고,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직접운송 등)을 갖추었다면, 상기 송품장이나,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중 어느 한 곳에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이 있으면 협정 적용이 가능하므로,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상업송장 외의 기타 상업서류인 B/L이나 Packing List도 인정됩니다.
- 원산지증명 관련
 - 한·EU FTA에서는 자율증명방식으로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발급됩니다.(의정서 제15조 참조)
-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기재방식 관련
 -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의정서 제16조 4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4] 한·EFTA FTA 여러 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고 문안 인정 여부

질문

당사는 스위스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수출자가 발행한 Invoice상에 스위스/독일/영국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품목별로 제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표시되어 있고,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nvoice 맨 하단에 "Authorization number from the Swiss Federal Customs Administration in Bem:0930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sia Abrasives Industries AG, authorized exporter with Customs Authorization no, 0930)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ee column origin) preferential origin." 라고 명기되어 이 "see column origin" 문구로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스위스산 제품의 경우 한·EFTA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관련규정 각주2) 후단의 해석상 Invoice에 각 제품별로 원산지(예컨대, origin=> CH)가 기재되어 있다면, 제시된 내용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독일, 영국 제품의 경우 한·EU FTA에 적합한 원산지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

한·EFTA FTA 협정문

부속서 I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제15조 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밖의 상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인증수출자)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부속서 I의 부록 3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의 문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각주1) 원산지신고서가 제16조의 의미 내에서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인증수출자의 등록번호가 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팔호안의 내용이 생략되거나 공란으로 남겨 둔다.

각주2) 상품의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ISO-알파-2단위 코드의 사용이 허용된다(KR, IS, NO 또는 CH).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Invoice)의 특정란에 그부호를 기재할 수 있다.





[25] 한·EU FTA 원산지 신고 문안이 아닌 일반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질문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을 보면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 여기서 말하는 상업서류란 송품장(Invoice)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선하증권(B/L) 4. 인도증서(delivery note) 알고 있습니다. 위 4가지 서류에 원산지 문구 "the exporter of the.....preferential origin" 기재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만일 "원산지증명서" 자체로는 관세인하 적용 받은 협정관세를 적용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 고객님이 말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는 한·EU FTA 관세인하를 적용받은 협정관세(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비특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하며,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 한·EU FTA에 따라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관련 문안("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을 기재하여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발급제로 운영됩니다.(송품장 신고방식)
 - 동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건당 6,000 유로 초과 수출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에서 인증받은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26] 한·싱가포르 FTA 특혜원산지증명서가 증명하는 물품의 범위

질문

싱가포르에서 주문제작한 장비를 수입하여 통관하면서 품명과 세번을 각각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였을 경우(1란 메인장비, 2란 지지대 등), 신고한 품명, 세번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싱가포르 세관, 싱가포르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기관에서 증명한 장비 전체로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경우 2란으로 신고한 지지대 등도 특혜원산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원산지증명서(C/O)에 기재된 포장·수량 만큼 C/O가 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C/O를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수량을 판단합니다.
- 따라서 장비 전체가 같이 선적되어 들어오고 품명 수량이 일치한다면, 싱가포르 세관에서 증명한 장비 전체로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경우 2란으로 신고한 지지대 등도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유효성 인정 여부

질문

한·EU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 문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고서 문안 중 프랑스본은 하기와 일치해야 하나,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1)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2).

업체에서 송부해 준 문안 첫 부분에 L'exportateur가 아닌, Nous, (업체명) exportateur로 기재되어 있다면 fta 협정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원산지신고 문안은 원칙적으로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하여야 합니다.(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참조)
- 따라서 원산지신고서 문안(프랑스 본) 첫 부분에서 L'exportateur가 아닌, "Nous, (업체명) exportateur"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8]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부서 및 판정부서 동시 서명 인정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에서 엔진 수입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부서와 원산지 판정부서가 달라서 원산지증명서에 작성부서와 판정부서의 싸인을 동시에 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동시 서명하는 이유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부서에서 원산지 판정부서의 확인을 안 받고 원산지증명서 발행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작성부서와 판정부서의 싸인을 동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세관에서 원산지 판정부서의 싸인은 넣지 말라고 하여 안하고 있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부서와 판정부서의 싸인을 동시에 넣은 후 원산지증명서 제출하여 통관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원산지 작성부서의 싸인만 넣은 후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 '원산지 작성부서와 판정부서'의 의미를 잘 모르겠으나,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서명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 작성부서(서명권자)의 서명이 있다면, 원산지신고서상 판정부서의 서명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넣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 원산지문안에 'Customs Authorization No'없이 세관인증번호 기재한 경우

질문

한·EU FTA 협정문구 관련하여 업체에서 팔호 안 세관인증번호 앞의 하기 단어가 빠져왔습니다. 세관인증번호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미기재단어 : Customs Authorization No.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답변

- 현행 관세청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 문안에서 'Customs Authoriz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30) EU 수출자가 제3체약국 원산지제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질문

영국의 수출자가 영국에서 생산한 물품과 체코에서 생산한 물품을 같이 수출할 경우 Invoice 상에 원산지 문구 세관인증번호란에 영국 수출자의 세관인증 번호만 기재하고 원산지를 EU나 GB/CZ로 기재하면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영국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와 체코의 세관인증번호 모두 기재해야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영국 세관인증번호와 체코 세관인증번호 모두 기재해야 한다면 최종 수출자인 영국 수출자가 Invoice상 체코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여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EU연내에 있는 한 EU연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예컨대, 영국 수출자가 원산지가 체코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협정적용이 가능함)
- 따라서 영국의 수출자가 영국에서 생산한 물품과 체코에서 생산한 물품을 같이 수출할 경우 영국 수출자가 발행한 Invoice의 원산지신고 문안 세관인증번호란에 영국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 표기는 'EU' 또는 'EC'로 기재하거나 각각의 원산지(GB/CZ)를 기재하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한·EU FTA협정에서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신고서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4항에서 규정

제15조 원산지증명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례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31] 수출자 세관인증번호 아닌 EU 타국 소재 자회사(공장) 번호를 넣는 경우

질문

이태리에 본사가 있고 독일에 공장이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송품장(Invoice)은 이태리에서 발행하고, Packing List는 물건을 출하하는 독일공장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공장은 2010년 8월 초에 Customs Authorization Number를 취득했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태리 본사에 Invoice에 원산지 증명하는 문구에 이 세관인증번호를 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nvoice는 이태리에서 발행을 하고 Packing List는 독일에서 발행한 서류가 Invoice에 원산지 인증문구가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 한·EU FTA에서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고,
 - 수출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되는 원산지신고 문안의 세관인증번호 기재란에는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가 들어가야 하므로, 수출자인 이태리(본사)의 세관인증번호가 필요하고, 그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다만, 독일(공장)이 수출자로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가 발행하는 Packing List 또는 B/L(그 밖의 상업서류에 해당함)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고, 세관인증번호 기재란에 독일 인증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면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태리 본사(수출자)에서 발행한 Invoice의 원산지신고 문안에 독일(공장)의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원산지신고서'는 협정 및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이태리 수출자가 독일공장의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다만 이와 같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협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의 검증'이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되는 것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2] 한·EU FTA 적용 Invoice 사본 인정여부 문의

질문

한·EU FTA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수출하는 송품장에 한·EU FTA 원산지 문구가 작성되어 있는데 바이어 쪽에 송부 할 때 원본만 유효한지 아니면 사본(스캔 이미지 또는 fax)으로 보내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우리나라 자국법령(고시, 지침 등)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적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 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FTA 특례고시 별표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FTA 특례고시 제3-3-2조 참조)
- 반대로 EU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 수입국에서 원산지신고서 사본의 인정여부는 수입국의 자국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일률적 으로 안내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대국 수입자 또는 상대국 세관당국이나 주한 상대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시점 및 유효기간

[1] 한·미 FTA 발효 이전 원산지증명서 혜택

질문

안녕하세요. 한·미 FTA가 발효 되면 이전에 수출한 원산증명서도 혜택을 받나요? 원산지증명서 날짜가 발효이전에 발급된 수출된 제품도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문의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을 한 뒤 수입자 입장에서 수입시점 협정세율 신청한 날짜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이전에 수출(선적)한 물품의 경우에도 발효일 이후에 미국 세관당국에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때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후에 소급하여 발급한 경우 또는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합니다.(예 : (선적일) 2012.1.1,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2012.1.15 인 경우 유효)
 - ☞ 근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 지침)

[2]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한·미 FTA 원산지 포괄증명서 유효기간 관련하여, 작성일(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까지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12.1.5 ~'13.1.4일 경우 종료시점인 '13.1.4일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요. 선적시점, 도착시점, 수입통관 시점인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은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 하는 경우에 증명하는 것입니다(협정 제6.15조 제4항 참조).
-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적시점'이 기준입니다.



[3] 한·EU FTA 관세율 이행 연차별 적용 날짜

질문

한·EU FTA가 발효 관련하여 관세가 단적으로 연도별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날짜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행 2년차라고 하면 2012년 7월 1일이 되는 것인지요? 협정문에 '해당연도의 첫째 날'이라는 표현과 '발효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이라는 말이 함께 표현되어 있어서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의 경우 금년 7.1일에 발효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행 2년차라고 하면 발효 1주년이 되는 날(2012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하므로, 이행 2년차는 2012.7.1.부터 2013.6.30.까지 협정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한·미 FTA 발효시 적용시점, 원산지증명 관련 구비서류

질문

저희는 HS Code 8474.10에 해당하는 미국산 기계장치를 꾸준히 수입하여 관련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여 왔으며, 작년에 또 T/T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정산 완료 후 현재 해당물건이 미국에서 선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 1) 해당 기계장치가 미국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지금까지의 8% 관세부과에서 한미FTA 발효로 관세가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상기 1항에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발효일 3월 15일이 기준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 3월 15일 이전 한국하역항 입항은 기존 적용, 이후는 FTA 기준 적용)
- 3) 상기 2항에서 3월 15일이 기준점이 된다면, 3월 15일 이전에 입항하고 보세장치구역에 보관한 다음 3월 15일 이후에 반출하는 경우는 관세가 FTA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4) 상기 1~3항과 관련해서 한미FTA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기준 수입과 대비해서 따로 준비하여야 할 서류 등이 있는지요? (예 : 원산지증명서)

답변

- 1) 문의하신 품목(HS code 8474.10-0000)은 한·미 FTA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 (0%) 품목에 해당하므로, 관세율 변동이 있습니다.
※ FTA에 따른 협정세율(연도별 세율 포함)확인방법 ↳ 관세청 FTA포털



(<http://fta.customs.go.kr/>) >>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입시 세율 선택 >> 협정체결국(미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 2), 3) 3월 15일 이전에 미국에서 선적되든, 운송중에 있든, 한국 하역항에 도착해 있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든,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3월 15일 0시 이후에 하면 한·미 FTA 특혜관세가 적용됩니다.
- 4)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운송요건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미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자율발급방식)
 -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사항 [1.원산지증명서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기타 신원확인 정보 포함), 2.수입자 (아는 경우에 한한다), 3.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생산자 (아는 경우에 한한다), 5.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6.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7.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 8.원산지증명서 증명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5] 한·미 FTA 특송통관 면제 적용

질문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 배송시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서 관세, 부가세 부가 기준 금액이 15만원에서 미화 200불 기준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금액 기준 변경일이 국내 통관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날 기준인가요 아니면 해외 배송대행업체에서 물건을 보낸 날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

- 한·미 FTA는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불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면제 대상으로 운영됩니다.[한·미 FTA 제7.7조(특송화물)]
- 적용되는 시점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미국에서 배송되거나 운송중에 있더라도 해당물품의 우리나라 통관(수입신고)이 3월 15일 0시 이후에 이루어 지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효력시작일

질문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받지 못하여 항후 관세 환급을 하기 위해서 도착지 국가의 세관의 허가를 득한 후 통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Origin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 한국·아세안(명확하게 태국입니다)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한국 출항일 기준 6개월인지, 태국 도착일 기준 6개월이라는 것인지?
- 만약 한국에서 1월 1일 출항하였고, 태국 도착이 1월 10일 경우, 6월 10일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여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위의 6개월을 고려할 때)

답변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태국 측 사후적용 신청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 등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국 자국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태국 세관당국이나 주한 태국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규정

- 한·아세안 FTA 상품부역 협정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0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
 3. 어느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 즉,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수출국 출항일 또는 수입국 도착일 기준이 아니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 기준입니다.





[7]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질문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추후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1. AK Form 원산지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세관에 제출 여부

2. 수입면장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원산지증명서 발행 여부

상기와 같은 유효기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2.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원본)는 수입 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한·아세안 FTA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아래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8] 한·EU FTA 경과규정 적용기준

질문

유럽을 대상으로 수입 및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한·EU FTA가 2011년 7월에 발효된다고 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데 적용대상일 경우 관세적용이 해당 국가에서 선적시 또는 Invoice 발행시가 적용 대상인지 해당국가에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시가 적용기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EU FTA에서 경과규정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 원산지증명서 용어 의미 문의("서명된 날"과 "발급일"의 차이점)

질문

안녕하세요.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서명된 일자로부터" 또는 "발급일로부터"인데 "서명된 일자" 와 "발급일"이 정확히 뭔가요? 둘 다 같은 말 아닌가요?

답변

- 자율발급의 경우 "서명된 일자부터"(한·칠레 FTA)라는 말을 쓰고, 기관발급의 경우 "발급한 날부터"(한·아세안 FTA)라는 말을 쓰는 것이 논리적 이지만,
 - 협정에서는 한·칠레 FTA의 경우만 "서명된 일자부터"(date on which the Certificate was signed)라고 표현하고, 나머지는 모두 "발행(급)한 날부터"(date of issue)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바,
 - "서명된 일자"는 말 그대로 수출자가 '서명한 날'일 것이고, "발행한 날"은 기관발급의 경우 기관에서 '발급한 날'이고, 자율발급의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일자'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3.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인정여부

[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전자파일 인쇄본 사본 제출 스템프 유효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원산지증명서는 미국에서 원본을 우편으로 받아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서명까지 한 원본을 스캔해서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이를 인쇄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템프*가 찍힌 사본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서명까지 한 원본을 스캔해서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이를 인쇄한 것에 사본제출 스템프를 찍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템프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별표 6] 참조

[2] 한·EU FTA 관련 원산지증명서 원본 인정 범위

질문

한·EU FTA 시행이후 원본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첨부와 같은 문서를 원본으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해당업체에서 ERP 시스템 출력 후 스캔해서 전달한건). 첨부처럼, 원본을 스캔해서 메일로 송부받을 경우 이건은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원본의 인정범위는 업체에서 해당본 출력 후 우편송부 혹은 ERP상 출력 후 바로 메일 전송되는 것만 전자 문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확한 GUIDE라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 개념적으로, 원본을 스캔해서 메일로 송부 받을 경우 이것은 원본이 아니고, 업체에서 해당본 출력 후 우편이나 특송으로 송부받은 것이 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EU FTA에서 관세당국에 서면약속을 제출한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에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서명이 생략된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 참고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신고서 사본도 인정되고, 자료보관도 사본을 보관하면 되므로 원본을 받을 필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본 필요)

VII

협정세율 적용

- ① 협정관세 사전신청
- ② 협정관세 사후신청
- ③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 ④ TRQ(수량별차등협정관세) 적용 등

1. 협정관세 사전신청

[1] 한·EU FTA 발효 전 발급한 Invoice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 한·EU FTA가 '11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제품이 6월말에 선적이 되어 7월 말에 한국에 입항 예정인데(6,000유로 이상) 벨기에 쪽에서 이미 선적 서류(B/L, Invoice, Packing List)를 발급하여 한국으로 보내 주었으며, 저희가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Invoice 재발행 요청하였으나, 벨기에 쪽에서는 이미 발행된 Invoice에 대해서는 유럽세관에 대해 무효화 시킬 수 없다며 재발행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Supplier's long term declaration을 보내 주면서, 한국 세관에 제시하면 6월 선적된 물건이라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이라고 하네요.
- 이미 발행한 Invoice를 재발행 할 수 없다고 하는데, 6월에 선적 되어 7월에 도착하는 물건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벨기에에 요청해야 되나요?(6월에 선적된 건이나 앞으로 선적될 건에 대해 벨기에서 Invoice를 기준 형식으로 발행해 주는 건들에 대해 저희 쪽에서 1년 안에 관세 환급 요청을 하려고 할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1) 경과규정 해당물품: 발효일(7.1) 이전에 운송 중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
- 한·EU FTA에서 경과규정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과규정 해당물품(발효일 이전에 운송되었거나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서류(관련서류: 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후, 관련서류를 갖추어 협정 관세 사후적용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빙서류는 발효일부터 (수입신고수리일이 아님) 12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



- 원산지신고서는 발효일 이후에 소급발행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소급발행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소급하여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함.(예: 최초 발행된 송장에 원산지신고서 문구(작성일자 명기)를 추가 기재하여 발행하는 방법,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한 송장 등 상업서류를 추가 발행하는 방법 등)
-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위 물품(경과규정 해당물품-발효일 이전에 운송되었거나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소급발급할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작성의 권한이 있습니다.

(2) 경과규정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협정발효일의 다음날부터 운송된 물품)

- 협정발효일 이후 선적되어 일반세율로 통관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 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므로,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FTA를 포함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상업송장 등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주의할 것은,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즉, 6,000유로 초과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FTA 특혜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정관세 사후신청

[1]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질문

이번에 저희가 네덜란드 ooo사로 부터 MRI 의료장비를 구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할당된 관세가 8%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FTA 발효로 인하여 기존 관세 8%의 1/6 이 감면 되는 단계적 적용 대상품목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매 장비는 7월 12일에 국내 반입되며 13일경 수입신고를 해서 FTA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덜란드 본사에서 부품관련 원산지 증명 (FTA 적용을 위한) 서류 첨부가 미비해서 올해 말까지는 혜택을 못보고 소비자가 관련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불가피하게 기존 관세인 8%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향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FTA 발효 시점 이후에 수입된 품목에 대하여 기 납부된 관세의 환급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에서 경과규정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경과규정 해당물품(발효일 이전에 운송되었거나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후, 관련서류(직접운송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빙서류는 발효일부터(수입 신고수리일이 아님) 12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
- 현행 관세청 '한·EU FTA 집행지침'에 따르면, 협정발효일 이후 선적되어 일반세율로 통관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므로,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한·EU FTA 사후 협정관세신청 가능 여부

질문

현재 한·EU FTA 시행에 따라서 수입맥아를 3,500톤 할당을 받아서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적을 하려고 하는데 수출자가 세관인증번호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번호가 나오는게 적으면 한 달, 길면 두 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통관을 먼저 하고 나중에 관세환급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 EU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미지정 시, 먼저 일반세율 등의 세율로 통관한 후 (관세를 납부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 협정관세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즉, 협정발효일 이후 선적되어 일반세율로 통관된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 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므로,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
- 원산지신고서 원본
-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 FTA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원산지 심사를 위해 추가 요구한 경우로서 국제운송서류, 상업송장 및 원산지 소명서 등을 말함)

[3] 한·EU FTA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환급 요청의 건

질문

당사는 6,000유로 이하, 원산지 영국의 건으로 수입통관시 관세면제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수출자가 원산지 국가명 표기 오류로 인해 일단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환급 요청을 진행하려합니다.

따로 원산지증명서를 받지는 않았고 Invoice에 원산지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국가명 표기 정정된 Invoice 원본을 받아 환급 신청해도 될까요?

답변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고, 국가명 표기가 정정된 Invoice 원본을 받아 통관지 세관 납세심사부서에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 원산지신고서 문안

나. 영어 본(예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세관인증 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팔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빙칸으로 남겨둔다.
-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4] 한·EU FTA 관련 관세 환급 문의

질문

이태리 수입업체로 부터 섬유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이태리수입업체가 Customs Authorization no.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상품 한국 도착 시 (2011년 9월 초)까지 인증을 받지 못해 관세를 모두 납부하고 통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5일부로 세관인증번호를 부여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요?

- 관련 부서 / 연락처
- 필요서류 및 환급 요청서류 등 제반 양식
- 환급처리 기간 등

답변

- 수입신고 시 세관인증번호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고 일반세율로 통관된 물품의 경우에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므로,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 납세심사과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수입 통관한 세관(납세심사 부서)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는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기타 원산지신고서 원본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
 - 원산지신고서 원본
 -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 FTA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원산지 심사를 위해 추가 요구한 경우로서 국제운송서류(B/L), 상업송장 및 원산지 소명서 등을 말함)
- 법령상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환급처리 기간은 해당 세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한·EU FTA협정세율 사후적용 가능여부 문의

질문

한 EU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현상 : 입항일 '11.7.7, 수입신고 '11.7.12, 공급업체 수출자인증 진행 중
- ▶ 질문내용 : 이탈리아로부터 물품이 수입되고 해외 공급업체가 수출자인증을 획득하여 사후에 원산지신고서를 보내주면, 당사는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 선적일이 나와 있지 않아 발효일(7.1) 전에 출항한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합니다. (발효일 다음날 출항한 경우에도 사후적용(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만,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한·EU FTA에서 경과규정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발효일 이후에 협정에서 정한 서류(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수입신고(협정관세 적용신청)하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 또한,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에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므로,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신청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 관세적용신청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 납세심사부서에 신청하면 차액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한·아세안 FTA 사후 관세환급

질문

싱가포르에서 총 4건에 대해서 수입이 될 예정이며 4건에 대해서 각각 C/O 발급이 되지 않아 마지막 4차 선적 후 1건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먼저 4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담하고 사후 4건에 대해서 발급된 C/O 한건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분할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마찬가지로, 사후신청(환급)의 경우에도 통관될 각각의 선적분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각 4건의 C/O)를 구비하여야 협정세율 적용(환급)이 가능합니다.

[7] 한·페루 FTA 관련 협정세율 사후신청 문의

질문

한·페루 FTA 사후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신고시 세번은 5109.10-9000이며, 한·페루 원산지증명서[별지 6호의8서식] 9.번의 ORIGIN CRITERION 원산지결정기준을 PSR 99% BD로 받아왔습니다. 협정관세 적용하여 사후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페루 FTA에서도 수입통관 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 즉, 수입신고 당시에는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사본 가능)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HS 510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CTH)인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이 "PSR 99% BD"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한·페루 FTA 소급 적용 관련

질문

한·페루 FTA 소급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페루로부터 스위티 페퍼라는 캔에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

(6월 22일 선적 -> 7월 16일 경 부산 도착 -> 8월 10일 통관 완료)

이 경우 한·페루 FTA 규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할 경우 FTA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페루 FTA에서는 '경과규정'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의 경우 발효일(8.1) 이후에 수입되는(페루 선적)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6.22일 페루에서 선적되어 7.16일 부산에 도착된 물품의 경우 한·페루 FTA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관세특혜(환급)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한·아세안 위탁가공물품 수입신고시 협정세율 사후적용 여부

질문

T-shirt 6109-10-1000의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미얀마로 수출하여 미얀마에서 재단 봉제 가공을 하여 다시 한국으로 완제품수입 이에 수입신고 시 가공비, 자재값, 왕복운임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사후 협정신청시 가공비, 자재값, 왕복운임을 한·아세안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임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특례법 제5조 규정에 따라 FTA협정관세가 기본 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요건(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한 경우, 자재값 뿐만 아니라 임가공비용 및 왕복운임 등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0] 한·EU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관련하여, 발효일(7/1일) 이후 선적(7/10일)된 물품에 대해서, 한국 도착 후 8/15일 기본관세를 적용하여 통관 후, 나중에 원산지 증명서류 구비하여 제출시 특혜관세 환급(소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 협정관세 사후신청(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도 가능합니다.
- 즉, 협정발효일 이후 선적되어 일반세율로 통관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 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므로,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
- 원산지신고서 원본
-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 FTA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원산지 심사를 위해 추가 요구한 경우로서 국제운송서류(B/L), 상업송장 및 원산지 소명서 등을 말함)

※ 원산지신고서 소급발행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소급하여 발행된 원산지 신고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예컨대, 최초 발행된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작성일자 명기)를 추가 기재하여 발행하거나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한 송장 등 상업서류를 추가 발행하는 방법 등]

3.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1] 한·칠레 FTA 소급 원산지증명서 발행시 소급발급 문구 필요 여부

질문

한·칠레 FTA하에서 칠레 거래 선에게 당사가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행 하고자 합니다. 해당 선적 건은 선적일로부터 1년 미만임.

(당사 : 수출자=생산자/ 거래선 : 칠레 소재)

한·칠레 FTA 같은 경우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해서 발행하려면 원산지증명서 상에 영문으로 뭐라고 스템프를 찍어야 되는지요? Issued retroactively라고 찍나요?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양식 란에 별도로 기재하는 란이 있는지요?

답변

- Issued retroactively 등과 같은 '소급발급' 문구 없이 발행 가능합니다.

[2]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 적용 절차

질문

현재 유럽의 수출자가 세관인증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송품장에 세관인증번호 없이 원산지 증명 문구를 기입하고 2년 내에 세관인증번호를 받아 관세청에 신고를 하면 사후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6,000유로 이상의 경우) 후에 세관인증번호가 나오면 세관인증번호 없이 진행하였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협정발효일의 다음날부터 운송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므로,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조건

질문

수출자 측에서 (영국) 인증을 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무척 더딥니다. (신청한지는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7월 1일, FTA 발효 이후로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 재신고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 수출가격이 건당 6,000유로 초과의 경우 EU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미지정시, 먼저 일반세율로 통관한 후(관세를 납부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 협정관세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즉, 협정발효일 이후 선적되어 일반세율로 통관된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 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므로,
-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
- 원산지신고서 원본
-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 FTA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원산지 심사를 위해 추가 요구한 경우로서 국제운송서류, 상업송장 및 원산지소명서 등을 말함)

(4) 한·EU FTA 소급 발급 및 환급(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서류)

질문

저희는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무역업체입니다. 작년 7월 이태리에서 3만 EUR 상당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태리 현지 업체가 Authorization Number를 발급받지 못해 그 번호를 Commercial Invoice상에 기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그 번호를 발급받아 Commercial Invoice상에 기재를 하고자 하자 현지 업체의 해당지역의 세관에서 말하기를 '작년 7월에 발행된 Commercial Invoice상에 작년 10월에 발급받은 Authorization number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해당 Commercial Invoice를 개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폐사가 어떤 서류를 구비하고 제출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2. 해당업체가 발행한 성명서 혹은 authorization number certificate등의 서류가 구비되면 가능한가요?

답변

1. 현행 '관세청 한·EU FTA 집행지침'에 따르면, 협정발효일 이후 선적되어 일반세율로 수입통관 된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므로, "최초 발행된 송장에 원산지신고서 문구(세관인증번호, 작성일자 등 명기)를 추가 기재하여 발행하는 방법, 원산지신고문구(세관인증번호가 추가된)를 기재한 송장 등 상업서류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법 등" Commercial Invoice서류를 구비하여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 신청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2.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 3. 원산지신고서 원본 4.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5. FTA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원산지심사를 위해 추가 요구한 경우로서 국제운송서류, 상업송장 및 원산지소명서 등을 말함)

2.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된) 원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업체가 발행한 성명서 혹은 Authorization number Certificate 등의 서류로는 사후 협정적용이 어렵습니다.



(5) 한·미 FTA 포괄원산지증명서 물품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문

3/15일 발효되는 한·미 FTA 경과규정(발효일 이전 운송 중 또는 보세창고 보관 중) 물품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1) 12.1월 선적된 보세창고 보관 중 물품 (품목 : A & B)
- 2) 12.2월 선적된 운송 중 물품 (품목 : A& C)
- 3) 12.3.15일 이후 선적 예정인 물품 (품목 : A & B & C)
- 포괄증명서 발급 예정(3/15일 이후 날짜, 기간 : 선적일로부터 1년)

상기 1), 2)항의 경과규정 물품에 대해서도 상기 3)의 포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 가능한지요. 사용 불가하다면,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포괄원산지증명서는 가능 한지요. 아니면 각각의 개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 한·미 FTA에서 "원산지 포괄증명"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현행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지침」(2012.6.19)에 따르면,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의 포괄증명 시작일이 증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와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 적용 후 사후 원산지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1) 2012년1월 선적되어 보세창고 보관中인 수입물품(품목 : A & B), 2) 2012년 2월 선적되어 운송中인 수입물품(품목 : A& C)에 대해서 3) 2012년 3월 15일 이후 선적 예정인 물품(품목 : A & B & C)에 대하여 발행 예정인 포괄원산지 증명서(3월 15일 이후 날짜, 기간 : 선적일로부터 1년)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유효성에 대해서 사후 원산지 검증이 실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서 유효기간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포괄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한·아세안 FTA 소급발급 문구가 누락된 원산지증명서 유효 여부

질문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규정이 있는데 만약 출항일이 3월1일이고 발급일이 3월 12일 경우 소급발급 문구(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받은 원산지증명서에 누락이 되어 당 발급지에 문의한 결과 원산지증명서의 수정 및 재발급이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만약 소급발급 문구가 누락된 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소급발급 문구가 누락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Soon thereafter)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출 직후(Soon thereafter)라 함은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석하기로 합의(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시)한 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이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라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없이 발급될 수 있음]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7]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질문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에 의해서 원산지 C/O가 있을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관세사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일자가 선적일로부터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8%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수출자는 수출자의 회사가 C/O발급지로 부터 멀어서 선적하고 3일내에 발급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C/O를 다시 베트남으로 보내서 선적하고 3일로 소급발급하고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에 따르면,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Soon thereafter)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협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여기서 수출직후(Soon thereafter)라 함은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석하기로 합의(제1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시('09.10, 서울))한 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이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라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없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이 필요하므로,
 - 우선 수출업체를 통해 원산지 요건 충족 및 베트남 관련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신 후, 상기의 조항을 근거로 베트남통상부에 소급 발급의 문구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 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고,
 - "소급발급"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함께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하시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TRQ(수량별차등협정관세) 적용 등

[1] 한·미, 한·EU FTA별 TPL 품목 확인 요청

질문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의 예외물량 규정으로 HS 5408.32-0000, HS 5408.22-0000 항목에 대해서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TPL에서 이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세관과의 상담을 통해 이 품목이 미포함 상품임을 알았습니다. 이에 EU, 미국 FTA의 TPL* 품목을 보다 상세히 알고자 하니 이에 대한 비교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TPL(Tariff Preference Levels 관세특혜물량) : 협정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 수량을 한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

답변

- 한·EU FTA에서 TPL은 물품별로 정해진 수출쿼터(일정한 직물 등에 대해서 일정수량까지는 특정요건을 조건으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규정된 예외물량)로서, 이에 대해서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http://www.fta.go.kr/>) >> 한·EU FTA 참정 발효 >> 한·EU FTA 협정문 >>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 참조
- 한·미 FTA에서 TPL은 역외산 원료조달 허용규정("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목록"으로 지칭)으로서 원사기준의 예외로 직물, 의류에 대해 각 최대 1억 SME(Square Meter Equivalent : 섬유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에 대한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 조달을 허용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공급부족 원료의 구체적 품목은 정부가 한·미 FTA 발효 전에 추가적인 업계조사를 거쳐, 동 FTA의 발효에 즈음하여 미국 측에 이의 인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공급부족 원료 리스트로 지정될 구체적인 목록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한·미 FTA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나(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http://www.fta.go.kr/>) >> 한·미 FTA>> 한·미 FTA 협정문 >>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나 참조



[2] 한·미 FTA 사료용식물 수량별 차등관세(TRQ) 적용

질문

- 1) HS 1214.90-9090에 해당하는 HAY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에 FTA 협정세율 : 2012년 : 0% (200,000메트릭톤 이하) 93.8% (200,000메트릭톤 초과)로 조회됩니다. 이것은 미국 또는 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될시 무조건적으로 200,000톤 내에 수입신고되면 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요?
- 2) 200,000메트릭톤에 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관세청에 신고된 수량인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허가된 수입량인지, 수입자들이 관세청에 신고한 양인지)

답변

- 1) 미국(수출자, 생산자) 또는 한국(수입자)에서 발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원산지가 미국산으로 인정되고 운송요건 등 다른 협정적용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200,000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무관세(0%)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한·미 FTA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부속서 2-나(관세 철폐)부록 2-나-1(관세율할당) 참조

사료용 식물(기타)

-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 연도 물량 1~14(미터톤) : 연간 200,000 - 0%
 - 연도 물량 15 (미터톤) : 연간 무제한 - 93.8%
-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관세율을 운영하고 허가제도를 통하여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등록한 배합사료 제조업자, 등록한 단미사료제조업자 및 양축농가는 다호에 기술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허가가 요청된 연도 직전 24월 동안 자신이 수입한 물량과 당해 연도에 요청된 원산지상품의 물량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 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H(15년 균등철폐)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214.90-9090

[3] 한·인도 CEPA 농림축산물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기관 문의

질문

HS 5002.00-1020에 대한 한·인도 CEPA 협정세율(수입)에서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대상으로 2011년도에는 '추천'이면 8%, '미추천'이면 38.8% 또는 12,911/kg 양자 중 고액(율)이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 어느 기관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답변

<HS 5002.00-1020 관련 관세율 적용>

-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8%, [미추천세율(W2)] 51.7% 또는 17,215원/kg 양자중 고액(율)
 [추천기관] 한국생사수출조합,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
 - 한·인도 CEPA: [협정세율](2011)38.8% 또는 12,911/kg 양자중 고액(율)
 - 할당관세(P1): 0%
 [품명] 20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추천기관]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추천대상자]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이들과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적용기간] 2011-01-01 ~ 2011-12-31
-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90호, 2011.6.30] 참조
- ※ 세율적용순위: 할당관세 > WTO협정[추천세율(W1)] > 한·인도 CEPA 협정세율 > WTO협정[미추천세율(W2)]



[4] 한·아세안 FTA 망고스틴(초민감품목) 관세율에 대한 질문

질문

망고스틴을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데 한·아세안 FTA 관세율에 따라 30%가 적용이 되는데 2016년에 24%로 떨어지더군요. 근데 이 관세율이 태국과의 민감품목(쌀, 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아세안 FTA 협정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 당사국의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관세품목들은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초민감품목 내 관세품목들의 개별 그룹에 대해서, 당사국들은 다음의 약속을 이행한다. (2) B그룹 (20%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품목) 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6개국은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한다.”
- 문의하신 망고스틴(HS 8504.50-3000)은 우리나라의 초민감품목군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으로서, B그룹 인하스케줄에 따라 20% 감축됩니다.

[5]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협정세율 소급적용 문의

질문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TRQ 품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FTA 협정관세 추천서를 받았지만,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아직 인증수출자로 인증이 되어 있지 않아 수입신고 시 먼저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제출하고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득한 후 추후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은 후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을 경우 추천받은 한도 수량내에서 협정관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TRQ 품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이미 추천서를 받았다면, 추천받은 한도수량 내에서 사후 신청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고,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 관세적용신청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한·EU FTA 협정세율 소급 적용 및 수량할당추천(TRQ) 소급 적용

질문

유럽산 치즈 수입 업체입니다. 폐사의 거래선인 유럽의 수출자가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지정이 되지 않아, 6,00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수입하고 있는데, 사후에 인증수출자로 지정이 되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관세 환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00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 수출자가 인증을 득하지 못한 경우로서, 폐사가 수입신고 시점에서 유가공협회에서 발급받은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발급일이 수입신고일보다 앞선 경우)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후에 인증을 득하여 환급 신청 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도 소급적용하여 환급(관세 0%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협정발효일 이후에 선적되어 일반세율로 통관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 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므로,
 -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관세율 할당(TRQ) 품목으로서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시에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한도 수량내 협정세율로 적용받아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VIII

원산지확인서류 및 보관의무

- ① 원산지(포괄)확인서
- ②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③ 원산지소명서
- ④ 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1. 원산지(포괄)확인서

[1] 유상 사급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질문

우리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국내의 자동차회사(A라고 칭함)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A는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부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제품이 국산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원재료 공급처인 A사에 철판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런데 A사와는 “갑” “을” 관계이기 때문에 A사에 공급 철판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A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고 다만 거래사설(P/O, 구매확인서 등의 전산자료 등)만 가지고 A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가 국산임을 입증할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 회사도 하위 벤더에게 같은 철판(원재료)을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고 다른 종류의 부품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도 우리 회사가 하위 벤더에게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 “유상사급”이란 제조회사와 벤더들 간의 이러한 거래를 유상사급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부품회사와 자동차 완성품회사간의 일반화된 거래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품회사가 원재료 구입을 원활하게 하고, 품질의 균등성, 그리고 납기준수 등의 서로 간에 이점이 있고 특히 우리 회사로서는 원재료 값이 일반 open market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답변

- 원산지확인서는 완제품 또는 원재료가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완제품 또는 원재료 공급자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부품제조자인 귀사에서는 원재료(철판) 공급자인 A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것을 토대로 귀사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및 하위 벤더에게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급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질문

저희는 볼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 대기업에 사급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볼트를 생산하여 대기업(A)의 임가공업체와 같은 A'SSY를 만드는 업체(B)로 물건을 납품하고, 지불은 대기업(A)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A)의 A'SSY를 만드는 업체(B)에서 인증수출자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원산지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원산지확인서를 보내줘야 하나요? 만약 보내줘야 한다면, 지불을 하는 대기업(A)를 공급처로 하나요, 아니면 물건을 받는 곳인 A'SSY업체(B)로 해야 하나요?

답변

- 생산자(A'SSY를 만드는 업체 B)가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재료 공급자(귀사)는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산자(A'SSY를 만드는 업체 B)를 공급처로 합니다.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반복 발생하는 유·무상 사급의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

질문

유·무상 사급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외주업체에게 유상사급을 주어 가공하여 회사 쪽으로 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류상으로는 유상사급에 대한 재료비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며, 재 납품될 때 재료비+가공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매출계산서의 재료비와 매입계산서의 재료비를 서로 공제하여 가공비 부분만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text{매출재료비}-\text{매입재료비})+\text{가공비} = \text{가공비}$ 이러한 형식으로 최소 4번의 유상사급 관계를 거치며 완제품 전의 부분품을 구매하여 회사에서 마지막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았을 때 원자재 구입 \rightarrow 회사 \rightarrow 외주업체에 유상사급으로 납품 \rightarrow 가공하여 회사로 재 납품 \rightarrow 외주업체에 다시 유상사급으로 납품 \rightarrow 가공하여 회사로 재 납품 \rightarrow 회사에서 마지막 가공하여 완제품 생산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각각 내 매출과 매입을 서로 공제하여 가공비만을 결제하고 있지만,

- 재료비에 대한 거래가 오고 가므로 소유권이 이전하기 때문에 유상사급이 발생할 때마다 원산지확인서를 주고받아 완제품 원산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 실질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상호간에 공제하여 가공비만 결재되기 때문에 무상사급으로 견주어 원자재에 대해서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 완제품 원산지결정을 하여도 되는지 위 1, 2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재료(역내산)'에 대해 증빙할 경우 필요한 것이므로,
 -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외주가공업체와 매출과 매입을 서로 공제하여 가공비만을 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가공업체로부터 굳이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지만, 외주업체를 통하여 만들어진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부가가치기준 적용에 대비해 '임가공계약서'나 '국내제조확인서'를 받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4] 원산지확인서 외 기타 양식 작성방법 문의

질문

저희업체는 OO자동차 협력업체로서 직수출이 아닌 OEM형식의 납품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확인서를 고객인 OO자동차에 제공합니다.

1. 역내산일 경우 1. 원산지확인서 2. 원산지소명서 3. 소요부품명세서 4. 제품 원가산출내역서(부가가치 증명 限) 위 4가지는 必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 첨부) 그러나 3,4번 양식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지정하는 정확한 양식인지 궁금합니다.
2. 부가가치기준 작성 시 4번 제품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가격기준은 '사후원가'(결산서) 기준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마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결산서에 잡혀있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비율을 어느 특정 제품에 적용시켜(결산서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비율 넣는다면) 제품원가 구성요소가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전원가'의 개념을 적용해야 좀 더 근사치가 가까운 제품원가 산출내역서가 될 거 같은데요.
3. 원산지확인서 아래 (서명 또는 인) 부분에 지금까지 작성자 이름과 해당 도장을 찍었습니다만, 오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와 통화한 결과 회사 대표자 이름과 대표자 도장 그리고 회사 직인(명판)을 찍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준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어느 곳에 공지가 된 것인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소요부품명세서, 제품원가산출내역서(부가가치 증명 限) 양식에 대해서 법령상 또는 정부에서(관세청) 지정한 어떤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작성 편의상 관세청에서 견본(sample)양식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가 회계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업체(고객)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 아래(서명 또는 인)부분에는 작성자 이름과 해당 도장을 찍는 것이 맞습니다.



[5] 여러 장의 원산지확인서에 직인 명판 찍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다 보니, 자재가 많아 페이지가 100장이 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 페이지에 직인명판을 찍어야 하는지, 맨 앞 페이지에만 직인명판 서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전 페이지에 직인명판을 찍을 필요 없이, 맨 앞 페이지에만 작성자 서명을 하고 직인명판을 찍으면 됩니다.

[6] 원산지확인서 작성시 제품에 대한 HS CODE 확인요청

질문

저희 회사는 철강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포스코에 주문을 하여 코일을 받아 가공하여 협력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서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여 입력을 해야하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포스코에서 코일을 받으면 열연(냉연) 코일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CR(COLD ROLLED) 규격 0.5*1200mm는 HS 코드가 7209.17인데 저희는 이 코일을 슬리팅하여 스캐프 형태로 업체에 납품하거나 철판 형태로 납품을 합니다. 만약 위 코일을 0.5*500mm 스캐프로 가공하여 업체에 납품하여 업체에서 세탁기나, 냉장고 등을 만들어 수출을 한다면 HS 코드를 저희가 처음 받은 7209.17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슬리팅한 500mm에 맞추어 (600mm 이하) HS 코드로 변경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원산지확인서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원재료'가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급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HS 코드)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CR(COLD ROLLED) 규격 0.5*1200mm(HS 코드 : 7209.17) 코일을 고객님의 회사에서 0.5*500mm 스캐프로 가공하여 협력업체에 납품한다면,
 - 귀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은 0.5*500mm 코일이므로, 슬리팅한 500mm에 맞추어 (600mm 이하) HS 코드를 변경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7] 원산지확인서 작성양식

질문

- 원산지를 충족하지 않는 비역내산 결정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문제
 - 당사는 제품이 비역내산으로 결정될 경우 별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표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역내산의 경우는 굳이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 OR 조건의 원산지를 전부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문제
 - 당사 제품의 원산지결정결과 OR 조건의 결정기준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EX: CTH OR BD30%) 당사는 원산지결정기준에 결정기준 전부를 기재합니다. (EX: CTH OR BD30 으로 표시) 그런데 거래처에서 요구하기를 적용한 한가지의 기준만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결정기준을 1개만 적어야 하는지 충족되는 기준 전부를 적어도 관계없는지요?

답변

-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재료'에 대해 증빙할 경우 필요한 것이므로, 비역내산이나 미상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실 경우 애초에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원산지확인서의 공급물품 명세에 비역내산이나 미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적용대상 협정,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원산지 등" 기재란을 모두 채워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성지침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간에 필요여부 등에 따라 적당히 작성하거나, 아예 원산지 이외의 재료는 공급물품 명세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원산지확인서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란은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적는 것으로,
 - 예컨대, 원산지결정결과 OR 조건의 결정기준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예 : CTH OR BD30%), 적용(충족)된 원산지결정기준 전부를 기재해도 작성 방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의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작성지침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간에 필요여부 등에 따라 적당히 작성하거나, 주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하나만 기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8] 외자품 구매 입고시 CFR로 입고가능한지 여부

질문

제조업체로서 FTA를 진행하는데, 외국에서 일부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다른 부품과 함께 제조하여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를 자동차회사에 제공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외국으로부터 CFR조건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기본수입원칙이 "CIF 또는 입고금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문의견이 있어서 보험(Insurance)을 특별히 부보하지 않는 저희 입장에서는 CIF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 및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여 CFR로도 입고금액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 CFR로 입고금액이 가능합니다.
- 수입재료 가격은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부가가치기준 산정시 재료비 계산에 필요한 것으로, 재료비 계산 기초가격은 FTA 협정별로 규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매입경로별로 규정하는 방식(칠레, 싱가포르와의 FTA)
 - 수입재료 : 관세평가협정에 의한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하되, 칠레와의 FTA는 국제운송비를 공제하고, 싱가포르와의 FTA는 국제운송비를 가산 합니다.
- 원산지지위별로 규정하는 방식(EFTA, 아세안, EU와의 FTA)
 - 비원산지재료비 : 수입시 과세가격,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에서 지급된 확인 가능한 가격입니다.
- 또한, FTA 협정에 따라서는 비원산지재료비에 별도의 공제요소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수출시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질문

수출 회사 중 영국의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FTA를 적용하여 수출을 진행하고자 인증자수출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처에서 FTA를 적용받으려면 수출자는 Invoice 및 패킹 작성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 수입할 때와 같이 Invoice에 영어로 FTA문구를 기입하고 세관인증번호를 기입하고 회사명판 직인과 사인이 들어가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FTA 적용시 유의점도 궁금합니다.

답변

※ 철강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합니다.

- 기본적으로 수입 시와 같습니다.

- 한·EU FTA에 따라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을 기재하여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발급제로 운영됩니다.
- 동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에서 인증받은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1. 한·EU 대상국 및 품목을 확인합니다.(한·EU 협정에 의한 수출 대상국(EU 27개국)인지, 수출품이 원산지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한국산인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여기서는 영국이므로 해당함)
2.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를 작성합니다.(EU 지역으로 수출이 결정된 물품의 송장을 작성합니다.)
3.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합니다.(6,000유로 초과인 경우 세관에서 인증 받은 세관인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는 인증 심사시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서명 및 이름이 생략 가능합니다.)
4. 무역서류를 발송합니다.(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을 비롯한 무역서류를 바이어 측에 발송합니다.)

[10] 타사 국내산 원료 구입 후 수출시 원산지 기준

질문

국내 A 업체로부터 제품 (화학원료) 을 구입한 후, EU 로 수출 할 경우, EU 국가에서 "원산지기준 Invoice"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공급 업체이서 "원산지확인서" 를 받은 후, 상기 Invoice에 표기를 해주면 되는지요? 즉, 국내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 최종제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생산자에 있으므로,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해서 그것을 토대로 원산지신고서 (Invoice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 및 서명 등을 기재한 것)를 작성해서 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합니다.
 - 주의할 것은, 6,000유로 초과 수출하는 업체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협정상대국 수입자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협정상대국으로 직접운송 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주의할 것은, 총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11] 한·아세안(태국) FTA 관련 원산지확인서 작성

질문

현재 저희 회사는 농협으로 관세 혜택을 받고 불고기를 가공(익힌 것)하여 태국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주원료는 돼지고기(앞다리 살)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저희 조합원 농장의 것) 돼지를(살아있는 것) 저희 도축장에서 도축하여 저희 가공공장에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부재료로 들어가는(예로 간장, 양파 등)것은 원산지 증명을 하기 힘들어 원산지는 미상(수입산으로 취급)으로 하여 부가가치 기준[공제법(FOB-수입산/FOB)]으로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박스가격이 크게 잡아 1,000원인데 138박스를 썼습니다. 박스도 원산지 규명을 해야 하는지요?)

1. 종이 포장재(box)도 원산지 규명을 해야 하는지요
2. 원산지확인서랑 원산지 포괄 확인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3. 원산지 소명서의 17번 부가가치비율 %를 제가 직접 적는 것인지요?
4. 신청기관은?

답변

1. 소매용 포장 용기는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그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재료비 또는 비원산지재료비에 각각 계상합니다. 그러나 수송용 포장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2.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재료'에 대해 증빙할 경우 필요한 것이므로, 미상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실 경우, 국내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원산지확인서로서,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여기서는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하고, 부가가치 비율(%)을 수출자(작성자)가 직접 적습니다.
4. 한·아세안(태국) FTA는 기관발급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둘 다 가능합니다.



[12]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질문

1. A라는 수출제품의 원재료가 각 국내 원재료납품업체가 20개(a,b,c,d....)라면, 각 원재료 납품업체별로 각각의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확인서상의 중간부분 원산지확인 대상물품의 기재 란에 예를 들면, a의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맞는다면, 해당 원재료 a에 적용 가능한 FTA별로 적용대상 협정을 다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20개의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재료 a가 그,ㄴ,ㄷ...의 다른 구성품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다시 그 그,ㄴ,ㄷ...에 대해서 다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3. 원산지확인서에 a라는 원재료만의 hs code로(최종 완제품이 아닌) 원산지 결정기준을 체크하여 원산지기준충족여부가 "아니오"일지라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제출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결론적으로 원재료 a가 단일 원재료일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가 KR일 경우에만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예를 들어 a의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용대상 협정은 최종 수출자가 요청한 협정이 있으면 그것을 기재하면 되고, 없으면 모두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원칙적으로 다시 발급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수출자가 요구한다면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은 업체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지만, 수출자가 요구하거나 필요할 때는 제출해도 무방하고 이것은 업체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13] APTA협정 원산지확인서 작성

질문

제가 대기업 사이트에 원산지확인서를 업로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L모 전자에 납품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적용대상 협정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중국이 원산지인 협정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적용대상 협정은 저희가 임의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원산지 기준 결정에 영문 두 글자로 되어 있던데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답변

- 원산지확인서의 5. 적용대상협정 란에는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 즉, L모 전자가 수출하는 국가와 체결한 FTA를 적는 것입니다.(예: 한·아세안, 한·EFTA 등) *수출자에게 확인
 - * 참고로, 중국이 원산지인 협정대상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이 있습니다.(일반 특혜협정으로서 FTA 관세특례와는 다릅니다)
 - FTA의 경우, FTA 관세특례법령의 적용을 받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하나,
 - APTA는 FTA와는 달라, FTA 관세특례법이 아닌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등이 적용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의 검색 방법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기준(PSR) >> 원산지결정기준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 코드 입력 후 검색

[14] 원산지확인서 발급

질문

한·EU FTA와 관련하여 EU에 있는 국가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해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데 EU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에 있는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서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산지신고문안이 있는 송장 등 상업서류만 제공하면 되는지, 둘 다 제공하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만약 원산지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면 원산지신고문안이 있는 송장 등 상업서류는 원재료수입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재료가 EU산이고 이 원재료를 아무 추가 가공 없이 국내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제공해도 되고, 해당 재료에 대한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원산지신고 문안이 있는 송장 등 상업서류)를 제공해도 되며(선택),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 문안이 있는 송장 등 상업서류는 원재료 수입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15]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차이

질문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원산지(포괄)확인서 :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다만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원산지증명서 : 관세양허국간에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양허(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수 구비서류이며, FTA 협정국간 저율관세 및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로 수출자가 권한 있는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발급 신청하거나(기관증명방식), 스스로 발급함(자율증명방식)



[16]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질문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점은, 어떠한 물품을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FTA C/O를 받아 온 전에 대해 제조 가공 없이 그대로 국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유통업체 A사는 태국 수출자로부터 AK Form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여 물품 KK를 수입.
- A사는 국내 B사에 KK물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확인서(건별)를 발급하면서 확인서 상 9번 원산지란에 "태국"으로 기재 (5번 적용대상협정은 한·아세안만 기재함)

답변

-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협정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이므로,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참조)
- 즉,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는 '충족'으로 체크하고 원산지는 태국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또한, 원재료(물품 KK)가 태국산이고, 이 원재료를 추가가공 없이 그대로 국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국내 거래처(B사)는 별도의 원산지(포괄)확인서 필요 없이 해당 재료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정하는 AK Form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료 누적을 적용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17]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질문

원재료를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거래처는 최종 수출자에게 납품하고요. 거래처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받아 작성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재료의 원산지는 독일입니다. 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어야 하나요? 저는 공란으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1) 일단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는다고 보고요.
- 2) 1~100의 원재료들이 합쳐져 완성품이 되는데 완성품을 수출 할 때 즉, 최종 수출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어야 한다면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 먼저, 원칙적으로 EU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그 물품에 대해 일체 가공을 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공급(납품)하시는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원산지확인서는 사용된 원재료가 '원산지(역내산) 재료'임을 증빙할 경우 필요한 입증서류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최종물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EU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EU 협정국(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은 '역내산'이라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에 따라 적용대상 협정,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충족에 체크), 원산지(독일 또는 EU) 기재하여 작성함]
 - 1) 누적기준이 적용되면 역내산으로 인정 가능하고,
 - 2) 최종 수출자가 완성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 그러나, 수출자가 EU가 아닌 다른 FTA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작성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18]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시 입증 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성전자에 세탁기, 에어컨 부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업체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각 FTA 협정별로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성 중에 있는데요... - HS code 845090 / 841590 - 2가지. - 원자재를 국내업체에서 구매 후 중국공장으로 보내서 중국공장에서 조립(전체공정 모두) 후 완제품 상태로 국내공장으로 다시 들여오면, 국내공장에서 검사 및 단순포장작업 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체계입니다.

1. 상기의 경우 비역내산이 맞는지요?(전체공정이 중국에서 이뤄져서 당연 비역내산이다..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 비역내산이 아닐 경우, 각 협정별로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 확인 후 역내 or 비역내를 결정해야 하는지요?
3. 원산지(포괄)확인서 외에 입증자료로 갖추어야 할 법정 및 일반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1. 해당물품 생산공정이 체약국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비역내(중국)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역내가공기준, 영역원칙, 역외가공금지원칙)
 - 원자재를 국내업체에서 구매 후, 중국공장으로 보내서 중국공장에서 조립(전체공정 모두) 후 완제품 상태로 국내공장으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라면, 역내산(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원산지확인서는 '역내산재료(원산지재료)'에 대해 증빙할 경우 필요한 것 이므로, 비역내산 재료를 사용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비역내산이 아닐 경우, 각 협정별 품목별로 정해진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 확인 후, 역내산 제품(원산지제품)을 결정합니다.
3.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등)를 구비하여야 하고,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가격관련 입증서류(예: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19] 독일 수출 관련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질문

독일에서 동전인식기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동전 인식기의 부품 일부를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받아 독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Country of origin의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발행 받아야 하나요 아님 저희 쪽에서 발행해야 하나요? 독일에서 최소한의 관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독일로 보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

- 제조업체(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받아 그것을 토대로 수출자가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신고 문안 첨가 및 서명(인증수출자는 생략 가능)을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체약상대국으로 직접운송 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아래 관련규정 부속서3 참조)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주의할 것은, 총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음

참고자료

- ⇒ 구체적인 작성 방법(수출)
 - 한·EU FTA 대상국 및 품목 확인(한·EU 협정에 의한 수출 대상국(EU 27개국)인지, 수출품이 원산지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한국산인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상업송장 작성(EU 지역으로 수출이 결정된 물품의 송장을 작성합니다.)
 -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 문안 첨가 및 서명(한·EU 원산지규정에 따라 한국산 물품의 수출시 '협정문 부속서 I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 문안을 상업송장에 기재합니다. 6,000유로 초과의 경우 세관에서 인증받은 인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는 인증 심사시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서명 생략이 가능합니다.)
 - 무역서류 발송(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을 비롯한 무역서류를 바이어측에 발송합니다.)



[20]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원산지결정기준 영문 표기 방법

질문

- HS CODE : 3215.90으로 동일한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인도 협약의 경우 CTH +BD 35%, CTH + BD 40% 등으로 표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동일한 HS CODE 제품이라도 표기가 틀려 질수 있는 건지 아니면 HS CODE가 동일할 경우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한·미 FTA 관련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중 HS code : 3909.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원산지 폴리머가 폴리머 전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표기법은 CTH만 적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중량기준 50% 이상이란 문구도 포함 시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량기준에 해당하는 영문 표기법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6단위까지 알면 확인이 가능한데, FTA 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확인서에는 적용된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 예컨대, HS 3215.90의 한·인도 협정 원산지기준은 "CTH+BD 35%이상"이므로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HS 3909.50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원산지 폴리머가 폴리머 전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의 표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출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 권고하는 내용은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으로서 "PSR"로 기재하면 됩니다.
 - 참고로, 미국측 수출자나 생산자가 위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면 협정서의 조항대로 PSR을 (b)로 표기해도 가능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b)(i)로 표기해도 인정되며, 또한 협정문 제6.1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조항자체를 그대로 적어도 가능합니다.



[21]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질문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B라는 주재료가 들어갑니다. 당사는 A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B라는 재료를 점착 공정합니다. 여기서 본드, 이형지(점착 유지를 위한 포장)가 들어갑니다. 점착을 마친 B 원재료를 절단하여 A라는 제품을 완성합니다. 단순 공정으로 B와 A의 세 번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A 제품의 포괄확인서를 발급 하기 위해 B 제품의 포괄확인서만 준비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드, 이형지의 원재료확인서까지 필요한가요?
세번변경기준시 B원재료가 이미 CTH를 충족하였다면 당사 역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인가요?

부가가치 기준일 경우 본드 이형지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본드 이형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제품의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B(원산지확인서), 본드 원산지확인서, 이형지 원산지확인서를 받고 충족 시 발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B(원산지확인서)만 받고 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먼저 고객님이 생산·납품하는 "A라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 수 없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 A 제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B제품의 원산지확인서 뿐만 아니라 가공공정에 투입되는 본드, 이형지의 원산지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B원재료가 CTH를 충족하여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었더라도 본드, 이형지의 원산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 다만, 본드와 이형지가 세 번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비원산지 또는 미상) 그 가치가 미미한 경우(A 제품 가치의 10%이하)에는 본드, 이형지의 원산지를 무시하고 A 제품은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어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최소기준 적용)





[22] 원산지포괄확인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작성

질문

저희가 수입하는 원자재(원재료) HS code는 4001.22-0000이며 태국산이고, 원재료 가공 후 수출 HS code는 4016-99-****입니다. 고무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 후 수출 및 내수 공급업체인데 이번에 저희가 제조한 고무제품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 (포괄)확인서 제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대분류 : 원산지 (포괄) 확인서 * 중분류 : 공급물품 명세서 * 소분류 : 7.항 원산지결정기준 7.항 원산지결정기준에서 5.적용대상 협정 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써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답변

1.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로 품목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하고, 크게 나누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뉘게 되고 세 가지 기준이 결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문의하신 제품(HS 4016.99)의 각 FTA 협정 적용 관련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및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 및 조회하시고, 원산지확인서 양식 뒷면 기재 요령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단위세번변경기준(CTH),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부가가치기준(공제법-BD)

2. 각 FTA 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한 FTA협정을 적용받더라도, 각 협정체결국 별로 달리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6단위 세번 이하도 확인하시어 아래의 방법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기준(PSR) >>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401699) 입력후 검색



[23] 한·EU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자격

질문

해외에서 화학 원재료를 수입하는 무역업체입니다. 자사 --원재료 수입--> A사에 공급 --A사 생산 및 가공--> 해외 수출 이런 시스템인데요, A사에서 저희에게 원산지확인서(이것이 원산지 포괄확인서와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를 요청했습니다.

1. 이 원산지확인서를 원재료 공급업체인 저희가 작성해야 하는 건지요?
2. 그리고 원산지확인서에 보면 7.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단위 세번 변경 기준,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실제 선택한 기준 등...)

답변

1.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 협정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이므로,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출자의 요청이 있으면 공급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 다만, 동일한 수출자에게 동일한 원재료를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할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하면 작성일로부터 12개월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시에도 FTA 협정별·품목별로 정하는 원산지결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 즉,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로 품목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하고, 크게 나누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누게 되고 세 가지 기준이 결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문의하신 제품의 FTA 협정 적용 관련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하시고, 원산지확인서 양식 뒷면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기준(PSR) >> 원산지결정기준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401699) 입력후 검색





[2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질문

저희 업체는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가공후, 국내업체(수출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내납품업체(수출자)에서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업체(생산자)가 납품업체(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의 확인여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업체(생산자)가 원재료업체에 요구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원재료 공급업체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하여 원재료의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원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5]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업체

질문

(한·EU FTA) 원사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업체 명단이 7월에 23개 업체인데 11월에 FTA포탈 공지사항 231번을 보면 업체가 7개로 되어있습니다. 7개 업체만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업체로 보아야하는지, 그럼 그 외 업체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작성이 가능하지만 미충족으로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관세청(서울세관)에서는 국내외 섬유기업들의 한·EU FTA 활용편의를 위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국내 원사공급기업의 명단과 연락처를 첨부와 같이 공개하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23개 업체)
- 아울러,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 동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국내 원사기업 또는 동 명단 관련 질문은 본회 통상마케팅팀, 전화 : 02-528-4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는 국내 원사기업들의 생산 품목 중 한·EU FTA 원산지 기준에 충족되는 원사제품의 상세정보를 첨부와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개 업체)
- 아울러, 추가적으로 정보공개에 참여코자 하는 국내 원사생산기업 및 동 정보 관련 문의사항은 본회 FTA지원센터(전화:02-528-4054)로 문의바랍니다.



[26]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요령

질문

저희는 태국으로부터 고무사(HS코드 : 4007.00-1000)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로부터 이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에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요청받았습니다. 발급을 하려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보니 공급물품 명세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1. 품명 : 고무사
2. 적용대상협정 : ?
3. 품목번호 : 제4007.00호
4. 원산지결정기준 : ?
5. 원산지기준충족여부 : ?
6. 원산지 : 태국

- 1) 적용대상협정이 존재하는지?
- 2) 원산지결정기준은 저희가 고무사로서의 완성품 수입이니 WO가 맞는지?
- 3) 원산지기준충족여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저희로부터 이 고무사를 공급받는 업체에서 저희의 물품을 재가공하여 타 업체에 다시 납품을 하고, 납품받은 그 업체가 또 다시 가공을 하여 유럽지역으로 수출을 하려다 보니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1) 적용대상협정 : 한·EU(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FTA의 명칭) 여기서는 납품 받은 그 업체가 또 다시 가공을 하여 유럽지역으로 수출을 하므로 한·EU FTA
 - 2) 원산지결정기준 : 한·EU FTA에서 4007.00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이므로, 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기준(PSR) >>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401699) 입력 후 검색
 - 3) 수입물품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미충족'에 해당하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자체를 발급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 ※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재료'에 대해 증빙할 경우 필요한 것이므로, 만약 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 물품에 대해 일체 가공을 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27] 원산지포괄확인서 관련 보관서류

질문

한·EU FTA 업체별 인증을 받았습니다. EU로 수출할 때 보관서류에 대하여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1. 수출할 때 원산지소명서는 세관에 제출하지는 않아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하나요?
2. 생산업체로부터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간이 1년인 경우 같은 HS CODE 물품을 재수출할 때에 기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을 당시 수령했던 서류(BOM, 생산공정도,..등)로 관련서류보관을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위하여 자료 보관 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나. 수출신고필증
 -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바.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 아.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 한·EU는 자율발급방식이므로 원산지소명서를 발급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생산업체로부터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간이 1년인 경우 같은 HS CODE 물품(원산지결정기준 동일)을 재수출할 때에는 기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을 당시 수령했던 서류(BOM, 생산공정도 등)를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관을 하여도 괜찮습니다.



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의 차이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FTA 특별법 시행규칙 6조의 3 과 6조의 4호에 있는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서로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용도가 어떠한가요? 국내제조 확인서는 모든 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협정에서만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확인서류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자율발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생산공정의 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 특히, 한·미 FTA에서는 ‘공정누적’(6.5조)이 인정되므로 국내제조확인서를 활용하면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합니다.(예컨대, 비역내산 원면(HS 5201)을 사용하더라도 역내에서 A사가 면사(HS 5205)를 제조하고 B사가 면직물(HS 5208)을 제조하여 그 면직물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정누적 기준에 따라 A사로부터 받은 국내제조확인서를 근거로 B사가 A사의 생산공정을 누적하면 원산지 기준(CTH)을 충족하므로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 국내제조확인서는 모든 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2] 국내제조확인서 소급 발행 가능 여부

질문

국내제조확인서 소급발행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국내제조 확인서는 2011.6.30일자로 FTA특례법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날짜에 기 발급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맞추어 소급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확인(결정)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서, 원산지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이전 날짜에 기 발급된 원산지(포괄) 확인서에 맞추어 소급발급도 가능합니다.



[3] 국내제조확인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단을 수입하여 염색, 날염 및 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업체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염색 또는 날염(전처리 및 가공 포함)하여 A라는 업체에 판매를 했습니다. A 업체는 간단한 봉제를 하여 EU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A업체에서 저희 쪽에 원산지확인서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원단을 수입하여 가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EU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끊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제조확인서를 끊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국내제조확인서 서식지를 찾아보았지만 명칭 변경된 것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일로 서식지를 보내주시거나 서식지를 찾을 수 있는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공급물품이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EU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이라면 역내산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원산지(포괄) 확인서 작성이 필요하지만,
비당사국(예: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작성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원재료공급업체)가 발급합니다.(관련규정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서식 >> [서식 2의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참조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4)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활용 가능한 협정의 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현행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현재 체결된, 향후 체결될 모든 FTA 협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인지요. 해당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한·칠레 FTA 등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상에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구가 존재하는데 비해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상기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답변

-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체결됐거나 향후 체결될 모든 FTA 협정에 활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5)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요령

질문

제조사 확인서 작성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공급물품 명세 부분에 수량 및 가격 부분은 납품 수량 전체의 수량 및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위의 비원산지 재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수량 및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주요 생산공정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 문의하신 '제조사 확인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합니다.
- 공급물품 명세에서 수량 및 가격 부분은 공급물품 전체의 수량 및 가격을 적는 것이고, 주요 생산공정은 공급물품의 주요 제조과정과 공정방법을 대략이라도 꼭 적으셔야 합니다.





[6]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자

질문

- 원산지확인서의 경우에는 보통 최종수출물품 생산자가 수출자(무역상사)에게 제출하는 서류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최종수출물품 생산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게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인증 수출자를 신청할 때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서 궁금합니다. 그것이 최종물품이 아닌 원재료의 경우에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국내제조확인서의 경우에 신설된 양식으로서 이것도 또한 위의 질문과 동일하게 최종물품을 생산한자 이외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제조업체에게 국내제조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원재료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원산지확인서나 국내제조확인서를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답변

-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시 요구되는 원산지확인서는 '직물류'가 아니라면, 최종 물품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실제적으로 최종물품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은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

[1] 원산지소명서 작성 요령

질문

저희 회사 제품의 수출과 동시에 타 회사의 완제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완제품 생산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완제품생산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완제품에 대한 정보만을 적어 보내주면 되는 것 같던데 원산지소명서에는 원재료까지 전부 기입해주어야 하니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원산지 소명서를 저희 회사에서 작성한다고 했을 때 (생산자가 직접할 수 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완제품 생산 회사로 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완제품에 대한 정보) 외에 더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예로 세금계산서라던가, 원재료 전부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던가.. 그리고 비슷한 제품이지만 제품명이 다를 때는 원산지소명서를 각자 만들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제품마다 하나씩 소명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현재 소명서는 제품 개당(ea)이 아닌 전체 생산물량에 비례해서 제품명 하나씩 작성 (제품명 하나당 전체 가격을 환산해서 원재료 수량이라던가 가격을 작성)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1. 완제품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외에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소요부품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을 요청해서 그것을 토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2. 원산지소명서를 제품 개당(ea)이 아닌 전체 생산물량에 비례해서 제품명 하나씩 작성(제품명 하나당 전체 가격을 환산해서 원재료 수량 또는 가격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2]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질문

저는 제조업체에서 원산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EU FTA관련 수출물품이 있어서 소명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이기 때문에, 소명서의 '12번'항목 가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4번'항목 '합계'부분도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저희 부장님은 '12번' 항목은 공란으로 두지만, '14번'항목은 기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답변

-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12번 란의 수량 가격을 적지 않아도 되고,
 - 또한 14번 란의 '합계'도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원산지소명서 수량 및 가격 표기 방법

질문

- 원산지소명서의 '물품가격'이 원화 기준인지 거래통화 기준의 금액인가요?
- 물품가격에서 금액은 해당 단가인지, 판매 총액인지요?
- '가격란'에 수량과 가격은 제품 해당 사용된 수량과 가격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당 수출 제품의 판매총량 생산에 사용된 자재 수량과 가격인지요?

답변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의 것과 같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당 단가를 적습니다. 예) 300원/EA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별 전체수량과 가격으로 합니다.



[4] 원산지소명서에서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

질문

저희는 제조업체인데. 수출자 쪽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품 중에 몇 개가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이 되어서 소명서를 발급해 달라고해서 작성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소명서에 16번에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에 체크하고 나머지 15, 17, 23까지 체크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만약 해줘야 한다면 부가가치기준 다 구해서 비율이랑 이런 것까지 자세히 기입해야하는 건가요?
2. 12번에 가격은..매입단가를 적는 건가요? 아니면 소요단가를 적는 건가요?
3. 14 합계에.. 원산지 재료(국산)비원산지재료(국수입산) 이 가격까지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매입한 단가를 적나요..아니면 소요량을 곱한 금액을 적나요.
4. "() 자유무역협정과 제출합니다." 꽈 있는 것에 팔호 안에는 적용대상 협정인 한·EU 이것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답변

1. 소명서의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실제로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하는 것으로, 예컨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서 충족했다면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에 '예'로 체크하고, 나머지 부가가치기준 등에는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다만, 23.직접운송 여부는 '예'로 체크해야 합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소요)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는데,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소요된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4. 그렇습니다.

[5] 원산지소명서의 원재료명세서상 공급처 기재 방법

질문

원산지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원산지 소명서 상 원산지결정기준 기재할 때
 - 1) CC, CTH, CTHS, BD 등과 같이 영문표현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 2)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같이 한글표현으로 적어주면 되는지
 - 3) 세번변경기준(CTH)와 같이 한글과 영문표현 모두 적어주면 되는지요
2. 원재료명세서 상 공급처 기재하는 란 부분에 멀티소싱을 하는 자재의 경우 공급처가 2곳이라고 하면 2곳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1. 3)방법[세번변경기준(CTH)]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대표적 또는 주요 공급자 1곳만 적으셔도 됩니다.



[6] 원산지소명서 원재료 작성 범위

질문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 작성할 때 원재료 명세서를 적는 란에 대한 문의입니다. 한 품목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10개 이상이 되는 경우 대표적인 원재료만 3~4개 적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나머지 6~7개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검증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 예컨대, 10개가 들어간다고 할 때, 대표적인 원재료 3~4개만 적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원재료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원재료가 많을 때에는 이하 내역 '별첨'이라고 하여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7] 한·미 FTA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소명서 작성 의무

질문

한미 증명서를 수입자가 작성할 때 원산지소명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혹시 소명서를 수출자(미국)가 작성해서 쥐도 되는지요

답변

- 수입자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소명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입자는 아래의 의무가 있음
 - 물품 수입자로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서, 운송서류 등 5년간 보관
 -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기록 5년간 보관
 - C/O 발급자로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서명권자 지정 등 의무



[8] 원산지소명서 란별 작성방법

질문

1. 소명서 5란(가격조건) : 모든 물품에 대하여 FOB로 기재하고 납품가격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EU(+EFTA)=EXW와 그 외 FTA=FOB로 나누어 선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10란(HS NO.) : HS NO. 기재 시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원자재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3. 13란(공급자) : 공급자의 모두의 회사명, 주소 등의 정보가 첨부, 기재되어야 하는지?
4. 17란(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기재 시 확인서와 같이 기준상의 %를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 계산 값을 적어야하는지 의문
5. 18란(동시 적용 품목) : 이곳에 YES 시 상기의 16., 17.란에도 YES로 하여야 하는지 의문

답변

1. 5란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에 "○" 표기합니다.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2. 10란 :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더라도 6단위 품목번호는 적어야 합니다.
3. 13란 : 원재료 공급자(생산자)의 상호, 주소, 전자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 다만, 공급자가 다시 다수로부터 공급받은 경우는 대표적인 공급자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4. 17란: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에서 "예"로 체크한 경우 실 계산 값을 적습니다.
5. 18란 : 동시 적용품목에 YES한 경우 16(세번변경기준), 17(부가가치기준)란도 YES해도 됩니다.



[9] 원산지소명서 구비서류의 가격표시 방법

질문

1. 세번변경 CTH기준(호 기준)으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였을 시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업체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최종물품은 국산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지 않은 원재료물품의 원산지란에 국적을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아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합계란을 작성할 때 달러를 기준으로 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세번변경 CTH기준(호 기준)으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였을 시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업체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최종물품은 국산으로 됩니다.
2. "미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구비서류(예컨대 원가산출내역서, BOM 등)에도 원화로 기재되므로 원화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한·EU FTA 원산지소명서 작성시 원산지결정기준 표시방법

질문

한 EU FTA 원산지 소명서 작성 시 작성란 17번 "부가가치기준" 충족 란에 부가가치기준 13%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요? 원산지결정기준은 MC50이고, 다른 BD법처럼 "부가가치기준 13%"라고 적는다면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 "예"에 체크하고, "(부가가치 비율 : 13%)"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 원산지소명서 6번란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혼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4. 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1]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요건 및 필요 서류

질문

저희는 자동차 부품회사로 저희 그룹회사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이 이번 한·EU FTA 발효로 인해 관세 0%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수출자인 유럽 쪽에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로 등록을 해야만 저희가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도, 유럽 쪽에서는 저희에게 발행 중인 Invoice 상에 원산지와 HS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니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HS코드와 원산지만 기재되고, 싸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6,000유로 미만으로 들어올 때도 많지만, 6,000유로 이상으로 수입될 때도 있으므로 수출자가 유럽에서 인증수출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품번이라도 매번 들어올 때마다 첨부되어야 하는지요?
3. 수입품목이 10개 인데,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편리한가요?
4. 수입시 수출자가 필요한 서류, 저희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FTA를 포함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협정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서명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집니다.
 - 다만, 건당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할 때는 '인증수출자'만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인증받은 수출자이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같은 품목이라도 들어올 때마다 선적 전별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단, 동일선적분에 대하여 B/L 분할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에 표시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관리 필요)

- 1회 선적분(B/L 확인결과 동일 편명)이지만, B/L 번호만 다를 경우에는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나뉘며, 인증요건 및 혜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증제도인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HS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은 인증요건과 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지역으로 수출이 예상 되면 인증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한정된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 인도)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협정세율 적용신청시 필요서류

- 수입통관 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P/L신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수입통관 직원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고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시에는 서약관련 스탬프만 있으면 사본도 인정가능)
 - 수입통관할 때 미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관지 세관 납세심사과에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차액관세의 환급이 가능하며, 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협정적용의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 (<http://fta.customs.go.kr/>) >> 수입활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절차

질문

한·EU FTA 관련하여 HS CODE 8483.40-9090 또는 8501.51-0000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받기 위해서 제출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

-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통관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P/L신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수입통관 직원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고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시에는 서약관련 스탬프만 있으면 사본도 인정가능)
- 수입통관할 때 미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전까지는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세관 납세심사과에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후협정관세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이 반드시 필요)

[3] 한·미 FTA에서 원산지 제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질문

한·미 FTA와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미국산) 제품인 것과 운송요건 등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어떤 서류를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인으로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여기서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미국산) 제품인 것과 운송요건 등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협정 제6.1조(원산지상품) 및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기록과 제6.17조(기록유지요건) 제1항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4] 한·칠레 FTA 관련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질문

조그마한 회사로 칠레에 물건을 몇 개 보내는데, 이번에 FTA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등 관련한 필요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답변

- 한·칠레 FTA에서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지정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일정 사항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의 구체적인 발급방법
 - 양허품목인지, 수출하는 제품의 HS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 원재료 구입경로 확인(생산자 또는 수출자) : 원산지 결정시 기초가 되는 생산공정, 재료내역 및 원재료의 구입경로, 구입가격을 확인합니다.(원재료가 직접수입, 수입원재료 국내구입 또는 국내생산재료 구입인지 확인)
 - 원산지통보서 발급(생산자) : 생산자는 수출자에게 판매할 제품의 수출지가 칠레인 경우, 생产业이 한·칠레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산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으로 결정되면 원산지통보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합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할 경우는 원산지통보서 생략)
 - 서면진술서 작성(생산자) : 생산자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고시 별지 제4호의3 서식)로 대체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출자) :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통보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된 이후에 지정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6호의7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서명권자를 지정하여 서명·날인한 후 칠레의 수입자에게 송부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관리
 -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한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고시 별지 제5호 서식)
 - 또한,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류 보관

질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이 되면 신청시 준비해야 했던 원재료 소명서, 원재료 확인서, BOM,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원산지증명을 할 때 매번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원산지 관리대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상업송장, 주문서(매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이렇게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 역시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관에서는 인증수출자의 혜택은 신청시 관련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하고 심사기간까지 기다려야하는 번거로움을 없게 하는 것이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번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준비했던 서류는 구비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저희는 매번 구비서류 준비의 어려움으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신 바랍니다.

답변

- 해당세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인증수출자의 혜택은 한·아세안 FTA처럼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의 '제출'이 생략되는 것이지, 신청서류의 '구비 및 보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드립니다.
-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위하여 자료 보관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나. 수출신고필증
 -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6] FTA 의무 보관서류에 대한 이해

질문

1. 한·EU FTA이든 한·미 FTA이든 보관서류 내용은 동일합니까?
2. 다음의 서류가 의미하는 바와 제가 이해하는 바가 동일합니까?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한·EU는 증명서가 따로 없고 Invoice에 신고문안을 기재하므로, 이는 신고문안이 기재된 Invoice를 의미?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Proforma Invoice로 대체 가능? 아니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 외에 소요된 국내에서 발생한 재료비용?
 -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 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원산지 (포괄)확인서?

답변

1.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위하여 자료 보관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각 협정에서 정하는 내용에는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국내 이행법으로서 모든 FTA에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나. 수입신고필증
 -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라.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나. 수출신고필증
 -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바.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 · 제공한 서류
 -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다.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보관기간
 1. 수입자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2. 수출자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3.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 보관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문의하신 서류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한 · EU FTA는 증명서가 따로 없고 Invoice에 신고문안을 기재하므로, 이는 신고문안이 기재된 Invoice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계약서가 없는 경우, Proforma Invoice가 있으면 대체 가능하고,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보관할 것이 없음)
-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수입신고필증 외에 소요된 국내에서 발생한 재료비용 관련서류 등이 해당됩니다.
-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7] 기관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과 작성대장 필요 여부

질문

기관발급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서식에 보니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과 작성대장이 있는데, 이 서식을 꼭 작성해야하는지요? 관리해야 하는 법령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따라 원산지 자율증명 또는 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한 구비서류

질문

한·EU FTA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에 대한 사후감사를 대비하여 수입자 쪽은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하는지요?

답변

-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위하여 자료 보관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입자는 사후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 받아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 등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미 적용한 협정 관세를 배제(추징)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FTA 특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9)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사후관리

질문

EU지역으로 섬유를 수출하는 업체로 품목별 인증수출자 세관인증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수출 Invoice상에 The export of the products~라는 문구 삽입하여 보내 주면 되는데, 이때 이런 Invoice를 보낼 때마다 저희 업체가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이런 invoice를 발행했다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원자료만 local 공급자에 판매할 때 "생산자 국내 제조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포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만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위하여 자료 보관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FTA 특례법 제12조 참조)
-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서명한 후, 작성내역을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3조 참조)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81호(2010.6.10)]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0]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보관 서류

질문

저희는 2차 벤더로 부터 반제품을 수급 받아 완제품을 ASS'Y하여 고객사로 납품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사에서는 원산지확인서를 저희 회사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 품목의 99프로는 역내산이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에는 애로사항이 없으나 나중에 세관에서 검증을 나올시에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1.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에 제공한 서류 → 원산지확인서
2.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거래계약서
3.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
4.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구매원장
5.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원산지 소명서? BOM LIST?
6.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 재고관리대장, 수불자료
7.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2차 벤더로부터 접수받은 원산지확인서

이게 맞는지, 틀리면 좀 보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고객님은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고, 보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
=> 말 그대로,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원재료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있는 경우 그 수입신고필증
 5.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원산지 소명서? BOM LIST?
=>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등의 입증서류로서 원가산출 내역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등을 말합니다.

IX

FTA 소액물품

- ① 특송물품
- ② 여행자 휴대품



1. 특송물품

[1] 한·미 FTA 특송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방법

질문

미국으로 부터 특송물품 수입시, 100불 초과 2,00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 간이신고(P/L)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한미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 간이신고하는 특송물품의 경우 1,000불 이하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인데, 그럼 1,000불 ~ 2,000불 사이의 간이신고하는 특송물품은 P/L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 협정관세 적용신청 이것 역시도 1,000불 이하 물품은 수입신고서 19번란에 X표시 등으로 간이하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한데, 1,000불 초과 2,000불 이하 특송물품(간이신고대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미화 1,000불~2,000불 사이의 간이신고 대상특송물품일지라도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 초과의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원산지증명 면제)

-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 (요건)
 - ①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 ②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 ③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2] 한·EU FTA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B/L 상에 DEPARTURE가 없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한·EU FTA 적용 문구는 Invoice에 기재가 되어 있으나 B/L 상에 SHIPPER가 AAA(WWW.BBB.CO.KR) ADDRESS: FLAT1,23HANSON ST.LONDON, UK CONSIGNEE는 한국의 수취인으로 되어있고 DEPARTURE가 없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물품은 미화 1,000불 이하이더라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질문한 사안에서 보면, B/L에 출발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물품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다른 관련서류 등을 통해 입증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미 FTA 특송화물의 면제기준 200불에서 물품가액 기준 문의

질문

미국에서 온 특송화물의 목록통관 상한액이 \$200이라면 그 \$200이 순수한 물품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미국쇼핑몰에 지불한(예를 들어 미국내 배송비를 포함한) 총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미국국적의 특송업체에게 지불한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한국국적의 특송업체에게 지불한 특송비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만약 한국국적의 특송업체를 이용했을 때에는 미국내 배송비만 \$200에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미 FTA에서 미국으로부터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물품가액’ 미화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목록통관대상(관세면제)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물품가액은 ‘미국 내에서 지급한 금액’(예: 상품가격과 미국내 세금, 미국내 배송비 제비용 포함)을 말하며, 특송업체에 지급한 운송비는 제외합니다.

[4]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협정세율 적용 방법

질문

영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류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원산지는 이태리이며 구입가는 140파운드 정도로 한화 25만원이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으로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판매사이트 측에 배송 시 따로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 면제는 사인간 소포로 송부(우편물)되거나 사인간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특송물품)된 협정물품이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여 간이하게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만 국한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물품'은 제외되며,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물품'은 미화 1,000불 이하이더라도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판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해서 그것을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원산지신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구매처 별 총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는데, 이태리가 원산지인 제품은 'IT' or 'Italy' or 'EU' 라고 쓰면 됩니다.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송품장 등에 원산지신고 문안(판매자의 이름, 서명 포함) 순으로 직접 쓰는 경우에는 잉크(볼펜 포함)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발행하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위 원산지신고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해서 갖추어야 합니다.
 - FTA와 별개로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15만원 이하의 물품(소액물품)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 위 규정의 소액물품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관세부과기준은 15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미 FTA 전자상거래물품 협정세율 적용

질문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도 원산지 자율증명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 협정당사국(미국)에서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000불 이하의 우편물, 특송물품('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물품'도 포함)은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 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하여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미화 1,000불 초과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로 정식 수입신고를 통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여행자 휴대품

[1] 여행자 휴대품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방법

질문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져와서 간이통관으로 진행할 경우 품목별 관세가 2011년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향후 순차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협정당사국(EU)에서 구매한 미화 1,000불 이하 여행자 휴대품(비상업용)은 수입자의 특혜신청(휴대품신고서 활용)을 전제로, 원산지 증명의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및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여 간이하게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 미화 1,000불 초과(구매국가, 구매처를 불문하고 해외여행자의 국가 및 구매처의 원산지제품 총가격(CIF) 기준) 여행자 휴대품인 경우에는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 문안* 및 판매자의 수기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신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구매처 별 총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는데, 이태리가 원산지인 제품은 'IT' or 'Italy' or 'EU' 라고 쓰면 됩니다.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 문안(판매자의 이름, 서명 포함) 손으로 직접 쓰는 경우에는 잉크(볼펜 포함)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의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

질문

프랑스 산 여성용 백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대략 1,000~2,000 유로 정도 합니다. 유럽과 FTA 협정이 맺어져서 유럽산 제품은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성용 프랑스 가방을 인천공항 면세점, 서울 시내 면세점, 터키 시내 등에서 구입했을 때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변

- 인천공항 출국면세점, 서울시내 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FTA 적용의 전제조건인 거래당사자(국내면세점은 EU국가가 아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터키 시내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에는 터키는 FTA 체결국(EU회원국)이 아니므로 한·EU FTA 관세혜택(면세)을 받을 수 없습니다.

X

기타(APTA 등)

- ❶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 ❷ 기타

1.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1] APTA 적용시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국내산 원재료와 외국산 원재료 판정

질문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국내산 원재료 판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 AP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산원재료와 외국산원재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FTA의 경우에는 각 원재료 세번별로 품목별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따라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국내산 원재료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

APTA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이 적용되어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상이 아니어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이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국내산 원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AP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제조하고 불인정공정 규정에 의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이 아닌 충분한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국내산 원재료로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수출물품에 대한 APTA 적용시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국내산 원재료와 외국산 원재료 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관련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따라서 협정참가국들(중국, 한국 등 APTA 협정국가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라는 입증은 기본적으로 그 원재료에 대한 APTA 원산지증명서를 근거(AP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로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국내산 원재료 입증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APTA는 원산지(포괄) 확인서의 작성 대상은 아니지만, APTA 부가가치 산출시 소요되는 원재료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활용해서 국내산 원재료임을 입증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APTA 3자 무역일 경우 추가 기재요건 확인

질문

APTA 관련 문의 드립니다. C/O상 수출자 성명과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의 성명이 상이하더라도, 직접운송 등 원산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O 상 "Consign"란에 "to order" 문구 기재 외에 송품장상 추가 기재 문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주문용 (to order)"을 기입하여 3자 무역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송품장상 추가 기재 문구는 없습니다.

[3] APTA 원산지결정기준 표시 관련

질문

- 원산지확인서 요청을 많이 받는데 APTA도 포함해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확인서 작성 시 원산지결정기준을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증명서의 경우에는 A, B, C ...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던데 원산지 확인서에 표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B를 표시하고 percent를 기재하거나, 한·EU FTA처럼 MC를 적고 percent를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표시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

- FTA협정의 경우, FTA관세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하나,
- APTA는 FTA와는 달라, FTA관세특례법이 아닌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등이 적용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닙니다.(APTA는 원산지 확인서 작성해도 효력이 없고, 따라서 표시방법도 따로 없습니다.)
-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굳이 작성해야 한다면, 1)완전생산기준 : A, 2)타국산 공제부가가치기준 : B, 3)역내 누적부가가치기준 : C, 4)방글라데시 등은 D로 기재하면 됩니다.

[4] APTA 사후적용 가능 여부

질문

한·아세안 FTA는 수입 신고수리 후 사후적용이 가능하여 2년 안에 C/O를 제출할 경우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태 협정도 수입 신고 수리 후 C/O를 발급 받을 경우 사후적용이 가능하나요?

답변

- 사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한 한·아세안 등 FTA의 경우와는 달리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라 함)의 경우는 사후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 하며 납부한 관세액과 협정관세액의 차액에 대한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 관련한 수입신고 건에 관하여는 국내이행법률인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제10조3항에 의하여 사후적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으나,
 - APTA에 가입한 국가에 적용할 양허관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므로 FTA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20495)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도 관세법상의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에서는 APTA를 포함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PTA의 경우 현행 관세법상으로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AP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5]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APTA 관세 적용 가능 여부

질문

이번에 당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HS 8507.80-2000)은 중국에서 선적되지만 원래 국내(한국산)에서 수출된 물품이고 중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면장 확인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품에는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표 또한 국내업체상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AP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 FTA를 포함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품목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AP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APTA는 품목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8조에 의하여 부속서 II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특별원산지기준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 1) 완전생산기준(A) (협정 제2조) 협정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이어야 합니다.
- 2) 타국산공제 부가가치기준(B) (협정 제3조)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즉 원산지가 수출국 이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CIF;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이 생산품(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대비 55%를 초과하지 않아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 3) 누적부가가치기준(C) (협정 제4조) 당해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협정 참가국들 (중국, 한국 등 APTA 협정국가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누적부가가치)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최종 가공국가의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 4) 특별원산지기준(D) (협정 제10조) 최빈개발도상 참가국(방글라데시, 라오스)에서 생산된 상품은 위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비율보다 10% 특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는 비율이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4조는 비율이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C/O상 재질과 현품 재질이 다른 경우 APTA 적용 가능 여부

질문

APTA 적용 수입 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신발인데 APTA 적용을 위해 FORM A형 C/O를 받았으나 해당 C/O상에 표시된 HS CODE와 재질이 현품의 HS CODE와 재질과 틀립니다. 이 경우 APTA 적용을 못 받는 건지요?

- C/O : HS 6404, 재질 UPPER : TEXTILE
- 현품 : HS 6402 재질 UPPER : PU

답변

- APTA 특혜관세 적용시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 세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세번이 상이하더라도 통관단계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번이 달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세번 상이시 처리지침(공정무역과-4190, 2007.11.9) 참조]
- 따라서, 수입물품의 품명이 동일하다면 실제 HS 코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통관단계에서는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 타

[1] 한·EU FTA 적용국가 범위

질문

한·EU FTA 적용국가범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EU FTA의 협정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EU 27개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정문에 안도라 공국, 산마리노 공화국, 세우타 및 멜리야 같은 EU 국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나라에도 예외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 세계에 위치해 있는 특정 EU국가의 자치령에 대해서도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요? 예) 프랑스령인 가이아나 등

답변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공동선언'에 따라 특별히 안도라공국(ANDORRA, AD) 및 산마리노공화국(SAN MARINO, SM)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한·EU FTA의 의미 내에서 유럽연합 당사자의 원산지로 인정되며,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1조(의정서의 적용)'에 따라 특별히 스페인 해외 자치시인 세우타 및 멜리야(Ceuta and Melilla)와 프랑스 자치령인 모나코(MONACO)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도 한·EU FTA 의정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EU국가 자치령에 대해서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3국 생산물품을 유럽에 수출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

질문

일본이나 미국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거나 유럽에서 수입할 때는 한·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즉 made in korea와 made in Europe 제품만이 관세혜택이 대상이 되는 건지요?

답변

- FTA(Free Trade Agreement)는 양자 간 또는 지역 간의 무역장벽 및 관세의 철폐를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이어야 하고, 그 FTA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즉,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제품은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 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한·EU FTA 관련 관세율

질문

저희는 유럽에서 냉장 및 냉동용 압축기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HS 코드는 8414.30-1000 및 2000 이고요. 문의 드릴 내용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조회를 했을 때에는 관세가 0%로 되어 있는데, FTA 협정문에서 찾아보았을 때는 1000은 0%, 2000은 3%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문의하신 품목(HS code 8414.30-1000, 2000)은 한·EU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됐거나(0%), 연차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에 해당됩니다.
 - 즉, HS code 8414.30-1000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고(0%), HS code 8414.30-2000은 연차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6%, 4%, 2%, 0%) 품목에 해당 됩니다.
- FTA에 따른 협정세율(연도별 세율 포함)은 아래 검색방법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 세율(수출·수입) >> 수입시 세율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4] 한·EU FTA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전 수입신고 물품에 대해 FTA(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한·EU FTA에서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는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 것이며,
-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한 물품을 사용하여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이후, 완료된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한 원산지제품과 보세 건설장에서 건설공사 완료 이후 수입신고 수리되는 물품과는 다른 물품 이므로 동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한·EU FTA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보세공장 수입관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핸드폰을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FTA가 체결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하지만, '제품과세' 물품은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 또한, 보세공장은 관세부과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보나, 원산지(원산지는 물품이 생산, 가공된 곳을 의미)를 고려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물품은 국내생산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 기준에 따라(EX: 세변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6] 한·EU FTA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

질문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의 경우 우리나라 안에 위치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장소로서 특혜를 부여하나 실제 수입통관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즉 역내생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 보세공장은 관세부과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보나, 원산지(원산지는 물품이 생산, 가공된 곳을 의미)를 고려할 때에는 우리나라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물품은 국내생산이라고 생각됩니다.

[7] 한·EU FTA 중고물품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질문

유럽에서 의류 등 재활용품(Used goods)을 수입하는 도매업체입니다. 일반 재활용품도 정상제품과 같이 FTA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한·EU FTA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재활용품(중고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정상제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을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8] 한·EU FTA 협정상 전체가격의 의미

질문

한·EU FTA 관련하여, 물품가 6,000유로 미만이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고, 이상일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품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한·EU FTA에서는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 여기서 6,000유로의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9] 한·EU FTA 관련 Invoice 작성 요령

질문

EU 한국 간 FTA 진행 후 현재 독일업체에서 수출인증자 번호를 발급 받은 상태이며, Invoice 상의 원산지증명 자율신고서 작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한번 수출시 원산지가 다른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원산지증명서 자율신고서 문구를 Invoice 제일 아래에 한번만 기입하고 제품별 원산지 표시는 Invoice 내 각각 제품별로 원산지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품 중에는 원산지가 EU에 속하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이 역시 Invoice 내에 표기하려고 합니다. FTA 적용 가능 YES NO 표기 HS 코드 표기 원산지 표기 제일 아래 한번에 원산지 증명서 자율신고서 문구를 아래와 같이 쓸려고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0000/EA/0000, 가상번호입니다.)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ee note per line) preferential origin.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는 란에 (see note per line) 쓴 이유는 많은 제품을 전부다 이 칸 안에 쓰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위에 라인은 봐 달라.라는 형식으로 써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Invoice를 작성하면 FTA 관련 세율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신고서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 제시하신 (see note per line) 란에는 '제품의 원산지(예컨대, EU)'가 표기되어야 하므로, 제시하신 방법은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협정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님)



[10] 한·EU FTA EUR1 발급 관련

질문

-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00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000이라고 합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당사에서는 폴란드와의 수출거래가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발효된 FTA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 폴란드의 고객으로부터 EUR1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시 송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주어야 한다고 폴란드 고객 쪽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송부 해주어야 하는 서류인지요?

답변

- EUR1은 한·EU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11] 한·싱가포르 FTA협정의 4.3조 특정상품의 취급

질문

한·싱가포르 FTA협정 4.3조 특정 상품의 취급

1. 부속서 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이 된다. 그 상품은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한 원산지재료가 된다.
2.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 및 부속서 4B의 운용 또는 개정에 대하여 협의한다.

위와 같이 싱가포르 협정에 대하여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이 4.3조의 특정 상품이라는 것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 문서가 있더군요.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싱가포르 FTA "4.3조 특정 상품의 취급" 및 부속서 4B규정은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허용한 규정입니다.



[12] 한·아세안 FTA 필리핀 일반품목군, 초민감품목군 동시 총족시 관세율

질문

당사는 PET 필름(HS 3920.62-0000)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ASEAN FTA를 맺고 있는 필리핀에 수출 중인데, 해당 제품의 현지 HS Code는 3920.10.00입니다. 이 HS Code를 기준했을 때, 필리핀과의 일반품목군 관세율표에서는 2011년까지 5% 관세를, 2012년부터는 관세가 철폐(0%) 됩니다. 동시에 해당 HS Code는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 B그룹 (Group B)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까지 20%이상의 관세를 인하하는군입니다. 이 경우 이 제품의 2012년 관세율은 0%로 철폐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 수출하는 물품(PET 필름)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HS 3920.10.00호(Of polymers of ethylene : 에틸렌 중합체의 것)호 내에서도 그 용도가
 - Tape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elephonic or electric wires(전화 또는 전기선의 제조용 테이프)일 경우에는 2012년 0%가 적용되지만,
 - 기타(위의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경우에는 초민감품목군으로서 계속 관세(MFN)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3] 불량 대체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

PP BAG을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PP BAG을 수입했는데 수입 당시 FTA를 적용하여 관세 0%로 수입 통관한 제품으로 업체 창고에 반입하여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가 불량이 발생하여 거래처에 크레임을 확인하고 일부 불량난 제품을 베트남 쪽으로 위약 반송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대체품을 다시 국내로 보내오게 되었는데 베트남 당국에서 같은 제품을 2번 원산지발급이 불과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처음 발급한 원산지 증명 수량과 재수입한 수량을 빼고 대체품에 대한 수량이 맞으므로 다시 발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원산지 증명으로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FTA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C/O)는 처음 1회 선적분에 대해 작성되고 1회 사용이 원칙이므로, 위약 반송된 물품의 대체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C/O를 발급받아야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14] 국가 간 HS코드가 상이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책

질문

저희가 현재 태국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HS코드와 태국 쪽에서 원하는 HS코드 6단위가 달라서 태국 현지에서 FTA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품목은 'A.D.Mycin'이라는 항암제 의약품 인데요, 수출시 3004.20의 HS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태국 업체 쪽에서는 3004.9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아세안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서 'A.D.Mycin'이라는 제품에 대해 3004.20의 세번으로 품목별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3004.90으로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아세안 국가로는 3004.20 세번으로 문제없이 수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HS코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요. 아님 다른 해결책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WTO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협약 가맹국 상호간에는 품목분류번호(HS코드, 국가에 따라 8-10자리의 번호 사용)중 처음 6자리까지는 공통적인 번호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 간 HS해석상의 차이 및 과세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동일물품에 대하여 다르게 품목분류되는 사례가 있으며 HS 건의사항의 개정반영에 따른 시간차이도 존재합니다.
- 국가 간 HS코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는 품목분류번호에 대한 해석상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여 당사국간 이견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고,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간에 품목분류 분쟁이 있을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문의: ☎ 042-714-7531)"로 문의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민원의 문 >> HS 국제분쟁 신고센터(HIT) >> 신고안내]
- 한편, 한·아세안 FTA AK Form 원산지증명서의 7번란 HS 코드는 원칙적으로 '수입당사국의 품목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장 필요한 경우에는 HS코드를 3004.90으로 수출신고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품목별인증과 상관없이)원산지증명서도 3004.90으로 발급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한·아세안 FTA 적용 여부

질문

거래방식(생산자 직배송 방식) 태국의 생산자(A)가 한국의 무역업체(B)와 매매 계약을 하고 A의 생산품을 한국의 소비자(C)로 직접운송한 후, B/L상 수하인인 C사(직접수입자)는 B사가 재발행한 상업송장(가격 상승)으로 수입통관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A사는 B사로 수출하고(B/L,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B사로 발행), B사는 한국의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관련 서류를 C사에 양도하여 판매할 경우 C사는 수입 통관할 때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증명서상에 발행된 물품 및 수량 등이 일치하고, 비록 수입자가 상이하나 이는 보세구역에서 B/L 양수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수입신고시 B/L 양수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C사가 협정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한·아세안 FTA 경유국의 Back to back C/O[연결원산지증명서] 활용

질문

저희 회사가 금번 수입을 하게 되었는데, 제품의 생산은 인도네시아에서 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싱가포르회사가 수입한 후 저희 회사가 다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제 생각에는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모두 아세안 협정 국가이므로 무관세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닌지요?

답변

-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국가 이외의 지역을 중간 경유하는 경우, 그 중간 경유국가의 발급기관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체약상대국(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하나, 중간 경유 당사국(싱가포르)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직접 운송원칙이 충족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또한, FTA체결에 따른 협정세율은 수출입 물품의 HS 세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FTA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무관세 적용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7] 한·아세안 FTA 제3국송장 관련 문의

질문

A : 말레이시아 공장, B : 폐사 in Japan, C : customer in Korea인 경우로, A는 B의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B는 A의 물건을 C에게 판매하였고, C는 B로 대금을 지급 후 수입통관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A로부터 물건을 산 금액은 800원이고, B가 C에 판매한 금액은 1,000원일 경우 C/O 중 7번 항목에 B사의 정보를 기재한 후 9번 항목에 금액을 기재시 B사가 C로 판매한 금액(1,00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잘못인지요?

답변

- 한·아세안 FTA AK Form 원산지증명서 9번란의 가격은 수출국(말레이시아)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을 기초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물품의 수출국(말레이시아)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3국 당사자(일본)와 수입자(한국)간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원산지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수출당사국의 증명서 발급기관은 자국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일 경우 그 송장상의 가격에 따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원산지 상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왜곡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송장번호와 FOB 가격 등은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을 기초로 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안에서 9번 항목의 Invoice 금액 기재시 B사가 C로 판매한 금액(1,000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18]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 품목 및 상호대응세율제도

질문

한·아세안 무역협정 관세 철폐 품목을 알고 싶습니다. 따로 볼 수 있는 링크나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답변

- 품목번호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 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품목번호 확인은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 FTA에 따른 협정세율(연도별 세율 포함) 확인방법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 세율(수출·수입) >> 수입시 세율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 모든 연도 보기 클릭
- 참고로,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 됩니다만 아세안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8.9.10.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물품에 대해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호대응세율제도란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는 FTA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통하여 상대국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아세안측의 관세 조기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현재 MFN세율을 적용하는 품목과 아세안측의 관세율이 10%이하인 경우 아세안측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그 각각의 경우를 합하면 대상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의 7개국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http://fta.customs.go.kr/>) 접속 후 FTA일반 - 공지사항 중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관세율제도 도입시행" 및 "한·아세안 FTA 태국상호대응세율 자료"를 검색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한·아세안 FTA 관련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 표기 인정 여부

질문

베트남에서 제빵용 이스트를 수입예정인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 0%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빵용 이스트는 HS 2102.10-3000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HS 2102.10-1000으로만 수출 및 증명서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HS는 앞에서 6자리만 같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원산지증명서에 HS 6자리(2102.10-XXXX)가 같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 HS 2102.10 이렇게 6자리만 표기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 마지막으로 이중표기, Vietnam HS 2102.10-1000와 Korea HS 2102.10-3000이 함께 표기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위 3가지 내용 외 다른 인정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똑같이 표기되어야 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답변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부호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자리를 기본 자리수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출국에서 수출신고서에 기재하는 HS Code와 한국에서 수입신고서 기재되는 HS Code는 6단위까지만 일치할 것이고, 이하 10단위까지 4자리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3 원산지규정 부록 1의 첨부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을 살펴보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7번란의 HS Code는 수입당사국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의 AK Form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는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또한, 이러한 AK Form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는 수입신고서상의 HS Code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일 수도 있으며, HS Code에 따라 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므로 세관에서는 협정세율 적용에 대한 사후검증절차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수입신고시의 HS Code가 6단위이상(2단위, 4단위 등)에서 다르다면 우선, 해당물품의 HS Code가 어떤 것인지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 수출입자는 품목번호확인신청 등 해당 국가의 관세행정당국에 질의 등을 통하여 품목 분류번호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신고 및 발급기관에 AK Form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요청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HS 기재는 2102.10 이렇게 6단위까지만 표기해도 됩니다.
-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상 HS가 우리측 적용 HS와 다른 경우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관세청, '07.11)]

1. HS 10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이상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6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합니다.
2. HS 2, 4, 6단위가 다른 경우 HS 2, 4, 6단위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o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에 따른 결정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 C/O상의 세번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통관 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하고, 사후심사부서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한·아세안 FTA 3국 무역 원산지 표시 관련

질문

저희는 자동차 제조회사입니다. 말레이시아 A사에서 생산된 물품을 일본의 B사로부터 구매하면서 실제 물품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도착하는 경우, 일본의 B사가 발행한 3국 송장으로 FTA관세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A사와 B사는 본사와 현지생산회사 관계입니다. C/O와 B/L상의 수출자는 A사, Invoice상의 수출자는 B사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 말레이시아의 권한있는 기관(국제통상산업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한·아세안 FTA AK Form 원산지증명서 제9번란의 가격과 제10번란의 송장번호 및 일자는 수출국(말레이시아)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을 기초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제13번 란의 “제3국 발행송장(Third Country Invoicing)”에 체크하고, 제7번 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명 및 국가명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부속서3 부록1 제21조 참조)
- 또한, 직접운송원칙(말레이시아 → 한국)이 지켜져야 합니다.

[21]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내용 관련

질문

원산지신고 문안 중 “신고문안 및 서명은 잉크로 대문자로 수기작성해도 됩니다.”라는 라고 하셨는데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신고문안 및 서명은 잉크로 대문자로 수기 작성해도 됩니다.”의 의미는 타자로 치지 않고, 스탬프로 찍지 않고,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2] 한·EFTA 협정문 내용 검색

질문

협정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은 있으나 양허세율은 없고, 양허세율은 있으나 협정문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협정문에서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보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EFTA 협정문에서

- 원산지결정기준은[부속서 I](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규정되어 있고,
- 협정세율은 [부속서 VI](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관세)부속서 VI의 부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http://www.fta.go.kr/>) >> 한·EFTA FTA >> 「한·EFTA FTA 협정문」 참조

○ 또한, 한·EFTA FTA 국내 이행법령에서

- 우리나라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정해져 있고,
-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참조

[23] 원산지와 선적지가 다를 때 적용할 협정

질문

원산지는 독일이고, 선적지는 스위스입니다. 어느 협정을 적용하여야 합니까?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독일) 또는 한·EFTA(스위스)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원산지가 독일이므로 한·EU FTA 협정을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한·EFTA FTA는 적용할 수 없음)
-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한·EU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직접운송 원칙)
 - EU연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연내에서 우리 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협정당사국 이외의 지역(스위스)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단일 택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로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4] FTA 협정별 영문표기법

질문

업체별 FTA 협정에 대한 표기가 영문 & 국문으로 자주 헷갈리는 부분으로 문의드립니다.

- (1) 업체에서 KR-AFTA 사용하는데 AFTA 어느 나라와의 체결인지?
- (2) 업체에서 KR-APTA 사용하는데 APTA 어느 나라와의 체결인지?

답변

- AFT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자유무역지대] 회원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구 방콕협정)] 적용대상 국가는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라오스, 스리랑카 그리고 한국으로서 회원국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관세보다 낮게 양허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5] FTA 원산지증명서와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차이점

질문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출을 할 때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일반 C/O를 제출해 왔는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게 되면, 일반 C/O는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 및 산업보호를 위한 일반 원산지증명서와는 양식이 다릅니다.
- FTA의 경우에도 협정별 국가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및 발급주체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FTA를 포함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하는 이른바 '일반 C/O' 관련 문제는 대외무역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한·미 FTA에서 Invoice로 원산지증명 가능 예부

질문

당사는 반도체 관련 부품 등을 미국의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수출자가 발행하는 Invoice 상에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 USA로 표기되어 있다면 별도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무관한지요? Invoice 상에 COUNTRY OF ORIGIN(원산지 국가)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미국의 법인으로부터 수입한다면 변경된 세율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한·미 FTA에서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은 자율발급제로서 어떤 정형화된 서식(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Invoice에 협정의 필수 기재사항과 "Country of Origin : USA"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

[27]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

질문

한·아세안 FTA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나무상자(4415.10)에 대하여 수출국에서는 제제목인 HS 4407.29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송부 되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정정 발급을 요청했으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 물품은 인천세관에서도 HS 4415.10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살펴보면 HS 4407.29.9900 /원산지결정기준 WO(완전생산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HS 4415.10과 HS 4407.29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가 한·아세안 FTA협정에 준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 HS가 우리측 적용 세율과 다른 경우 처리방법

<HS 2,4,6단위가 다른 경우>

- HS 2,4,6단위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O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명에 따른 결정기준에 따라 판단
 - ① C/O상의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할 수 있습니다.
 - ② C/O상의 세율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통관 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하고, 사후심사부서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 개시하게 됩니다.

[28]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중 “6,000유로 초과” 가 수식하는 단어

질문

원산지규정 제5부 원산지증명 16조 1항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이 수식하는 단어가 '원산지제품'인가요? 아니면 '탁송화물'인가요?

답변

- "원산지제품을 포함하는 탁송화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즉, Invoice 건당 전체가격(총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9] 멕시코 가공품의 한·미 FTA 적용여부

질문

당사가 수입하는 부품이 멕시코에서 가공되어 한국으로 수입 진행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원자재를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 4자리 변경이 그 기준으로 알고 있으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미국산임을 증명하여 한국에서 수입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산 원자재는 HS 8547.10호와 HS 2526.20호가 사용되며 멕시코에서 가공되어 수출되는 물품은 HS 8511.10호로 수출되다 보니 세번기준으로는 미국산임을 증명할 수 없을 듯 하며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미국산 원자재의 부가가치 %는 60%가 넘습니다.)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운송요건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시한 사안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미국산임을 증명하여 한국에서 수입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즉,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 생산 공정이 체약국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역내가공원칙, 더구나 한·미 FTA에서는 예외적 역외가공특례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가공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은 미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둘째, HS 8511.10호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SH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입니다. 즉,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으로 미국산임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30] 한국산 장갑의 포장재가 중국산인 경우 협정세율 적용 여부

질문

프랑스에 산업용 장갑을 수출하는 업체인데요, 한국산 장갑 (제품가 150불 정도)에 중국에서 수입한 포장지 (40불 정도)로 포장을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FTA 관세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7조에 따르면,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질문하신 사안에서, 장갑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지는 장갑과 함께 품목분류되는 경우 그 내용물품(장갑)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내용물(장갑)이 한국산인 경우 포장지도 한국산으로 인정되고, 기타 협정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정별 차이

○ 한·미 FTA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6.10조(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11조(포장재의 취급) 1. 가. 상품이 제4조에 규정된 RVC 기준을 따르는 경우, 소매용 포장재의 가격은 그 포장재가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고려된다. 나. 가호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소매용 포장 재료는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될 때에는,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재료가 그 상품의 세번변경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 한·인도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0조(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 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고,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31] 한·EFTA 중고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질문

수입통관을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품은 스위산으로 중고이고 인증수출자이며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이런 경우 한·EFTA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EFTA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갖추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한·EFTA FTA에서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아래 관련규정 부속서1의 부록3 참조)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증명방식).
다만, 인증수출자는 서명(서명인의 성명 포함) 생략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스위스산 중고물품으로 인정되고, 스위스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스위스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는 한·EFTA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2] 한·미 FTA 수용성(비수용성) 가공유 원산지결정기준

질문

한·미 fta 관련 원산지 기준에 따른 코드 기재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미국에서 제조된

- HS 3403.99-1000 (또는 3403.19-1000) - 수용성 금속가공유,
- HS 3402.13-9000 - 수용성 산업용 세척액,
- HS 2710.19-7420 - 비수용성 금속가공유 수입 건으로서,

위 3종 모두 거의 모든 첨가제 (: 95 이상 거의 100 가까이)를 미국에서 조달-제조-수출 되는 경우, 코드 기재방법에 WO(모두 미국조달)와 세번변경(CC, CTH, STSH 중 어느 것인지는 미상) 모두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문의하신 품목 중에서 HS code 3403.99-1000 또는 3403.19-1000, 3402.13-9000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이고,
- HS code 2710.19-7420호는 (선택기준) "1. 같은 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 또는 감압증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SP) 또는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207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CTH)입니다.
- 따라서 해당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기준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면 일반적으로 "CTH"로 표기하고, "같은 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 또는 감압증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이면 일반적으로 "SP"입니다.
- 그러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기준을 표기할 때는 위 모두 'PSR'로 기재하면 됩니다.



[33]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누적기준)에 의한 원산지 관리

질문

당사는 플라스틱 시트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해당 제품을 EU로 수출하고자 하는데 관련 중요 원자재 중 하나가 일본산이어서 기준까지는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에서는 올해부터 원산지 수입처를 바꾸어 중요 원자재의 수입국을 독일(EU)로 바꾸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 해당 원재료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신, "원산지증명서"만을 가지고도 원산지 인정이 되는지, 업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민입니다. (현재 당사는 FTA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명 서류만 있다면 관련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해도 될까요?)

답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에 한함)과 원재료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로서 EU(독일)측에서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누적기준 적용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FTA 결정시스템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다면, 증명서류만 있으면 관련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4] 한·EU FTA 수출국과 선적국(역내)이 다른 경우

질문

한·EU FTA 제3국 송품장 발행관련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제3국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와 선적지가 프랑스 수출자와 원산지 신고서 발행자가 독일일 경우 독일이 제3국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독일도 같은 EU역내 국가이므로 같은 역내국가로 보는게 맞는 건가요?

답변

-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EU 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독일 수출자가 원산지가 프랑스인 물품을 프랑스에서 선적하여 수출하여도 FTA 협정적용 가능)
- 독일도 같은 EU역내 국가이므로 같은 역내국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발행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http://call.customs.go.kr>)

발행인 : 천홍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기획·편집 : 이철재(관세청 세원심사과장)

민 희(관세청 고객지원센터장)

상담팀(심봉주, 임종민, 박재한,

육동경, 최영도, 박제빈, 강영진,

홍석환, 윤우식)

발행일 : 2012년 7월

연락처 : (02) 3438-5114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35-7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8(논현동 71)

<http://call.customs.go.kr>

☎ 1577-8577